

연구보고서(수시) 2019-12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김유휘
최미진·홍문기·류진아

【책임연구자】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공동연구진】

최미진 Texas State University 교수
홍문기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박사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9-12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발행일 2019년 12월
저자 김 유 휘
발행인 조 흥 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ISBN 978-89-6827-615-6 93330

발간사 <<

폭력·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폭력 및 학대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확대되고 공공의 개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 차원에서 폭력·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를 분석하여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개별 영역별 서비스와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이 연구는 보호서비스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보호서비스의 기능과 인력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영역의 폭력·학대 대응 서비스를 분석하고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가 향후 폭력·학대 대응 서비스 개선과 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되어 폭력 및 학대 문제의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김유희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본원의 류진아 전문연구원, Texas State University 최미진 교수, 완주군청의 홍문기 박사가 참여하여 작성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유익한 자문과 조언을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지선 교수, 익명의 검독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에 참여하여 연구 수행에 큰 도움을 주신 학계와 현장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 | |
|---------------------------------|------------|
| Abstract | 1 |
| 요 약 | 5 |
| 제1장 서 론 | 9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5 |
| 제2장 폭력·학대와 보호서비스 | 21 |
| 제1절 폭력·학대 문제와 공적 개입의 근거 | 23 |
| 제2절 보호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 | 28 |
| 제3장 국내 보호서비스 분석 | 37 |
| 제1절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의 법적 근거 | 39 |
| 제2절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 내용 | 54 |
| 제3절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 인력 | 111 |
| 제4절 소결 | 142 |
| 제4장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 분석 | 149 |
| 제1절 미국 성인보호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 | 151 |
| 제2절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 187 |
| 제3절 소결 | 232 |

| | |
|--------------------------------|------------|
| 제5장 결 론 | 235 |
|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 237 |
| 제2절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제언 | 241 |
| | |
| 참고문헌 | 249 |

표 목차

| | |
|---|-----|
| 〈표 3-1〉 영역별 폭력·학대 관련 법적 기준 | 41 |
| 〈표 3-2〉 아동학대의 하위 항목 | 55 |
| 〈표 3-3〉 아동학대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조치 | 59 |
| 〈표 3-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 62 |
| 〈표 3-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서비스 | 63 |
| 〈표 3-6〉 노인학대의 하위 항목 | 65 |
| 〈표 3-7〉 노인학대 사례 구분 | 66 |
| 〈표 3-8〉 노인보호체계의 서비스 내용 | 70 |
| 〈표 3-9〉 장애인학대의 하위 항목 | 73 |
| 〈표 3-10〉 장애인학대 조사 및 판정 | 76 |
| 〈표 3-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서비스 | 77 |
| 〈표 3-12〉 피해 장애인 쉼터의 서비스 | 79 |
| 〈표 3-1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 82 |
| 〈표 3-1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 83 |
| 〈표 3-15〉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 84 |
| 〈표 3-16〉 사법체계의 가정폭력 대응 절차 | 88 |
| 〈표 3-1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 | 93 |
| 〈표 3-18〉 청소년·학교 영역 폭력·학대 관련 부처별 지원 | 96 |
| 〈표 3-19〉 청소년·학교폭력 가해자 대상 조치 | 102 |
| 〈표 3-20〉 청소년 교정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 | 103 |
| 〈표 3-21〉 범죄 피해자 지원 | 108 |
| 〈표 3-2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 109 |
| 〈표 3-23〉 스마일센터의 지원 내용 | 111 |
| 〈표 3-24〉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기준 | 113 |
| 〈표 3-25〉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기준 | 114 |
| 〈표 3-26〉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16 |

| | |
|---|-----|
| 〈표 3-27〉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 | 116 |
| 〈표 3-28〉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17 |
| 〈표 3-2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19 |
| 〈표 3-30〉 피해 장애인 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21 |
| 〈표 3-31〉 해바라기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22 |
| 〈표 3-32〉 성폭력상담소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24 |
| 〈표 3-3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25 |
| 〈표 3-34〉 1366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27 |
| 〈표 3-35〉 가정폭력 상담소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28 |
| 〈표 3-36〉 가정폭력 보호시설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30 |
| 〈표 3-37〉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32 |
| 〈표 3-38〉 청소년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133 |
| 〈표 3-39〉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인력 | 134 |
| 〈표 3-40〉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할 및 자격 기준 | 138 |
| 〈표 3-41〉 한국EAP협회 EAP전문가 자격제도 | 140 |
| 〈표 3-42〉 스마일센터 인력 기준 | 141 |
| 〈표 3-43〉 영역별 개입 대상의 특징 | 143 |
| 〈표 3-44〉 영역별 보호서비스 요약 | 146 |
| 〈표 4-1〉 아동보호서비스의 역할 | 159 |
| 〈표 4-2〉 텍사스주 성인보호서비스 조사 과정의 목적 | 171 |
| 〈표 4-3〉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 주관 부서의 역할 | 175 |
| 〈표 4-4〉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의 기능 | 175 |
| 〈표 4-5〉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의 역량 | 177 |
| 〈표 4-6〉 아동보호서비스 조사관의 임무 | 179 |
| 〈표 4-7〉 가족 중심 안전서비스(FBSS) 사례관리자의 역할 | 179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피해자 집단, 유형, 공간에 근거한 폭력·학대 영역 | 16 |
| [그림 1-2] 연구체계도 | 19 |
| [그림 3-1] 아동학대 사례 업무 진행도 | 58 |
| [그림 3-2] 노인학대 사례 업무 진행도 | 68 |
| [그림 3-3] 장애인학대 사례 지원 체계도 | 75 |
| [그림 3-4] 여성가족부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81 |
| [그림 3-5] 지역별 가정폭력 네트워크 운영체계 | 90 |
| [그림 3-6]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CYS-Net) | 98 |
| [그림 3-7] 학교폭력 대응체계 현황 | 101 |
| [그림 3-8] 소년사법처리 절차 | 103 |
| [그림 4-1]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연방법의 발전 과정 | 157 |
| [그림 4-2] 아동보호서비스 프로세스 개요 | 161 |
| [그림 4-3] 성인보호서비스 재가 케이스워크 과정 | 172 |
| [그림 4-4] 국가감시기구(Staatliches Wächteramt) | 195 |
| [그림 4-5]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업무체계도 | 204 |
| [그림 4-6] 독일 아동·청소년 전달체계 흐름도 | 207 |
| [그림 4-7] 독일 아동보호서비스 예방적 지원과 보호 업무 | 219 |



Abstract <<

A Preliminar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rotective Services System Against Abuse and Violence

Project Head: Kim, Yuhw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olicy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rotective services system against abuse and violence by analyzing the current protective services and overseas cases. To that end,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and range of protective services against abuse and violence, analyzes current protective services in Korea by area, analyzes overseas cases of protective services, and presents policy issues for the establishment of protective services system.

Protective services refer to services that respond to violence and abuse issues. The scope of protective services can be classified into emergency support for crises, for the long-term healing and recovery of victims, and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abuse, and recidivism. There is currently no general definition of protective services in Korean social welfare or social services. Protective services against abuse and violence are conducted based on different laws for children,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youth and schools, and the level of service differs by area.

Co-Researchers: Choi, Mi Jin · Hong, Moonki · Ryoo, Jina

There is a lack of recognition of protective services against abuse and violence from an integrated and general perspective, as well as a lack of a common definition of the work and skills of the labor force in each area. The current working conditions and training system of the labor force in protective services are limited for demanding the expertise of a high-quality labor force.

US legislation stipulates protective services in response to abuse and other violence, and Child Protective Services and Adult Protective Services are provided based on federal and state laws. In the case of protective services in the US, the private sector influence service work, skills regulation, and the provision of training. In Germany, the Youth Welfare Office, which is a public agency, controls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hich emphasizes not only ex post interventions but also a preventive system. Germany has a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for protective services against abuse and violence.

The policy issu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emphasis needs to be placed on the stipulation of services in response to violence and abuse as protective services as well as the duty and support of the state in the provision of protective services. Second, the level of protective services of each area should be increased, and the current services needs to be organized with a focus on the function of protective services. Third, job development, improvement of the training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 are necessary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the protective services workforce.

*Key Words: protective services, protective system, abuse, violence, workforce, expertis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폭력·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폭력·학대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 차원에서 폭력·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호서비스 현황과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현행 제도에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을 높이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보호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고찰, 국내 영역별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분석,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보호서비스는 폭력 및 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호서비스의 범위는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 피해자의 장기적 치유와 회복 지원, 폭력·학대 예방 및 재범 방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영역별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면, 사회복지 영역이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보호서비스라는 일반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영역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가 수행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영역과 성폭력, 부부폭력 영역은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청소년·학교 영역은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외에 보호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한 영역이다. 통합적 관점이나 일반론적 관점의 보호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개별 영역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직무 및 기술에 대한 공통적 정의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서비스는 보호서비스라는 유사한 직무로서 인식되지 못한다.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특화된 영역이지만, 현행 제도의 근로조건과 교육훈련에서 양질의 인력에 의한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한계가 있다.

미국의 법령은 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는 연방법과 주법에 근거하여 제공된다. 한편 독일의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는 다른 복지서비스 대비 가정 대상 개입의 적극성과 국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공기관인 청소년청이 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와 뉴욕주의 경우 아동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를 동일 부서에서 관할하며, 텍사스주에서는 긴급 상담전화와 같은 공통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텍사스주의 차등적 대응체계(AR)와 뉴욕주 가족사정 대응체계(FAR)는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 조사체계와 다른 개입 방식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더 유연한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독일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는 사후적 개입뿐만 아니라 예방적 지원 체계를 강조하여, 학대 조사시스템과 별개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 보호서비스의 경우 협회 등과 같은 민간 영역이 보호서비스 업

무 및 기술의 규정, 교육훈련 제공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체계에서 보호서비스는 복지업무에서도 특수한 기술로서 훈련을 제공하며 보호서비스 관련 교육과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의무보호서비스는 보호서비스에 대한 국가 개입의 책무와 서비스의 의무성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 의무 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겠다.

첫째,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의무보호서비스로 규정하고 보호서비스 제공에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영역을 중심으로 한 보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보호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호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개발, 교육훈련 제도 개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보호서비스, 보호체계, 폭력, 학대, 인력, 전문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 규범의 변화와 인권의식의 발전과 함께 폭력·학대의 범위와 대중의 인식은 변화하여 왔다. 한국 사회에서도 인권의식이 발전하면서 폭력·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아동학대, 노인학대, 젠더폭력, 청소년폭력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환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폭력·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폭력 및 학대 문제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동 훈육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 변화하고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살인 사건, 2015년 인천 학대 소녀 탈출 사건 등과 같이 특정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다. 아동학대 사례는 2001년 2105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까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p. 234). 노인학대의 경우도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2005년 2038건에서 2018년 5188건까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 173). 또한 시설이나 개인에 의해 벌어진 장애인 학대 및 착취 사건들은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 이슈화된 바 있다. 한편 성폭력은 최근 저연령화, 강력범죄화, 사이버폭력 확대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14.1%로(여성가족부, 2016, p. 73), 부부폭력 문제는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폭력

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관련 체계의 대응이 확대되면서 피해를 자체는 감소하였지만(김현진 외, 2018, p. 25), 2019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행 혹은 구타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7.8%로 여전히 또래 집단 내 폭력 문제가 존재한다(김영지, 김희진, 2019, p. 181). 한편 군이나 산업 영역에서도 폭력 및 학대 이슈가 존재한다. 군 내 가혹행위, 폭행, 사망, 자살 등의 사건들이 대중에게 이슈화된 바 있고 2014년 군 인권 실태조사에서 병사의 41.3%가 욕설 및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6.8%가 구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호 외, 2014, p. 113).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차원에서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폭력·학대에 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폭력·학대의 발생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청소년 영역에서의 폭력·학대 양상의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서비스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폭력·학대는 서로 다른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지만 힘이나 위계, 취약성, 의존성 등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폭력·학대 문제는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폭력·학대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폭력과 학대 문제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보호체계 혹은 보호서비스로 표현된다.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 개념은 미국의 성인보호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보호서비스는 특정 대상에 대한 학대, 방임 등을 조사, 지원, 예방하는 등의 서비스나 활동을 의미하며 아동보호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Massachusetts Government, 2019;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2018; Pennsylvania General

Assembly, 2019). 보호서비스는 폭력·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고 폭력·학대 문제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며, 대상자에 대한 개입의 강제성과 개입기술 등에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 구분된다.

국내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체계와 서비스의 수준은 영역별로 상이하다.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기관이 각각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학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성폭력 및 부부폭력(가정폭력)에 개입하는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산하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하여 제공된다. 군, 산업 등의 경우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서비스와 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 또한 주로 영역별로 수행되었으며,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체계가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김기현, 김미숙, 양심영, 하태정, 2014;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최수정, 2015; 박세경, 2015; 류정희, 2018). 개별 영역 내에서도 피해자 지원 제도에서 부처 및 조직 간 운영의 비효율성이 있고 제대로 된 연계와 조정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강동욱, 송귀채, 2016; 박한국, 2018).

폭력·학대에 대한 현행 보호체계 및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현행 서비스가 주로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폭력·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등과 같은 예방적 개입이 매우 부족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사후 대처와 사전 예방 모두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김형모, 2014).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및 폭력에 대응하여 교정복지 영역에서 폭력 행위자 청소년의 치료·재활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필요로 하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제공되는 상담 및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영역별 분절된 제도가

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인과 지역사회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체계 및 서비스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도 서비스의 전문성 문제와 인력 부족, 인력의 처우 문제, 슈퍼비전 확대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김기현 외, 2014; 박세경, 2015; 정혜숙, 송지연, 2015; 김신열, 최정민, 2016).

폭력·학대가 힘의 불균형과 위계, 대상자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배경으로 발생하고 피해자 개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체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학대 문제는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 영역이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 차원에서 폭력·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를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폭력·학대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호서비스 현황과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의무보호서비스는 보호서비스에 대한 국가 개입의 책무와 서비스의 의무성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는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현행 제도에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을 높이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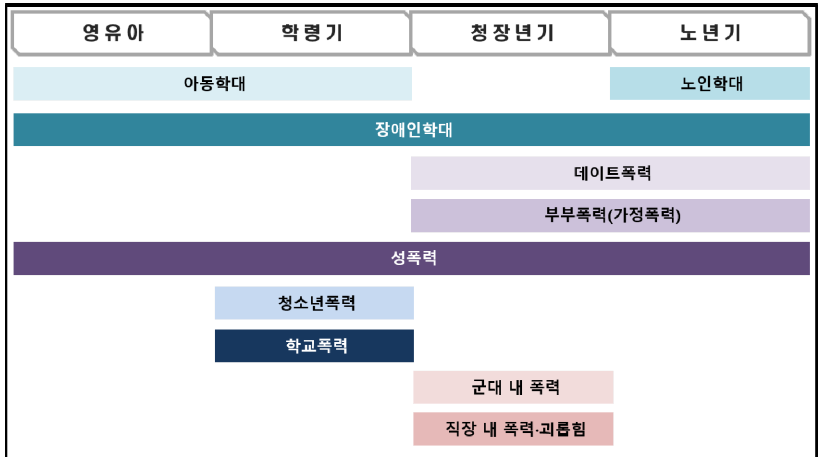
이 연구는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보호서비스에 대한 고찰, 국내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 분석,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 분석으로 구성된다.

첫째,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의 근거, 개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둘째, 국내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다. 폭력 및 학대의 영역별로 보호서비스의 체계와 수준은 상이하다. 폭력·학대 영역은 피해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폭력의 유형, 피해자의 취약성, 폭력·학대가 발생하는 현장, 폭력·학대 피해를 지원하는 체계 등의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폭력·학대 영역을 피해자 집단, 폭력의 유형, 폭력의 현장에 근거하여 [그림 1-1]과 같이 나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폭력·학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역을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부부폭력,¹⁾ 청소년/학교, 군, 산업으로 분류한다. 이 연구는 개별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피해자 집단을 중심으로 아동·노인·장애인학대, 둘째, 폭력 유형을 기준으로 성폭력 및 부부폭력, 셋째, 현재까지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서비스나 체계가 미비하거나 분절적인 범주로 청소년/학교, 군, 산업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1) 부부폭력은 법제도에서 '가정폭력'으로 표현되며,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실질적 내용이 배우자 대상 폭력이라는 점에서 영역을 '부부폭력'으로 정의함.

[그림 1-1] 피해자 집단, 유형, 공간에 근거한 폭력·학대 영역



자료: 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근영, 이미진(20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4의 연구 대상 범위를 참고하여 폭력·학대 영역을 정리함.

이 연구는 위 세 개 범주, 여덟 개 영역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현황을 고찰한다. 이 연구는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째,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분석한다. 둘째, 제도의 내용분석 차원에서 영역별 서비스의 대상, 내용, 전달체계를 살펴본다. 셋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근로조건, 교육훈련의 기준을 파악한다. 이는 서비스의 전문성 차원에서 현행 제도의 인력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를 분석한다. 해외 사례에서 제도가 보호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서비스의 기능을 어떻게 구체화하며 보호서비스 제도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강조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미국 보호서비스와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를 제도화하

였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제공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유럽 복지국가의 보호서비스 제도를 살펴 보기 위해 독일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특히 독일의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는 국가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후적 개입과 예방적 개입을 모두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미국과 독일은 사회서비스 자격 및 교육제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호서비스 제도의 인력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 미국 아동보호 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법적 근거, 서비스 및 전달체계 현황, 인력 기준 및 전문성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보호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고찰, 국내 영역별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분석,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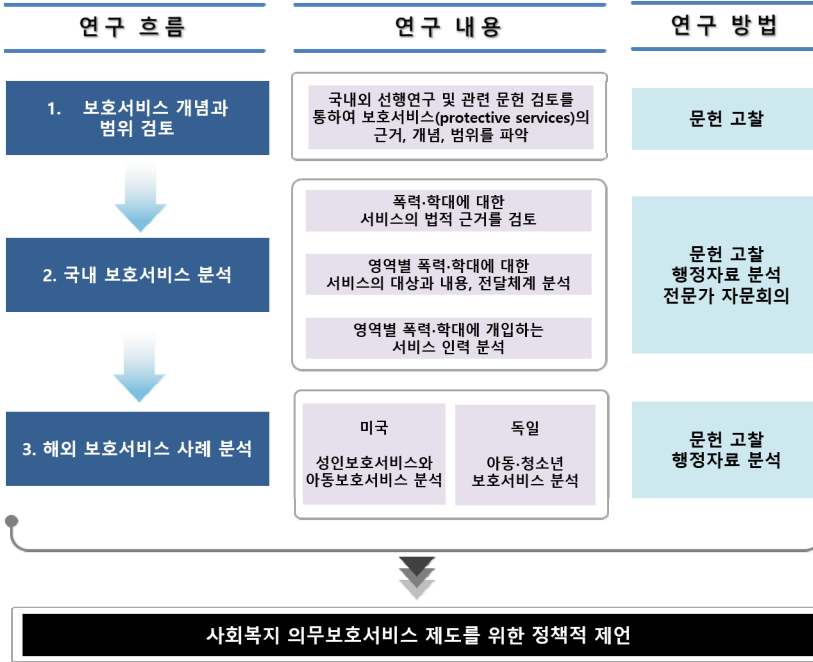
첫째,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등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국내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선행연구, 정책자료,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여 영역별 서비스의 법적 근거, 서비스 내용(대상,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인력 관련 기준을 분석한다. 국내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훈령 및 행정규칙 등의 관련 자료, 영역별 국내 선행연구, 정부 부처의 정책자료 및 사업 지침 등을 수집한 후 법적 근거, 서비스 대상과 내용 및 전달체계, 서비스 인력 기준을 중심

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의 영역별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영역별 서비스 현황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셋째, 해외 보호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아동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 사례와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사례를 분석한다. 미국 보호서비스 전문가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미국 아동보호서비스 및 성인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문헌과 행정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주별로 관련법과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 모두 제공하는 주 중에서 세 개의 주를 선정하여 관련법, 서비스 및 전달체계, 인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전문가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문헌과 행정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그림 1-2] 연구체계도





제 2 장

폭력·학대와 보호서비스

제1절 폭력·학대 문제와 공적 개입의 근거

제2절 보호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



2

폭력·학대와 보호서비스 <<

이 장의 목적은 일반론적 관점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장은 폭력·학대 문제와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폭력·학대 문제와 공적 개입의 근거,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한다.

제1절 폭력·학대 문제와 공적 개입의 근거

1. 폭력·학대의 개념

Galtung(1985, pp. 146-147)은 폭력을 인간의 욕구를 중심으로 8가지 유형으로 정의하는데 생존, 복지, 자유, 정체성의 욕구에 대하여 살해 및 불구화, 가난 및 질병, 구금 및 추방, 강제적 탈사회화 및 재사회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폭력은 사회적 약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지속적인 고통 상태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세계 폭력과 건강에 대한 보고서’를 통하여 폭력(violence)을 “자신, 특정 개인, 특정 집단 및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힘의 의도적 사용, 위협이나 실제 사용으로 상해, 죽음, 심리적 피해, 발달장애 혹은 박탈 등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의하였다(WHO, 2002, p. 4). 위 보고서는 폭력을 자신에 대한 폭력, 개인 간

폭력, 집단 간 폭력으로 구분하며 개인 간 폭력은 다시 가족 구성원 혹은 파트너 폭력(아동학대, 파트너 폭력, 노인학대)과 지역사회 폭력(청소년 폭력, 불상에 의한 공격, 범죄 관련 폭력, 직장 및 시설에서의 폭력 등)으로 분류한다. 또한 학대(abuse)는 폭력(violence)의 발현(manifestation)으로 볼 수 있고 폭력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인 및 집단 등의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Fawcett & Waugh, 2008, p. 1). 폭력과 학대는 모두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성적 측면을 포괄하며 학대는 착취, 감금, 비자발적 고립까지 포함한다(Fawcett & Waugh, 2008, pp. 1-2).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폭력을 신체적 폭력, 부상 및 학대, 정신적 폭력, 성적 학대, 방임, 착취로 정의한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9a). 미국 노인청(AOA: Administration on Aging)과 국립노인학대센터(NCEA: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는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를 유기, 심리·언어·정서적 학대, 착취, 비자발적 격리,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로 규정한다(Jogerst & Daly, 2004, pp. 280-281). 영국 성인보호체계에서도 학대의 종류를 신체적 학대, 가정폭력, 성적 학대, 심리적·정서적 학대, 재정·물질적 학대, 현대의 노예화, 차별적 학대, 기관 및 시설의 학대, 방임, 자기방임으로 분류하였다(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2019). Pillemer, Burnes, Riffin & Lachs(2016, pp. 194-195)는 노인학대의 정의에 간병인이 부양 등의 노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시켰다. 한편 유엔(UN: United Nation)의 ‘여성 폭력 방지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다

(OHCHR, 2019b). 여성에 대한 폭력 중에서도 부부폭력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인, 성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Fawcett, 2008, p. 10). 대상이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특정 유형의 폭력이 정의되기도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ffice)는 직장 내 폭력(workplace violence)을 개인이 업무 과정에서 폭력, 위협, 위해 및 부상을 당하는 모든 행동, 사건 등으로 정의하였다(ILO, 2003, p.4). 직장 내 폭력은 신체적 공격이나 괴롭힘, 스토킹을 모두 포함하고 고객, 클라이언트, 환자, 직원, 슈퍼바이저, 직원의 가족과 관련될 수 있다(Goldberg, 2015, p. 2).

폭력·학대의 본질은 힘이나 위계, 취약성, 의존 등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서 기인한다. 취약함이나 의존성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대상은 상대적으로 학대나 착취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Brown, 2004, p. 24; Mosqueda et al., 2016, p. 1880). 폭력·학대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이나 약자인 집단인 경우가 많고 폭력·학대의 행위자는 가족, 지인, 불상 등의 개인이나 시설, 지역사회 등의 집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 의하여 폭력·학대가 장기화될 수 있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은 불균등한 구조에 개입하여 피해자가 폭력·학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2.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의 근거

Maslow(1943)의 이론에 따르면, 욕구 단계 중에서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폭력·학대는 사

회문화와 규범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의되어 왔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폭력·학대 문제와 공공의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였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기 위하여 폭력·학대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은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공공 개입의 근거가 된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하여 국제기구와 관련 협약은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제19조는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방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다(OHCHR, 2019a).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서도 110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학대, 방임을 근절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111항에서 노인학대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다(UN, 200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6조는 국가가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UN, 2019). 유엔의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제4조에서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하였다(OHCHR, 2019b). 국제노동기구는 2019년 제190호 ‘폭력 및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을 채택하여 회원국은 국내법과 상황에 따라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다(ILO, 2019). 유엔의 ‘범죄 및 학대 피해자 정의를 위한 기본 원칙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 심리, 사회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였다(OHCHR, 2019c).

폭력·학대가 초래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손상과 장기적 피해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접근과 폭력·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기 폭력은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류정희 외, 2018a, pp. 345-347), 피해자들이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손해적 성행동 등으로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피해 경험이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희경, 장재홍, 2003, p. 44; 이유진, 2012, p. 269). 폭력의 경험은 폭력의 순환이나 세대 간 전이의 특징을 가진다(Children's Bureau, 2016, p. 4; 이인선, 황정임, 최지현, 조윤수, 2017, p. 233). 피해자는 폭력·학대의 경험으로 인하여 생애주기에 걸쳐 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교차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근영, 이미진, 2016, p. 165). 폭력·학대가 전이되고 순환·반복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한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나 사회규범은 새로운 폭력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WHO, 2009, p. 4).

위와 같이 폭력·학대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낮은 위계에 있거나 취약하고 의존적이며 차별받는 대상에게 행해진다. 피해는 피해자 개인에게 장기적인 상해를 미치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세대 간 전이와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와 같은 문제를 만든다. 폭력·학대 피해자의 회복과 치료를 지원하고 새로운 폭력·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차원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조치 외에도 피해자의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폭력·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포괄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제2절 보호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

1. 보호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폭력·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폭력·학대에 대한 공공 개입 수준과 범위는 영역별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체계는 국가별 제도와 문화 등의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였다(Hetherington, 1998, p. 78). 각 영역에서 특정 사건이 이슈화되거나 인권운동 등이 확대되면서 폭력·학대에 대한 개입체계가 발전해 왔다.

20세기 초반 이후 많은 유럽 국가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 대상 개입의 틀이 존재해 왔다. 여성 대상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부터 주도되었고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늦게 촉발되었다(Hagemann-White & Meysen, 2019, p. 192). 민권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의 발전, 아동 옹호 운동의 확대 등 변화의 과정에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학대는 사적 영역의 문제에서 점차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기관의 개입은 1970년 아동보호 차원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1980년 배우자폭력으로 확대되었다(윤정숙 외, 2017, p. 72). 한편 1970년대 이전까지 미국에서 노인 대상 학대와 방임에 대한 대중의 의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1970년대 이후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시도 등이 시작되었다(Mukherjee, 2011, pp. 519, 528). 또한 1960년대 미국에서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대상 서비스들이 개발되었다(Sims, Yost, & Abbott, 2006, p. 387). 이어 1970년대 유럽 지역에서 ‘피해자 운동’이 전개되면서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83년 ‘폭력범죄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이 등장하고 유엔 총회는 ‘1985년 피해자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김용세, 류병관, 2002, pp. 12-13). 위의 조치들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권고하였다.

폭력·학대 문제는 피해 상황을 멈추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협약과 유럽연합 권고안(EU directives)은 피해자가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Hagemann-White, 2019, p. 93). 1976년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제정을 전후하여 주정부에서 「아동학대 신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이나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ve Services Law)」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김혜영, 2014, p. 121). 폭력이나 학대 피해자에 대한 개입으로서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 법제도에서 아동학대 및 성인학대(노인과 장애인)에 대응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조 등의 서비스를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로 명명한다.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는 폭력·학대에 개입하는 사회서비스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폭력·학대를 예방하는 관련 서비스를 포괄한다. 펜실베이니아법령 「노인보호서비스법(Older Adults Protective Service Act)」에서는 보호서비스를 “노인의 학대, 방임, 착취 등을 파악, 예방, 감소 및 근절시키기 위한 노인 대상 활동, 자원 및 지원”으로 정의한다(Pennsylvania General Assembly, 2019). 매사추세츠주의 장애인 대상 보호서비스는 학대나 방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수행되는 서비스를 의미

한다(Massachusetts Government, 2019). 보호서비스에서 보호의 대상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재산, 커뮤니티를 모두 포괄한다(Horowitz & Estes, 1974, p. 70).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보호서비스의 차이는 클라이언트가 비자발적일 수 있고 서비스가 개입되면 대상자의 안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서비스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이다(조흥식, 2016, p. 30). 즉, 보호서비스의 제공에서 개입의 수준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및 자발성은 중요한 이슈이다. 보호서비스의 제공에서 간섭주의(paternalism) 관점과 임파워먼트 관점이 존재한다. 보호서비스가 사례에 개입할 때 국가가 폭력·학대 상황에서 개인을 보호할 의무와 개인이 가진 자기결정권과 자발성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적 개입에서 자기결정권은 민감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으며(Meysen & Grafe, 2019, p. 135), 보호의 대상에 따라 보호의 의무와 자기결정권의 균형점이 상이하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의 결정보다는 사법체계가 대신하여 기소 등의 과정을 수행하고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의 의지는 전문가의 개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Meysen & Grafe, 2019, pp. 135, 146). 또한 아동보호에서 부모의 자기결정권은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Meysen & Grafe, 2019, p. 142). 미국과 영국의 성인보호서비스는 긴급상황이나 피해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서비스 제공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강조한다(Bonnie & Wallace, 2003, p. 142; Bergeron, 2006, p. 82; Keywood, 2017, pp. 89, 92). 미국 성인보호서비스협회(NASPA: National Adult Protective Services Association)의 윤리 강령에서도 성인의 자기결정권과 안정을 보호할 의무 간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Mixson, 2010, p. 24). 부부폭력의 경우에도 지원 서비스의 제공 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된다(Meysen & Grafe, 2019, p. 142).

2. 보호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 피해 혹은 피해위험의 정보를 보고하고 폭력·학대에 처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하거나 정보 수집과 사정, 개입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Meysen, 2019, pp. 77, 79, 82). 가정폭력 보호체계는 긴급전화, 학대 및 폭력에서 탈출, 피난처 제공, 상담, 의료서비스, 법률 상담, 재정 지원, 주택,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Hagemann-White, 2019, pp. 94-95). 성폭력 및 가정폭력 체계는 긴급전화, 위기 지원 서비스, 옹호 및 법률 지원, 의료서비스, 개인 상담, 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Macy, Giattina, Sangster, Crosby & Montijo., 2009, pp. 359-360). 폭력·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범위는 피해 발굴, 신고 및 의뢰 접수, 폭력·학대 조사, 가해자 분리, 피해자 피난 등의 긴급조치, 사정 및 개입계획 수립, 상담 지원, 심리치료 제공,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임시거처 제공, 주거 지원, 기타 지원 연계,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정보 제공 및 외부자원 연계 등이다.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는 폭력·학대 피해 발생을 경감시키기 위해 예방과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극복을 위해서는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Save the Children UK, 2009).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는 폭력 및 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이다. 보호서비스의 범위는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 피해자의 장기적 치유와 회복의 지원, 폭력·학대 예방 및 재범 방지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자 대상 지원은 폭력·학대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 회복을 지원하는 보호서비스이다. 폭력·학대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서비스는 폭력·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적 접근,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예

방 교육 등의 인식 변화를 위한 조치 등이 있다. 보호서비스는 폭력·학대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행위자, 지역사회 등의 주변 환경 모두를 대상으로 개입함으로써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한다.

Delaney, Quigley & Shuteriqi(2014)의 연구와 Chames와 Lomofsky(2014)의 연구에서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의 핵심 요소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제시하였다. Bergeron(1999)은 노인보호체계에서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슈퍼바이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기술, 지식, 전문성이 중요하다(Macy et al., 2009, p. 310). Noordegraaf(2007, p. 768)는 전문성의 요소를 지식, 기술, 경험, 윤리, 외양, 협회, 관찰권, 지식 전이, 규약(codes), 슈퍼비전으로 설명하였다.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정치적, 통제적 요소들을 제외한 내용적 요소는 지식, 기술, 경험 등이다. 보호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학대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보호서비스는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와 판정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조흥식, 2016, p. 30), 폭력 이슈에 대한 인식 능력과 식별 능력을 필요로 한다(Banks, Landsverk & Wang, 2008, p. 904). 긴급한 피해 상황에서 종사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폭력과 학대의 징후를 파악하고 질문하는 법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Hagemann-White, 2019, p. 97). 또한 조사 과정의 법적 기준과 사법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둘째, 폭력·학대 문제와 대상자별 특징에 대한 지식과 실천기술이 필요하다. 폭력·학대 현장과 폭력·학대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다. 이 영역의 휴먼서비스 전문가는 폭력·학대의 본질과 통제방법을 알아야 한다(Hanlon, 2008, p. 23). 영역별로 대상자의 특징과 피해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폭력·학대의 맥락을 고려하여 대상자 사정을 진행하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셋째, 폭력·학대 문제를 경험한 피해자의 장기적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 영역의 종사자는 피해자 지원, 피해자의 대응 역량 강화 지원, 피해자의 진술과 전문서비스 지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신뢰관계 구축, 피해자 보호, 타 기관과 협력 및 연계, 관련 범죄 기록 및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Hagemann-White, 2019, pp. 97-98). 잘 훈련된 서비스 제공자는 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이나 낙인을 경험하는 피해자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치료로 이끌 수 있다(Garcia-Moreno et al., 2015, p. 1573). 보호서비스에서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개입의 여러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집단을 옹호하는 것도 이 분야의 휴먼서비스 전문가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다(Lynch, 2008, p. 130).

넷째, 폭력·학대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협력체계 구축 역량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폭력과 함께 빈곤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개입 기술과 자원 연계를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종사자에게 협력체계 구축 능력, 피해자 의사결정 지원,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도 필요하다(Healey, Connolly & Humphreys, 2018, p. 234).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갖춘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3. 국내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와 인력 논의

국내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부부폭력 등 영역별로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제도와 서비스가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과 부부폭력(가정폭력) 대상 피해자 지원 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다.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나 서비스를 다룬 연구는 주로 아동학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아동학대 사례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가 “보호체계”로서 다루어졌다(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 2013; 김기현 외, 2014; 김형모, 2014; 박세경 외, 2014; 류정희 외, 2016; 이상정 외, 2018). “보호서비스”라는 표현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달체계 연구에서 의무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제시되었다(조흥식, 2016).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달체계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노인보호체계’가 연구되었다(최인규, 2016). 최근 아동 및 가족을 포괄하는 ‘보호체계’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김지연 외, 2015; 류정희 외, 2018b). 한편 안수란 외(2018)의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하위 영역 분류 중 하나로,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을 제시하고 해당 영역에 폭력 예방 및 개입 사업과 범죄 피해자 및 관련 대상자 개입 사업을 포함시켰다. 기존 연구에서 영역별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는 논의되었으나, 보호서비스의 개념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절된 전달체계 문제, 기관 간 협력체계의 한계, 정보공유체계의 문제, 예산 등의 지원 부족, 인력 관련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권문일, 2012; 김기현 외, 2014; 김형모, 2014; 김지연 외, 2015; 박세경, 2015; 강동욱, 송귀채, 2016; 김신열, 최정민, 2016; 류정희, 2018; 조범근, 김준영, 배귀희, 문명재,

2017). 서비스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아동 영역에서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박세경 외, 2014, p. 141). 아동보호체계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김형모, 2014, p. 261; 조범근 외, 2017, p. 285),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 인력의 근무조건 개선이 주장되었다(김기현 외, 2014). 노인 영역 연구에서 노인보호서비스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슈퍼비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김신열, 최정민, 2016). 젠더폭력 영역의 연구들은 인력 및 예산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슈퍼비전 체계가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정혜숙, 송지연, 2015, pp. 164-165). 학교폭력 관련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사 인력 문제가 지적되었으며(권문일, 2012; 김순양, 손능수, 2015), 특히 폭력 문제를 위한 전문적 조정 및 증재 인력을 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이유진, 2012, p. 183). 청소년 교정복지 내에서도 인력의 확보와 슈퍼비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박성수, 2018). 군 영역에서도 현행 상담 조직과 역량에 한계가 있으며(권오열, 고흥월, 2015),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이 지적되었다(박철우, 2017; 이윤수, 2018).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제언 차원에서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전문성과 인력을 논의하였다. 인력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적은 수가 이루어졌으며, 성폭력 및 가족폭력 분야에서 종사자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김승권, 김유경, 김정숙, 박계림, 2013)와 인천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연구(김미선, 서보람, 2018)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제3장 제3절에서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서비스 인력 기준을 파악함으로써 보호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고자 한다.



제 3 장

국내 보호서비스 분석

제1절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의 법적 근거

제2절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 내용

제3절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 인력

제4절 소결



3

국내 보호서비스 분석 <<

이 장은 국내 영역별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도출한다. 국내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영역별 법적 근거, 서비스 내용, 인력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제1절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의 법적 근거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 관련 법령은 개인 간 폭력·학대 문제에 대하여 공공의 서비스가 개입하는 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은 범죄 피해자 대상 법령과 개별 폭력·학대 영역별 법령으로 구분된다. 범죄 피해자 대상 법령은 지원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대부분의 폭력·학대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하며 영역별 개별 법령이 폭력·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관련 법령의 제정과 시행에 반영된다. 한국의 경우 1988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피해구조청구권을 도입하였다(강동욱, 송귀채, 2016, pp. 73-74). 이후 여성의 인권 보장과 성차별 이슈가 확대되면서 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법이 확대되었다(강동욱, 송귀채, 2016, p. 74).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과 같은 법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화되고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결과, 2000년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체계가 제도화되었다. 2004년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보호체계가 등장하였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법령이 추가되었다. 장애인 권익 차원에서 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전달체계가 등장하였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개입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역별로 대응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폭력·학대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폭력·학대 예방은 주로 개별법으로 다루어진다. 관련 개별법은 성폭력 등과 같은 범죄처벌에 대한 법령, 법무부에서 규정한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령, 보건복지부 등의 각 소관 부처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지정된 법령이다. 이 절은 현행 법체계에서 영역별 폭력·학대에 개입하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폭력·학대 피해자 보호와 폭력·학대 예방을 위해 어떠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표 3-1〉 영역별 폭력·학대 관련 법적 기준

| 영역 | 관련법 | 내용 |
|------------|------------------------------|--|
| 아동 | 아동복지법 |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 노인 | 노인복지법 | •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
| 성폭력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성폭력: 성(性)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육체 및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 카메라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 |
| 부부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가정폭력: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청소년/ 학교 | 청소년보호법 | • 청소년폭력·학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 군 내 폭력: 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폭력 |
| 산업 | 근로기준법 | •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자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 법률 제162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항. 법률 제1588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법률 제159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법률 제110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7항. 법률 제159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법률 제164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제26조에서제27조. 법률 제160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법률 제16272호; 생활법령정보. (2019). 성폭력의 범위.

1. 아동, 노인, 장애인

세 영역의 법령은 학대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명시한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통하여 학대의 정의와 조치를 명시한다. 노인, 장애인 영역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각각에서 학대에 대한 정의와 개입체계를 규정한다.

가. 아동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국내 아동학대 대응제도가 등장하였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위험성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인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2014년 관련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사법체제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동학대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은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법령 전체가 아동학대 관련 조문이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 현장 출동,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아동보호사건으로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실시, 피해 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상담 및 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상담 및 치료, 관련 시설을 명시한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는 아동학대만을 다루는 특례법이 존재하여 사법적 절차를 규정하며,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학대를 명시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신고의무 규정,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등을 담고 있다.

나. 노인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4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관련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되고 노인학대에 대한 보호체계가 등장하였다.

노인학대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노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서 노인학대를 정의하며 「노인복지법」 제39조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노인학대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설치,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노인학대의 사후 관리 등을 명시한다.

노인학대만을 다루는 개별 법령은 없지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를 명시하고 노인에 대한 조치, 노인보호 관련 기관, 노인학대의 예방 교육, 신고의무 규정,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등을 담고 있다.

다. 장애인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법령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규정이 신설되면서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전달체계가 등장하였다.

장애인학대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장애인복지사업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는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였다. 장애인 대상 폭력·학대 문제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학대를 정의하며, 동법 제32조의6에서 장애인학대 등 안전 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다. 동법 제59조에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학대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장애인학대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쉼터 등을 명시하였다. 발달장애인법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와 신고의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

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가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장애인학대만을 다루는 개별 법령은 없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학대를 명시하고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 문제 대응 기관, 장애인학대의 예방 교육, 신고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2. 성폭력, 부부폭력

성폭력, 부부폭력 영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폭력·학대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다.

가. 성폭력

1970년대와 1980년대 여성 인권운동의 성장과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성폭력 사건을 통하여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가 제도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성폭력 관련 법제는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2010년 기존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2011년 기존 법률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용을 분리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형법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성폭력에 관련된 법체계는 성폭력 범죄자 처벌과 사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등이 있으며 그 외 「형사소송법」, 「민법」등에서도 성폭력범죄 내용이 포함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군 형사 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여성·아동권의 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이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제2조에서 성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제3~22조와 제42조~제49조의2는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다. 동법 제23~41조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및 가명 사용, 신원과 비밀 누설 금지, 비공개 심리,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손상 또는 비밀 침해 주의,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명시한다. 성폭력방지법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범죄 예방 교육, 피해자 대상 지원, 상담소 설치 및 운영,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권리 고지 의무를 규정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보장을 명시한다. 또한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 무 등을 규정한다.

성폭력 관련 법령은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다양하다. 관련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정의,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절차, 범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대상 지원제도, 사법절차 등에서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 기관, 성범죄 예방 교육, 신고의 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나. 부부폭력

부부폭력 영역은 법령에서 “가정폭력” 관련법으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여성 인권운동의 성장과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설립되었다.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후 2002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서 제1조 목적에 기존 가정의 회복 항목 외에 피해자의 인권 보호 항목이 추가되어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으로 수정되었다.

부부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가정보호심판규칙」(대법원규칙), 여성·아동권의

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법령으로 명시한다. 동법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상담소 설치 및 운영,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의 의사 존중 및 보호,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조사, 송치, 고소 등의 사법적 절차,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민사처리에 대한 특례, 신고의무 등을 명시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제2조에서 가정폭력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가정폭력 관련 법제체계는 성폭력범죄의 법제와 유사하다. 관련 법령은 가정폭력의 정의, 피해자 지원, 사법적 절차, 지원 기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 예방 교육,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감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에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은 의사 존중의 원칙이 경찰의 대응 방식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다(김정혜, 윤덕경, 정수연, 이인선, 이주영, 2018, pp. 164-165).

3. 청소년/학교, 군, 산업

청소년/학교 영역의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는 학교폭력 개별법령, 청소년 관련법, 청소년교정 관련법에 근거한다. 군 관련법에서 상담의 영역 중 하나로 폭력을 명시하고 산업 영역은 노동법과 산재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할 행위로 정의한다. 두 영역 모두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하다.

가. 청소년/학교

청소년폭력 및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령은 청소년, 학교폭력, 청소년 교정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폭력·학대와 개입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사업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제2조에서 청소년 폭력·학대를 정의하고 제4조에서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폭력·학대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의 책임을 명시한다. 제30조에서 청소년유해행위 중 하나로 청소년학대를 명시하고 제35조에서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한다. 청소년복지법 제32의2에서 가정폭력, 친족성폭력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의 쉼터 계속 이용을 명시하였다. 동법은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청소년복지시설, 위기청소년지원 등을 포함하며 해당 영역에서 폭력 문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폭력·학대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해당 체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제19조에서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의 실시를 규정하는데 폭력·학대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

년은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상담 및 치료, 관련 시설을 명시한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등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등의 정의, 학교폭력의 조사 및 상담 절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생보호인력 및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다. 학교안전법은 제18조와 제51조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명시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는 가해자 대상 조치의 세부 기준이다.

청소년 교정복지 관련 법령은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호소년 처우지침」(법무부훈령), 「보호소년 교육지침」(법무부훈령) 등이 있다. 「소년법」의 사법적 절차와 보호처분, 보호관찰법의 소년 보호관찰 관련 기준과 기관 규정, 보호소년법의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관련 기관 규정은 폭력 가해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소년법」의 보호처분과 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 청소년의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개입의 근거이다.

청소년이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폭력의 내용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법, 성폭력 관련법, 학교폭력 관련법, 아동·청소년성보호 관련법, 범죄피해자 관련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폭력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법과 교정영역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군

군 영역에서 폭력에 대한 개입의 근거는 폭력 문제 신고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조항이다.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에서 제173조의 장병 고충처리제도와 국방헬프콜을 통하여 폭력 문제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241~251조에서 성폭력 정의, 성폭력 신고 및 처리, 피해자의 조치, 성폭력 예방 등을 규정하고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에서 군 생활의 고충 및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규정하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제공하는 상담 영역에 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폭력 등이 포함된다. 동법 제43~44조는 위의 폭력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와 신고자 비밀보장을 명시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은 제도의 운영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군 영역의 법제는 성폭력 문제 외에 군 내 폭력에 관한 개별 법령, 훈령 및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련 개별 조항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군인 대상 상담인력의 업무 내용에 폭력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복지 관련법에서도 폭력 등의 피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하지만 동법과 시행령은 군 구성원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개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거 지원,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군사회복지는 군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군에 개입하여 군인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서혜석, 유흥위, 2008, p. 30). 하지만 「군인복지기본법」 등의 군 영역 법제에 사회복지적 실천은 매우 부족하며 특히 군 영역 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다. 산업

산업복지 영역에서 폭력·학대의 법적 근거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과 근로자지원제도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직무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에서 개인이 겪는 문제에 대해 집단적 차원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한 내용은 최근 법령에 반영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동법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를 명시하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제4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를 정부의 책무로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며,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한다. 직장 내 폭력은 직업 관련 상황이나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격, 욕설, 위협 등을 의미하며 고용주, 상급자, 동료, 고객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문준혁, 2016, p. 207). 위와 같이 근로 및 산업안전 법령에서 직장 내 폭력을 규정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근로자지원제도(EAP: Employee Assistant Program)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다. 제83조에서 근로자지원제도(EAP)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명시한다. 동법 제91조에서 프로그램 재원을, 동법 제14조에서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4. 기타 - 범죄 피해자

위 8개 영역과 별개로 법무부 소관의 범죄 피해자 관련법이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규정한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보호적 개입은 위 영역별 법령 외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에도 포함되어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 제7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법률구조법」에서도 범죄 피해자 지원 조항을 포함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의 회복을 목적으로 범죄 피해로 인한 손실복구 지원,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기타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피해자진술권 및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

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구조금 지급, 의료 제공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사업의 수행에서 범죄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구조 등의 지원 근거가 된다.

제2절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 내용

폭력·학대에 개입하는 서비스는 영역별 사회적 인식의 변화, 현장의 욕구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영역에 따라 폭력·학대의 정의, 피해 대상, 폭력·학대의 유형, 발생 현장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피해에 대한 보호와 치료 등에 대한 개입 방식에서도 대상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하여 형법과 민법 차원에서 일반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며, 법무부 산하에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는 개별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 대상과 범죄 유형과 같은 영역별 특수성이 강조되는 구조이다. 이 절은 8개 영역별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와 1개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대상, 내용, 전달체계를 분석한다.

1. 아동, 노인, 장애인

세 영역은 모두 학대에 대응하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겠다.

가. 아동

• 서비스 대상과 학대의 개념

아동보호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며, 개입의 대상은 학대피해 아동과 요보호 아동으로 구분된다.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체계와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공무원과 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등의 대안양육체계의 보호체계로 분리된다(정은희, 박세경, 류정희, Hajime Takeuch, 정희선, 2016, p. 79).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개입과 예방에 해당한다.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가족, 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개입한다. 이 영역에서 피해 아동과 가족, 가해자(행위자)를 대상으로 개입할 때 대상의 자기결정권 및 자발성보다 피해자 보호의 의무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표 3-2>와 같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를 포함하며 아동학대 사례의 절반 가까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학대가 중복되어 나타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26). 아동학대 피해는 피해 아동의 가정, 행위자의 가정,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표 3-2> 아동학대의 하위 항목

| 구분 | 내용 |
|------|--|
| 신체학대 | 성인(보호자 포함)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 |
| 정서학대 | 성인(보호자 포함)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소리 지름, 무시,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 구분 | 내용 |
|-----|--|
| 성학대 | 성인(보호자 포함)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성기 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 삽입, 음란물을 보여 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등) |
|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기본적 의식주 미제공,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행위 등)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p. 75.

• 주요 기능과 전달체계

아동 영역의 보호서비스는 학대의 신고 접수, 조사 및 판정, 응급 및 임시조치,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법률 지원, 보호 및 생활 지원, 학습 및 교육 관련 지원, 복지 지원, 사후관리, 가해자(행위자) 대상 서비스, 신고의무 및 예방 교육 등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리 절차에는 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 등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경찰·검찰·법원 등의 사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의 기관이 참여한다(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2017, p. 15).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왔다.

최근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제도가 변화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p. 11). 2019년 7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역할을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기능이 2019년부터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지자체 조사업무 수행 인력 확충 및 훈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재정립,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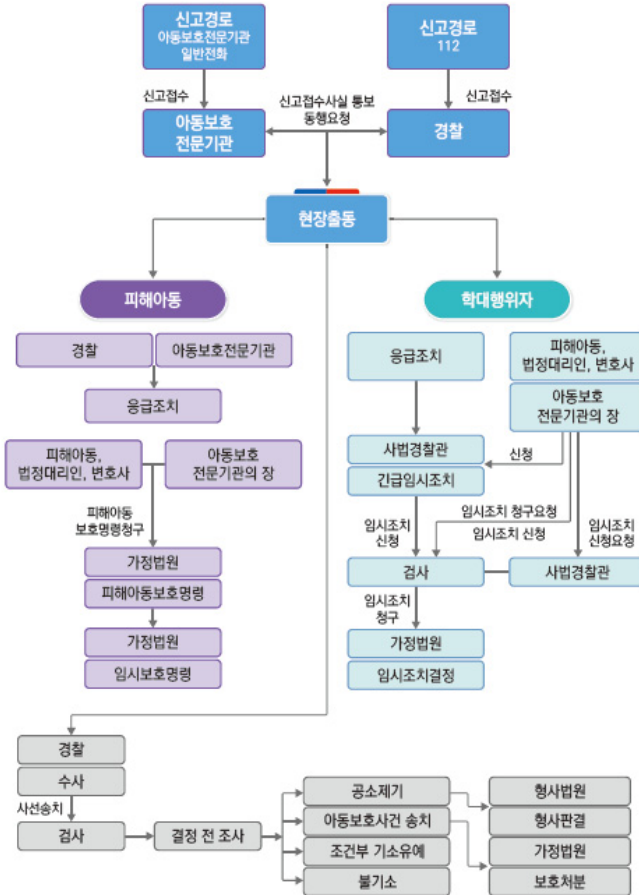
•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신고나 아이지킴콜 112를 통하여 접수된다.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3만 6417건이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만 3532건이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11). 아동학대 사건 대응 단계는 예방 및 발견 단계, 신고 및 조사 단계, 사후 관리 단계이다. 신고 및 조사 단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74).

- 조사: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함(전화, 내방, 방문조사).
- 사례판단: 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 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를 아동학대 사례, 조기 지원 사례, 일반 사례로 판정함.
- 사례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이 회의를 진행하여 사례판단과 사례개입의 방향을 논의함.

현장조사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원에게 수사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사례 접수 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에 동행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11조). 위 현장조사 또는 현장조사 이후 상담원 및 경찰이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위험도를 측정하고 피해 아동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그림 3-1] 아동학대 사례 업무 진행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p. 7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74).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나 보호자 또는 학대 행위자가 판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

에 대해 판단 및 개입 방향을 논의한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의사, 경찰관,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아동복지법 제46조의2).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원가정보호, 분리·격리보호, 일시보호(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장기보호(아동양육시설), 기타보호(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가정복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표 3-3〉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 명령 등의 조치이다. 상담원과 경찰이 취하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주로 3호 피해 아동 보호시설 인도, 2호 피해 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 등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31).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는 주로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 및 교육위탁,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32).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의 사건 처리 조치를 취한 건은 32.5%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35). 노인학대나 부부폭력 대비 상대적으로 사건으로 처리되는 사례의 비중이 높다.

〈표 3-3〉 아동학대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조치

| 구분 | 내용 | |
|------------|---|----------------------------|
|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 |
| | 1호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 | 2호 |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 |
| | 3호 |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 | 4호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 긴급 임시조치 |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 아동 본인·피해 아동의 법정대 | |

| 구분 | 내용 | |
|-----------|---|--|
| | 리인·피해 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 | |
| 임시조치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 | |
| | 1호 |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 2호 |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 | 3호 |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 4호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 | 5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 및 교육 위탁 |
| | 6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 위탁 |
| | 7호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 제14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 또는 피해 아동 본인·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 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요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 |
| 제15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서 필요적으로 청구함 | |
| 피해아동 보호명령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 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 | |
| | 1호 |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 2호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 3호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 4호 | 피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위탁 |
| | 5호 |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
| | 5-2호 | 피해 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 상담·치료위탁 |
| | 6호 |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 | 7호 | 친권자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 | 8호 | 후견인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 9호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pp. 32-35.

• 전달체계별 주요 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학습 및 보호 지원 서비스,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및 조사 단계와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8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 전까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로 이관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업무 또한 공공 부문으로 이관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년 총 80만 5437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해 아동 대상 46만 1891건, 학대 행위자 대상 20만 6419건, 비가해 부모 및 가족 대상 13만 712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40).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였다.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는 상담서비스(63.9%),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11.4%), 가족기능강화서비스(7.3%) 순으로 제공되었고 학대 행위자 대상으로는 상담서비스(69.7%),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9.1%), 행위자수

탁프로그램(7.5%) 순이었다. 비가해자 부모 등의 가족 대상으로는 상담 서비스(77.3%), 가족기능강화서비스(8.9%)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41).

〈표 3-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 구분 | 내용 |
|----------------|---|
| 상담서비스 | • 아동 대상 상담서비스 |
| 의료서비스 | • 입원치료, 통원치료 |
| 심리치료서비스 | • 심리검사,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
| 가족기능강화서비스 | • 가정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계 |
| 학습 및 보호 지원 서비스 | •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퇴소 및 절차 지원 • 분리보호 및 절차 지원 •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등 |
| 법률 지원 | • 법률자문 •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 •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 |
| 기타 | •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상담 및 교육인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 |

자료: 다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표를 재구성함.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p. 40;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아동 분야 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되는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을 입소 대상으로 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 지원,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복지 지원 등을 받는다. 3~9개월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은 후 원가정 복귀, 가정위탁, 일반공동생활가정 등의 조치를 받으며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각한 경우 등은 계속 입소가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b, p. 60).

〈표 3-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서비스

| 구분 | 내용 |
|------------|-----------------------------------|
| 보호 지원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 생활 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 복지 지원 |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선정 지원 등 |

자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아동 분야 사업안 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 가족 대상 통합적 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족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지원을 연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은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이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상담, 일상생활 지원, 건강 및 정신 지원, 전문서비스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40). 굿네이버스는 2015년부터 아동보호 통합 지원 전문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아동보호 통합사례관리 매뉴얼과 아동보호 통합 지원 전문서비스 모듈을 개발하였다(이봉주, 정해린, 이신혜, 2019, p. 93). 아동보호 통합 지원 전문서비스 모듈은 원가정 보호서비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가족 재결합 서비스로 구성되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보호 통합 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맞춤형 대응 시스템에 의한 현장조사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의 두 가지를 강조한 사례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김경희, 윤민화, 정해린, 구혜완, 2018, p. 29).

• 예방적 조치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교육기관, 입양기관, 아

동 대상 서비스 인력, 의료기관, 사회복지 기관,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적용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행위자 대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혹은 학대 행위자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학대 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다.

나. 노인

• 서비스 대상과 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체계에서 서비스 대상은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학대 행위자이다. 노인학대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노인학대로 판단된 경우 개입이 이루어진다. 노인학대는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며 2018년 기준 가정 내에서 89%, 생활시설에서 7.3%가 발생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 87). 노인학대 피해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노인학대 피해자는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한 취약성이 있다. 2018년 학대 피해 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23.3%였고,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 노인은 전체의 10.6%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p. 58-59). 노인학대의 개념은 <표 3-6>과 같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를 포함한다.

〈표 3-6〉 노인학대의 하위 항목

| 구분 | 내용 |
|--------|---|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 등을 포함)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중복학대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 viii.

• 주요 기능과 전달체계

노인 영역의 보호서비스는 신고 접수, 사례 분류 및 응급조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및 판정,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심리 지원,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생활 지원, 정보 제공, 사후관리, 학대 행위자 대상 서비스, 신고의무 및 예방 교육 등이다.

노인 영역의 주요 전달체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며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 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 노인학대 조사 업무

경찰과 지자체, 노인학대 신고 전화를 통하여 사례들이 접수 및 연계된다. 2018년 전체 신고 건수는 1만 5482건이고 학대 사례는 5188건이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p. 17-18). 신고 접수된 사례는 학대 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응급 사례의 경우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응급 사례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가능한 한 112 또는 119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대 피해 노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 피해 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인이 이를 판단할 지적·심리적 능력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 40).

〈표 3-7〉 노인학대 사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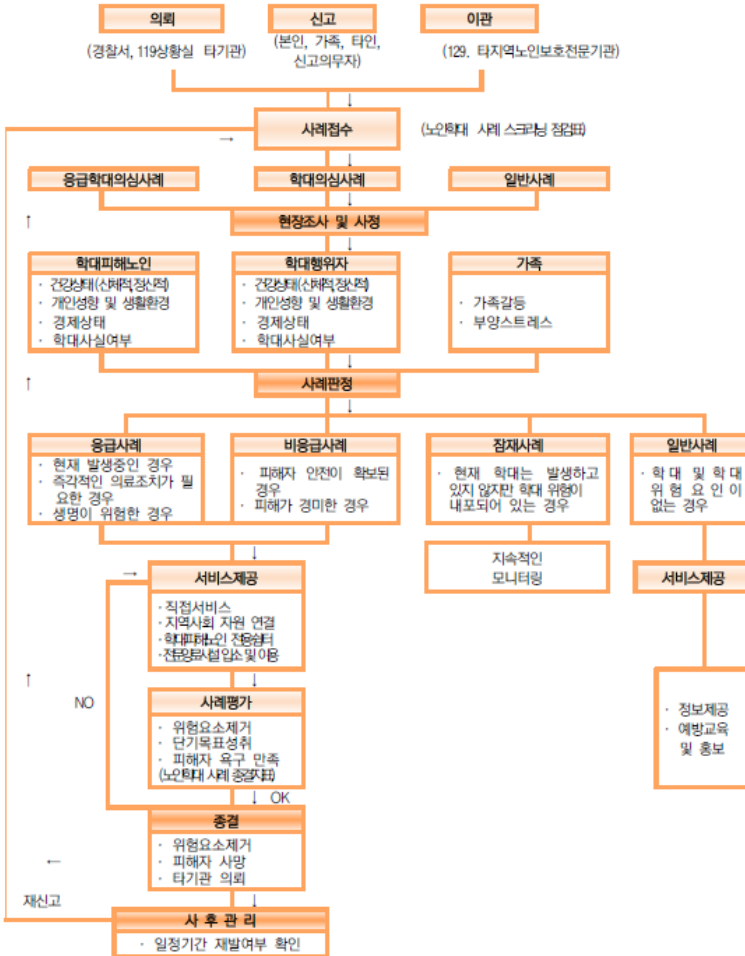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응급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필요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 비응급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 잠재적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 vii.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관서에 동행 요청을 할 수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조사, 판정, 사후 처리는 [그림 3-2]와 같다. 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가 원칙이지만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학대 피해 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 피해 노인의 이사 및 이주 등의 경우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 37). 노인학대 판정에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노인학대 분쟁 사례의 조정업무 및 사실조사,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통계작성·교육 및 홍보, 노인학대 우수사례 선정 및 사례집 발간, 노인학대 특수사례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이 어려운 사례들의 경우 지역사례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판정을 진행한다.

한편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경찰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고, 필요시 시설 내 학대와 부정수급 등의 중복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 직원까지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판정을 마친 후 지자체에 판정서 혹은 의견서를 보내고 지자체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시설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시 행정처분까지 진행된다.

[그림 3-2] 노인학대 사례 업무 진행도



자료: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노인 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p. 208.

• 노인학대의 특징과 서비스 필요성

노인학대 중 다수가 친족에 의하여 발생되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피해자가 행위자를 보호하거나 사법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을 때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현장에서 나타났다. 즉, 현장에서 처벌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처벌 중심으로 법률을 강화한다면 피해 노인의 행위자 보호를 더욱 강화시키고 학대 사례가 은폐될 우려가 있다(이현민, 2018, p. 256).

노인 영역에서 자기방임의 개념이 존재하며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보호권리 중 어느 쪽을 중요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자기방임 사례에서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존중하고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할지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 상담원의 가치와 피해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충돌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선택권이 가능한 복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이현민, 2018, p. 256).

• 전달체계별 주요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2018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체 상담 건수는 12만 7965건이며 학대상담은 10만 2172건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p. 24-25). 2018년 학대 피해 노인 대상 제공서비스는 상담서비스(57.9%), 정보제공서비스(33.7%), 복지서비스(6.7%)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 63). 노인학대 사건의 특징으로 인하여 대부분 고소, 고발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적 지원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서비스 대상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연계되는 입소노인과 이용노인이다(보건복지부, 2019a, p. 232). 전용 쉼터에 입소하거나 전용쉼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을 ‘보호노인’으로 칭한다. 65세 이상의 학대 피해 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학대 피해 노인이 고령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에 입소가 가능하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 피해 치료를 위한 기본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 피해 노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노인, 노숙 노인, 정신 질환 노인은 적합한 타 시설 등에 연계하고 연계 전까지 일시보호 가능하다. 학대 피해 노인 일시보호 기간은 4개월이며 이후 원가정 복귀, 노인보호시설 연계 등으로 연결된다. 학대 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까지 보호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a, pp. 240, 242).

〈표 3-8〉 노인보호체계의 서비스 내용

| 기관 |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상담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 대상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전문적 상담을 제공 • 학대상담: 신고 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한 상담 • 일반상담: 단순 정보 제공이나 기관안내 등의 문의,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한 상담 • 접수상담: 신고 접수 시의 초기 상담 • 진행상담: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학대 피해 노 |

| 기관 |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
|-------------|------------|---|
| | | 인 상담, 가족 상담, 학대 행위자 상담, 관련자 및 주변인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상담: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 확보 후(학대 피해 노인의 위협요인 제거 및 학대 행위자 분리 등) 종결을 앞두고 실시 |
| | 사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 피해 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전화 및 방문 상담 등) |
| | 복지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자원을 제공(국민기초수급권 등) |
| | 법률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 지원을 제공 |
| | 의료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피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 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적 치료서비스(의료서비스 이송,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등) |
| | 보호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 |
| 학대피해노인 전용센터 | 생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생활 지원 |
| | 의료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 | 상담 및 심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
| | 법률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서비스 연계 및 지원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자료: 다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표를 재구성함.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p. iii-iv;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노인 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p. 240.

• 예방적 조치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적용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노인 영역에서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개입은 강제성이 없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학대 원인이 개인의 성격 문제나 부양 부담, 스트레스, 실직 등의 요인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노인보호체계에서 학대 행위자 대상 서비스는 처벌보다는 상담·치료적 차원의 개입이 제공된다. 2018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행위자 대상 서비스는 학대 피해 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비교할 때 18.9% 수준이며 한 사례당 평균 4.8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 xxii).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장애인

• 서비스 대상과 학대의 개념

장애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관하였고 2018년부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전국 단위로 장애인학대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학대 우려가 있는 장애인 및 학대 피해 장애인, 피해 장애인의 가족 등이다.²⁾ 학대의 발생 현장은 피해자 거주지, 행위자 거주지, 직장 및 일터, 교육기관, 의료기관, 거주시설, 이용시설, 기타 시설 등이다. 장애인 학대의 개념은 <표 3-9>와 같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을 포함한다.

2) 미등록장애인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함.

〈표 3-9〉 장애인학대의 하위 항목

| 구분 | 내용 |
|--------|--|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
| 정서적 학대 | 언어적인 방법(폭언, 협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성적 학대 |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 |
| 경제적 착취 |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 |
| 유기·방임 |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 24.

• 주요 기능과 전달체계

장애인 영역의 보호서비스는 신고 접수, 조사 및 판정,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지원, 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기타 지원, 보호, 사후관리, 학대 행위자 대상 서비스, 신고의무 및 예방 교육 등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도화되어 학대 조사 및 사례판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옹호기관 지원,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 생산·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1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전달체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역 장애인인권

센터 등이 장애인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존재하였다(서재경, 제철웅, 최윤경, 2016, p. 152).

• 장애인학대 조사 및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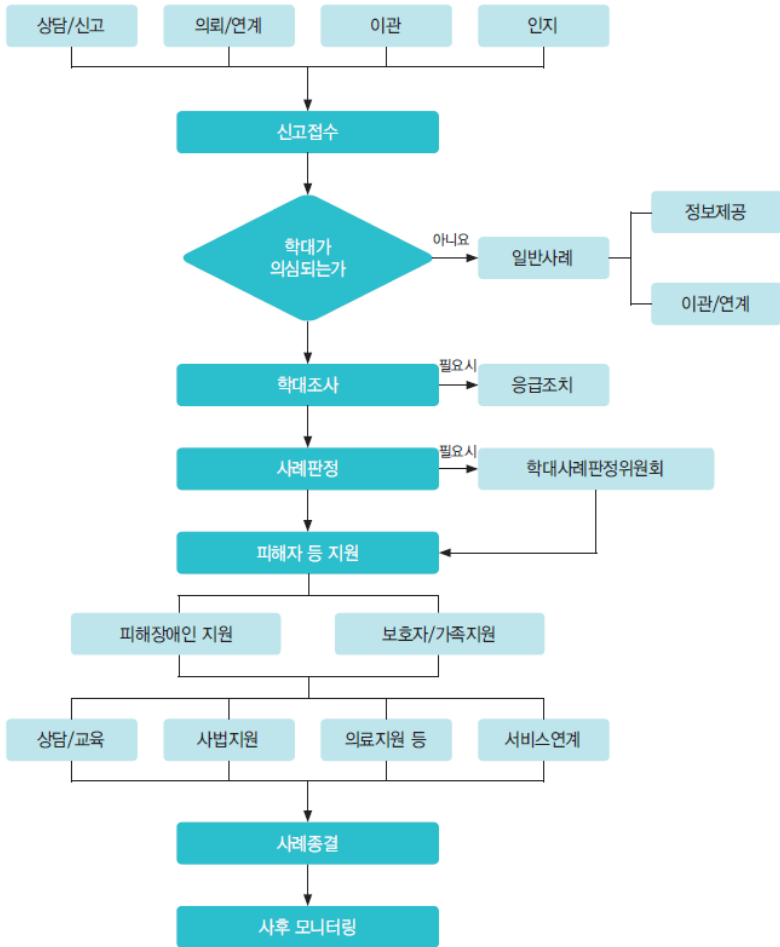
2018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3658건이며 학대신고 건수는 1835건이었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p. 58).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고 접수 → 조사 → 사례판정 → 피해자 등 지원 → 사례 종결 → 사후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판정한다.

장애인학대 조사란 신고 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뜻하며 피해 장애인에 대한 면담, 학대 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증거 및 입증 서류 확인을 진행한다. 학대 조사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여러 차례 이뤄질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질문이나 자료 요청과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90조에서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규정만으로는 적극적 조사가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기관 등에서 관계자 외 인력을 동원하여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없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규모에도 한계도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은 사례에 대한 학대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시설의 장애인학대 사건이나 학대가 명확한 상

황인 경우 경찰의 동행을 요청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인력을 부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3-3] 장애인학대 사례 지원 체계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p. 33.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하여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여 학대 사례 여부를 결정한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관계 공무원, 장애인 복지 및 법률·의료·인권활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장애인학대 해당 여부, 학대 행위자나 가족 등 관련자들의 의견 청취,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pp. 25-26).

피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학대의 인지와 서비스 지원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후견인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경우 연계를 통하여 후견인 관련 지원을 진행한다.

〈표 3-10〉 장애인학대 조사 및 판정

| 구분 | 내용 |
|-------|---|
| 학대 조사 | 신고 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 |
| 응급조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
| 사례판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장애인학대 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 사례로 판정하고 있음 |
| 사례회의 | 신고 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사례를 내부적으로 공유·논의하며 사례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내부회의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 25.

• 전달체계별 주요 서비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피해 장애인의 권익과 의사에 부합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 장애인 등 관련자의 인적 사항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되

면 피해 장애인과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피해 사실의 확인, 지원과정,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지원이 마무리되면 사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평가하고 사례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사례 종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피해 장애인의 재학대 발생 여부나 안정적인 생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p. 32).

〈표 3-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서비스

| 구분 | 내용 |
|-----------|--|
| 피해 장애인 지원 | 사례판정 이후 학대로 인한 후유증의 감소, 학대의 재발 방지, 피해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공 |
| | 의료 지원 학대로 인한 질환 등에 대하여 의료적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말하며 통원 치료나 검진 등 |
| | 심리 지원 피해 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심리 진단, 심리상담, 심리치료 제공 |
| | 거주 지원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신청 등을 지원 |
| | 사법 지원 학대 행위자의 형사처벌, 학대로 인하여 피해 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견인 선임 등의 지원 |
| | 복지 지원 장애인 등록,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기초생활수급비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취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자원 연계 |
| | 기타 지원 피해 장애인과 학대 행위자 간의 중재나 교육 연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감사나 행정처분 요구, 사례 지원과 관련된 상담 |
| 상담 및 지원 | 신고 접수 이후부터 사례 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실시하는 피해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구체적인 피해 장애인 지원 활동 |
| 사례 종결 | 필요한 지원이 완료되었거나, 지원이 불가능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경우, 타 기관에서 이미 피해자 지원이 실시되어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타 지역 기관으로 사례가 이관된 경우 사례를 종결 |
| 사후모니터링 | 사례 종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피해 장애인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업무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p. 26, 10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의료 지원, 심리 지원, 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기타 지원 등을 실시한다. 2018년 학대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1만 5885회의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p. 77). 장애인학대 피해자 대상 지원은 기타 지원이 42.5%, 사법 지원이 23.5%, 복지 지원 10.2%, 거주 지원은 10.0% 순으로 제공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p. 109).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장애인 학대 유형에서 경제적 착취가 24.5%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p. 41). 전문가 인터뷰에 의하면 다른 영역과 다르게 장애인 대상 학대에서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고 장기간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보상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구성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한 인력이 다른 영역 대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법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사법 지원은 고발 및 수사 의뢰, 후견인 선임, 법률 상담 및 절차 지원, 소송구조 등을 포함한다. 고발 및 수사 의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의로 행위자를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고, 후견인 선임은 피해 장애인을 위해 후견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선임 절차를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 법률 상담 및 절차 지원, 기관의 직접 소송구조 및 소송구조 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은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입소 대상은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이며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입소를 의뢰하는 경우이다. 쉼터의 경우 보호기능, 심리 지원 및 상담 지원, 의료

기관 인도 등의 의료 지원, 사회복지 지원(생활훈련,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를 하고 있다(유경민, 이윤희, 송기호, 2017, p. 39). 피해 장애인의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표 3-12〉 피해 장애인 쉼터의 서비스

| 구분 | 내용 |
|----------|---|
| 입시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장애인의 긴급 분리를 통한 2차적 피해 예방 • 숙식 및 쉼터 생활 지원 |
| 상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 필요시 외부 유관기관 연계 |
| 의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치료 지원 • 의료 지원 연계 |
| 사회 복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 •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회복지시설 연계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연계 지원 및 제도 및 기관 안내 |

자료: 다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표를 재구성함. 유경민, 이윤희, 송기호. (2017).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pp. 128-129; 보건복지부. (2019c).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p. 249.

• 예방적 조치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지원 관련 인력,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기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가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신고 및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한다. 다만 신고자 대상 의무교육 외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형법의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가능하나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어렵고 학대 행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제하는 규정이나 조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 유인이 없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의 업무로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c, p. 212). 하지만 장애인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노인학대와 다르게 수강명령, 치료명령과 같은 조치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강제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에서 현장 전문가는 사법적 차원이 아닌 개입 방식이 시설 내 학대나 지역사회 내 착취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써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2. 성폭력, 부부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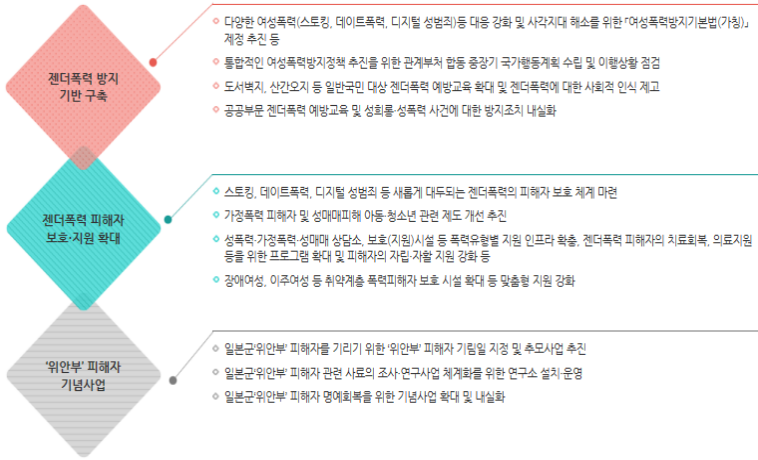
여성가족부가 성폭력과 부부폭력(가정폭력)의 주관 부처로서 젠더폭력 차원에서 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 관계부처 계획 수립,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확대부터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관련 지원과 인프라 확대,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4] 여성가족부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추진목표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및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피해자 권익보호 강화 및 예방교육 내실화로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 추진내용



◆ 기대효과

✓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 불안감 해소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9b).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http://www.mogef.go.kr/mp/pcf/mp_pcf_f004.do에서 2019.11.1. 인출.

가. 성폭력

• 서비스 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의 지원 대상은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이다. 2018년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 3478건이었다(경찰청 홈페이지, 2019a, p. 3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는 범죄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급적 피해자를 지원한다.³⁾

• 주요 기능과 전달체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등에 근거하여 경찰 신고, 고소·고발, 수사, 기소 등의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성폭력 영역의 보호서비스는 신고 접수, 위기개입(초기 상담 및 긴급보호, 긴급피난처), 의료 지원, 상담 지원, 수사 지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법률 지원, 주거 및 보호 지원, 사후관리, 학대 행위자 대상 서비스, 성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다.

〈표 3-1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 구분 | 내용 |
|---------------|--|
| 의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피해의 치료, 임신 여부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진단서 발급 등에 소요된 비용 지원 병원 간병서비스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 |
| 돌봄 비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 법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민사·가사 소송,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를 무료로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 연계) |
| 주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
| 보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친족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치료·보호·학업 및 자립 등 지원 |

자료: 여성가족부. (2019d).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p. 142.

3) 성인 남성 피해자 대상으로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함(여성가족부, 2019e, p. 19).

성폭력 피해 지원 전달체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표 3-14>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3-1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 구분 | 지원 내용 |
|------------------|---|
|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 여성과 가족 24시간 긴급 상담과 구조, 보호 등 |
| 해바라기센터 |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
|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 지원,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등의 동행, 법률구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치료, 자립·자활 교육, 취업정보 제공, 의료 지원,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등의 동행, 법률구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 요청 및 확인, 점검, 기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

자료: 다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표를 재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d).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박선영. (2018).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pp. 3, 54.

• 전달체계별 주요 서비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여성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게이트웨이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1차 초기상담, 긴급보호, 긴급피난처 제공,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의 위기개입을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심리치료, 의료·수사 지원,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위기 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으로 구분된다. 위기 지원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위기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제공하며 아동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혹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지원, 심리평가 및 치료, 사건 면담,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한다. 통합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의 위기 상담, 일반 상담, 심리 지원, 의료 지원, 법률 및 수사 지원 등을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9e, p. 104).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체 피해건 2만 7450명 중 2만 449명이 성폭력 피해자로, 성폭력 피해 지원의 비중이 크다(여성가족부, 2019c). 2018년 성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총 35만 466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담 지원(30%), 의료 지원(26%), 수사법률 지원(14%), 심리 지원(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c).

〈표 3-15〉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 구분 | 내용 |
|-----------------|--|
|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초기 접수 |
| 수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진술조서 • 응급기트를 통한 증거 채취 • 형사·민사 절차상 피해자 지원제도를 고지 • 여성 경찰관의 수사 지원 |
| 상담·심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지원 • 심리 평가, 심리치료 • 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가족 상담 |
| 법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법률구조 연계 지원 • 배상명령제도 안내 및 활용 권유 • 법률 상담 • 수사·재판 지원 |
| 의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의학과, 외상 및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 연계 치료 • 피해자 진료 및 의무기록 발급 지원 |
| 피해자 부대비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비, 식비,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원 |
| 사례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 정보 제공 • 보호시설 연계 • 성폭력상담소 연계 • 근거리 치료 기관 연계 •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 자원 연계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e). 2019년 해바라기센터 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pp. 17-88.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d, p. 59). 상담소의 서비스 대상은 성폭행 피해자로 장애인을 모두 포괄한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등의 연계, 의료 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시 동행, 법률구조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 성폭력상담소는 2018년 총 15만 4378건의 성폭력 상담을 제공하였다(여성가족부, 2019b, p. 1).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6만 328건의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심리/정서적 지원(57.6%), 수사/법적 지원(13%), 의료 지원(5.2%), 시설입소 연계(2.7%)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b, p. 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호시설은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의료 지원,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시 동행, 법률구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의 업무를 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수는 2018년 180명이었고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총 12만 675건이었다(여성가족부, 2019b, pp. 6, 8). 주요 지원 내용은 심리·정서적 지원(52.1%), 자립 지원(14.1%), 학교 문제 지원(8.3%), 의료 지원(7.4%)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b, p. 8).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기준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의 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성폭력방지법 제12조, 제15조). 보호시설 입소 대상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시설 퇴소자를 지원하는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퇴소자를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 입소할 수 있고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성폭력방지법 제16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장애인보호시설과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은 2년 이내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입소할 수 있으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성폭력방지법 제16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 2).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증가에 따라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립되어 피해자 대상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 지원, 기타 지원 연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박선영, 2018, p. 55).

• 예방적 조치 및 가해자 대상 개입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폭력 예방 교육은 2008년 성매매 예방 교육, 2013년 성폭력 예방 교

육, 2014년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공공기관 대상 의무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생애주기별 폭력예방 교육과 의무적 기관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종사자와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이 제공된다. 특히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지역 주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19d, p. 229).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이 정해진다.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외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자, 지적장애인 가해자 등에게 사전 개별 교정·치료 상담, 집단 교정·치료 상담, 최종 교정·치료 상담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0.2.5.).

나. 부부폭력

• 부부폭력의 특징과 서비스 대상

경찰에 신고된 부부폭력(가정폭력) 사건은 <표 3-16>과 같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조치를 취한다. 부부폭력(가정폭력) 사건은 신고, 수사, 기소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가정보호사건, 형사사건 등으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정폭력 신고 건이 입건되는 경우가 적고 가정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건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12 신고 24만 8660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4만 1720건에 불과하다(경찰청, 2019. 7. 12.). 국정감사 보도자료(2018. 10. 29.)에서도 2017년 가정폭

력에 대한 신고는 총 27만 9082건이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3만 8538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인원은 1만 5979건에 불과하였다.

〈표 3-16〉 사법체계의 가정폭력 대응 절차

| 구분 | 내용 |
|----|---|
| 경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출동: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 • 응급조치: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긴급임시조치: ① 피해자·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검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조치 청구: 위 긴급임시조치와 내용 동일 • 가정보호사건: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 처리 • 가정폭력 3진아웃제: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
| 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조치: ①~③ 위 긴급임시조치와 내용 동일,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도록 결정 • 보호처분 결정: ① 행위자가 피해자·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행위자가 피해자·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제한, ③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④ 사회봉사·수감명령, ⑤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⑧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 피해자보호명령: ①~③ 위 긴급임시조치와 내용 동일, ④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실시 • 항고 및 재항고 • 민사특례로서 배상명령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행위자, 비밀준수 의무자, 신고의무자에 대한 제재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윤정숙, 이승현, 김미숙, 김유경, 김지민, 박미량. (2017).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pp. 130-182.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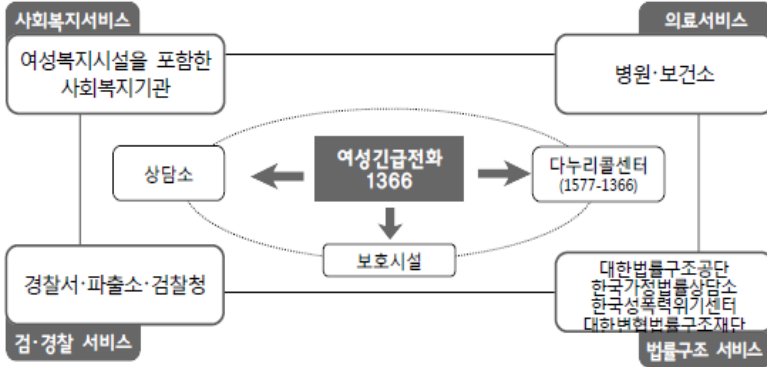
원칙적으로 부부폭력 영역의 서비스 대상은 피해자, 행위자(가해자), 자녀이다. 부부폭력이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에 부부폭력 피해는 더욱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본 영역의 보호 서비스는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법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지원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자(부부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험에 처한 여성들에게 즉각적 보호가 필요한 반면 사회통념과 법제도(고소 등에서 피해자의 결정 필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서비스는 사법체계와 별개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자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 대상이 아동이나 노인이 아닌 성인이라는 특징과 부부폭력에 대한 전통적인 통념으로 인하여 국가의 간섭 권리보다는 자기결정권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 주요 기능과 전달체계

부부폭력 영역의 보호서비스는 신고 접수, 상담, 서비스 제공, 의료 지원, 주거 지원, 피해자 보호, 사후관리,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방 교육 등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주요 지원 체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 가정폭력 상담소(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6조), 쉼터 등의 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이다. 가정폭력 신고는 1366센터로 연결되고 1366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를 관련 지원기관으로 연계한다.

[그림 3-5] 지역별 가정폭력 네트워크 운영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2019d).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p. 407.

• 전달체계별 주요 서비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 및 보호,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를 위한 초기지원을 제공한다. 피해 여성들이 긴급한 구조, 보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24시간 운영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 상담에 해당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부부폭력 영역의 전달체계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18년 18만 9057건이었다(여성가족부, 2019a).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를 위한 초기지원을 제공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 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피해자 긴급 구조의 지원,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 가족에 대한 임시보호(최대 7일),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여성 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임시보호 등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9d, pp. 399-400).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을 임시 보호, 의료기관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법률구조기관에 대해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가정폭력 상담소는 2018년 총 39만 4192건의 상담을 수행하였고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은 21만 9459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여성가족부, 2019a). 피해자 대상 지원은 심리정서적 지원(70.4%), 수사/법적 지원(8.9%), 의료 지원(1.6%), 시설입소 연계(1.3%)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a).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의 구조재단 연계 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산 조사를 필요로 한다. 의료비 지원은 병원을 연계하고 기관에서 의료비 행정처리를 지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에 협조와 지원 요청, 퇴소 후 자립 지원(직업 및 취업 훈련 프로그램 등),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한다(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단순 보호뿐만 아니라 자립까지 지원하고자 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업 및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 신청 및 선정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수행한다(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에 근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는 2018년 2704명이었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6만 9682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

다(여성가족부, 2019a). 주요 지원 내용은 심리정서적 지원(52.9%), 동반 아동 지원(18.5%). 의료 지원(12.5%, 자립 지원(5.6%), 수사/법적 지원(3%)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a).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대상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이다. 피해자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지적장애정신지체인·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9d, p. 359). 보호시설 중 가족보호시설은 일반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순으로 입소 우선순위를 준다. 정신장애나 경계성 장애가 있으면 입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유경민 외, 2017, p. 55). 임시보호는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단기보호시설(가족보호시설 포함)은 6개월 이내(각 3개월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 이내까지 보호한다(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또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쉼터, 그룹홈을 지원한다. 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에게 숙식, 상담,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자립 지원 등 피해자 보호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룹홈은 쉼터 대비 피해자 자립을 강조하는 보호시설이며,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의 주거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9d, pp. 463, 492).

한편 해바라기센터에서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수사 지원, 상담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비정부기구(NGO) 연계 등이다(여성가족부, 2019e). 수사 지원은 진술녹화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긴급임시조치 등 수사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후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인계 등이다. 그 외에 상담 지원, 법률구조기관을 통한 무료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지원, 배상신청 절차 지원, 치료 및 상담전문기관 연계, 피해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 진료와 진단서 발급을 지원하되, 의료비는 피해자 진료 의료기관이나 센터 소재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고 자치단체장은 치료비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e, p. 67).

〈표 3-1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

| 구분 | 내용 |
|---------|--|
| 신고 및 발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의료기관, 시설 및 센터, 상담소, 관련 공무원 등의 신고의무자 •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신고 |
| 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및 복지 지원 • 상담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수행 기관: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 의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지원 • 폭력 피해 여성 진료 지원 협약 |
| 주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및 중장기 쉼터 제공 •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사업(공동생활가정 지원)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부여 |
| 피해자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주민등록 직권조치 방법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가정폭력 피해 아동 취학 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d).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예방적 조치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은 폭력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 제공되며, 관련 내용과 교육 대상은 성폭력 영역의 폭력 예방 교육과 동일하다. 가정폭력 가해자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원의 상담 위탁 대상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담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 경찰관서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요청한 자이다(여성가족부, 2019d, p. 453).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치료, 부부캠프 등으로 구성된다.

3. 청소년/학교, 군, 산업

세 영역은 모두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체계 및 보호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한 영역이다. 영역별 폭력·학대 문제에 관여하는 개별 서비스를 바탕으로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를 살펴보겠다.

가. 청소년/학교

• **청소년의 범위와 폭력·학대 문제**

청소년 영역은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연령 범위가 다르고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서 연령 구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며,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 기준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다. 경찰업무 실무에서 초등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는 아동학대 관

련법으로, 중·고등학생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관련법으로 처리한다(윤정숙 외, 2017, p. 36). 청소년 연령 범위의 일관성 부족과 아동과 청소년 사업 담당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의 연속성 문제와 청소년 대상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폭력·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은 영역의 구분에서도 모호한 경계에 위치하고 폭력·학대의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혼재되는 특징을 보인다. 청소년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피해자 혹은 성폭력,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학교 내에서 혹은 학교 밖에서 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아동기 폭력·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비행이나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청소년/학교 영역의 서비스 대상과 주요 지원 체계

청소년/학교 영역에서 폭력·학대 문제로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학대 피해자, 아동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중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청소년폭력 가해자 등이다. 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센터를 포함), 부부폭력과 동반한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다루어진다. 청소년폭력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경우 학교폭력대응체계를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며, 폭력가해의 경중에 따라 청소년 교정 영역에서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진다. 또한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지원 체계와 청소년쉼터가 존재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등에서도 폭력·학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청소년 분야의 폭력 문제는 주관부처나 전달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의 제도 내에서 다루

어진다. 폭력과 학대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경로와 기관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과 선택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표 3-18〉 청소년·학교 영역 폭력·학대 관련 부처별 지원

| 구분 | 내용 |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Wee프로젝트 운영⁴⁾ •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지원기관(상담 지원형, 기숙형, 병원형) 운영 |
| 여성가족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체계(CYS-Net)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⁶⁾ •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운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
| 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사법 지원 체계 운영 •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기움센터)를 통한 선도교육, 예방 교육 등 제공 • 소년법에 대한 사후관리 •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 지원 •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 보호자(부모) 대상 특별교육 제도 운영 |
| 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 선도프로그램 등 경찰 단계 선도제도 운영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김현진, 김지연, 이승현, 류지용, 정동철, 정인식. (2018).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p. 55-65, pp. 76-90, pp. 96-100, pp.119, 130.

4) 단위학교의 Wee클래스, 지역교육청 단위의 Wee센터, 시도교육청 단위의 Wee스쿨(장기적 치료 및 교육 적응 지원, 유관기관 연계) 및 가정형 Wee센터로 구성되며 위기학생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재활, 가해자 선도 등을 수행함.
 5) 2018년 말 전국 229개 시도 및 시군구에 구축되어 있음(여성가족부, 2019h, p. 395).
 6) 센터의 기능 중 하나로 청소년 폭력 및 학대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가 포함됨.

• 지역 내 청소년보호체계

청소년 영역에서 복지체계의 서비스에 폭력·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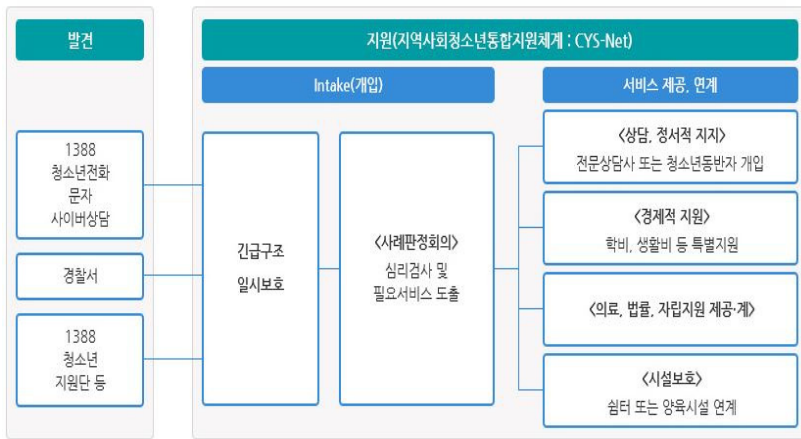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상담전화 1388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채널, 지역사회 자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 및 구조하며,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해 상담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388 청소년 상담 채널에서 상담과 청소년 동반자 파견 등을 지원한다. 시·도 센터에 설치된 일시보호소에서 위기 상황(가출, 성매매, 가정·학교폭력 등)에 노출된 청소년을 24시간 동안 보호한다. 이후 쉼터 및 양육시설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를 통하여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지원한다(김현진 외, 2018, p. 77; 여성가족부, 2019h, pp. 449-450).

쉼터는 가출 청소년 보호를 통하여 비행과 범죄 유입을 예방하며, 일시 보호 및 숙식 제공, 의료 및 법률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가족개입, 가정 및 학교 복귀, 학업 및 취업 지원 활동 등을 제공한다. 일시보호는 24시간~7일 이내, 단기쉼터는 3~9개월,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 보호를 제공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하며 단기쉼터는 가출 청소년, 일시쉼터는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9h, pp. 512-513).

청소년 대상 지원 체계에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게이트웨이가 일원

화되어 있지 못하며 시설 간 연계와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폭력·학대 관련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청소년/학교 영역에서 다양한 하위 체계가 중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이 주요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다.

[그림 3-6]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CYS-Net)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9a).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CYS-Net).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6.do에서 2019. 11. 29. 인출.

• 학교폭력 대응체계

학교폭력의 개념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만 포함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는 [그림 3-7]과 같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학생은 피해 조치를, 가해 학생은 가해 조치를 받는다. 피해 학생 보호 지원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기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출석일수 산입, 성적평가 등 불이익 금지, 치료비 부담 등) 등이 있다(학교폭력예방법 대통령령 제16조). 가해자 대상 조치는 서

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다(학교폭력예방법 대통령령 제17조).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피해자의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폭력 행위로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없이도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p. 81).

학교폭력 신고의 대표적 공식 창구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경찰이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초기대응을 강화하는데 이 역할을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수행하고 있다(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p. 83).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차원의 대응은 초기대응(인지노력, 신고 접수, 초기개입), 사안조사(긴급조치, 전담기구 사안조사), 조치결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의결, 학교장 처분), 조치(조치 이행, 사후 지도, 불복 시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친다(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pp. 8-9). 교내 책임교사와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p. 32).

학교 내에서는 Wee클래스의 전문상담교사가 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지역 내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⁷⁾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SOS지원단(푸른나무재단), 신경정신과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여러 기관을 통해 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또래조정제도, 분쟁조정제도, 피해 학생 전담기

7) 교육청 직영 및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통학형, 기숙형 피해 학생 보호기관.

관, 교우관계 회복 기간 제도,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 등의 회복적 정의 모델에 근거한 제도들을 적용할 수 있다(이유진, 2012, pp. 41-44). 교육청은 가해 학생 보호자 대상 특별교육 이수기관⁸⁾을 안내하여 가해자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p. 65).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학교 체계에서 언어문화 개선 및 언어폭력 예방 교육 주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주간, 학생 주도의 갈등 해결 및 학교폭력 예방 역량 함양을 위한 또래상담동아리 운영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 2018, pp. 5-6). 법무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 강연’(학교폭력,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2018, p. 42).

한편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청소년폭력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상담전화, 청소년 상담 지원⁹⁾,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청소년폭력 예방 특화사업,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푸른나무재단은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조력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p. 90).

8) 전국 시·도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 교육기관,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푸른나무재단, 평화여성회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9) 개인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상담, 심리검사,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 학교폭력 피해 종합 지원, 보호소년 수강명령 위탁, 법률 상담

[그림 3-7] 학교폭력 대응체계 현황

| | | |
|-------------|---|---|
| 중앙부처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심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단체장이 요청 심의 실무위원회(위원장 : 교육부차관) |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 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경찰청 종교단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관련기관 |
| 광역시·도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위원장 : 부단체장) | |
|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수립 |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 관 지역상담센터, 민간단체 등의 관련기관 |
| 기초 시·군·구 |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위원장 : 부단체장) | |
| |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사업추진 | 시·군·구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 Wee센터, CYS-Net 등 지역상담센터, 자율 방법대,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단체 연계 |
| 학교현장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장 : 호선(교감, 학부모위원)) |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체제구축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선도 및 징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전담기구 학생보호인력 | 경찰지구대, 파출소, 학부모자원봉사 지역 내 Wee센터, CYS-Net 등 민간전문가 협력 |

자료: 박헌국. (2018). 학교폭력 예방대책 운영현황과 연계체계 분석. p. 130. 한국경찰연구, 17(2).

• 청소년 교정복지

청소년/학교 영역에서 폭력 가해자는 범죄 사실에 따라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검찰 차원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상담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의 조건)을 받을 수 있다. 혹은 가해자는 학교폭력의 범위 내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가해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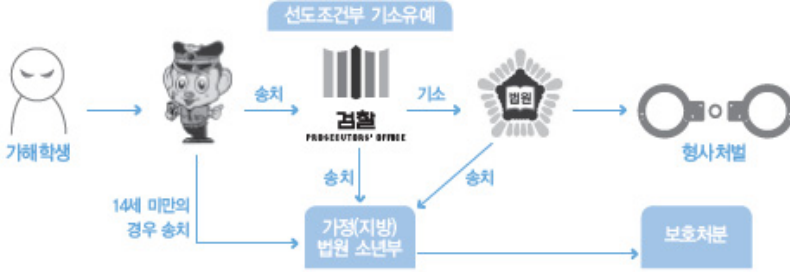
〈표 3-19〉 청소년·학교폭력 가해자 대상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조치 |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처분 |
|--|--|
|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자료: 다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표를 재구성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법률 제135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법률 제16441호.

청소년 교정복지는 소년법 및 비행청소년 대상 교정, 교육, 재활, 복지를 지원하고 범죄에 취약한 지역사회나 유해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과 제반 활동까지 포괄한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며,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으로 구분된다(소년법, 제4조 1항).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죄소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p. 92). 보호처분 조치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다.

[그림 3-8] 소년사법처리 절차



자료: 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세종: 교육부, p. 83.

청소년 교정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은 <표 3-20>와 같다.

<표 3-20> 청소년 교정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

| 기관 | 지원 내용 |
|----------------------------|---|
| 경찰, 검찰, 소년법원 | • 사법체계 |
| 소년교도소, 소년원 | • 소년법을 수용하는 교정시설 ¹⁰⁾ |
|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청소년 꿈키움센터) | • 소년원의 대안학교로의 전환 •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 법원의 대안교육 처분을 받은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심리상담, 법교육, 보호자교육 등을 제공 |
| 보호관찰 | • 구금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범죄성 개선 및 재범 방지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법무보호 등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및 원호 |
| 소년보호시설 | • 소년법원에서 4호 처분을 받는 소년 대상 시설에서의 감호, 학업, 직업교육 제공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6호 처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 소년분류심사원 | • 소년법 규정에 따라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분류하고 심사 • 위탁소년의 환경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수용 및 처우 결정함 |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대상별로 맞춤형 치유·재활 서비스 제공 • 장기, 단기 치유과정 제공 |
|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 | • 화해권고제도 명령에 따라 수강 • 보호관찰소 시범사업 |

| 기관 | 지원 내용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 가석방처분자, 출소자 대상 물질적, 정신적 원조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2019a). 청소년비행예방. www.cppb.go.kr/cppb/716/subview.do에서 2019. 11. 22. 인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2019b). 소년보호관찰. www.cppb.go.kr/cppb/717/subview.do에서 2019. 11. 22. 인출. 복지포 홈페이지. (2019).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운영.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44>에서 2019. 11. 22. 인출.

나. 군

군 영역의 폭력·학대 문제는 대상자가 군 영역 내에서 격리된 채 군사법체계 속에 있으며, 군 사회가 위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폐쇄성과 위계성에 근거한 폭력 및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군 내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2008년 「군인복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군 복지의 개념과 서비스는 확대되었으며 군인들의 병영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군 내에서 군 복지제도는 존재하나 군 사회복지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군 사회복지의 국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군 사회복지의 병사, 직업군인과 가족, 군 조직과 군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위기개입, 개인상담, 사례관리, 집단상담 등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병사를 대상으로는 위기개입,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박미은, 2018, p.

10)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이루어짐.

23). 병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에서 성격검사,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전투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 의료문제 상담 및 퇴원 계획, 알코올 및 약물 상담, 군 생활 부적응 상담, 가족 문제 및 대인관계 갈등 상담 등이 포함된다(박미은, 2018, p. 23).

하지만 현행 군 복지제도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적 실천을 제공하지 못하며 군 사회복지보다는 군 복지의 개념을 고수하고 있다. 군 제도 내에서 장병을 대상으로 국방헬프콜을 통한 고충상담 및 성폭력 신고가 가능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한 자살 및 군무이탈사고 예방, 민원 사전 해소 정도의 지원이 존재한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군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졌다. 2006년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제50보병사단의 협약, 2007년 부산 사직종합사회복지관과 제53보병사단의 협약, 2010년 두암종합사회복지관과 제31보병사단 간 협약이 체결되었다(김동수, 2016, p. 62; 손민희, 2016, p. 23; 신은경, 2016, p. 38). 2014년부터 진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군사례관리엔커링사업을 통해 부산 사직종합복지관과 제53사단, 강릉종합사회복지관과 제8군단, 대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제50사단, 두암종합사회복지관과 31사단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군사례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손민희, 2016, p. 23). 이와 같이 민-군 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바탕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소속 군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와 군 장병의 병영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부산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병사 및 초급 간부 대상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하였다(손민희, 2016, p. 22). 지원 내용에는 부적응 병사를 중심으로 한 상담서비스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민간 연계 군 사회복지 사업들은 제도화되지 못하고 시범적 사업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군 제도 내에서 폭력·학대는 구타, 성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군 내 위계를 바탕으로 한 폭력사건들이 사건화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병사들이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호 외, 2014, p. 113). 현재 군 내부의 폭력·학대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상담 정도이다. 민간 영역 기관에서 민-군 연계로 병영생활 적응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력·학대 문제를 경험하는 군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사회복지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 산업

산업 영역의 폭력·학대 문제는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등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영역이다. 기존에는 산업 영역에서의 폭력·학대는 자기결정권이 있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로 필요시 개인이 형사상·민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산업안전과 노동자 인권 측면에서 노동자 지원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산업 영역에서 폭력·학대와 관련된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와 근로자지원제도이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었다.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의 조치(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를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대상은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정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괴롭힘 사건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2019.7.17.).

근로자지원제도(EA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가 폭력 문제와 중첩될 수 있다. 근로자지원제도는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의 개인적, 정서적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제도이며, 문제를 가진 근로자와 가족, 친지, 직무조직,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최수찬, 우종민, 왕은자, 장승혁, 2017, pp. 2-3).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외상적 사건은 개인과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양한 외상적 사건 중에서 사업장 폭력 사건 또한 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수찬 외, 2017, pp. 273-274).

국내의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2009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제도 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최수찬 외, 2017, p. 336). 즉,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지원제도의 대상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에 위탁하여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갈등, 업무 과다, 건강 관리, 정서·성격, 자녀 양육(부부관계), 재무관리, 법률관계, 학업정보, 경력지원, 양성평등 등 11개 상담 분야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며, 최근 직장 내 괴롭힘까지 상담 범위에 포함하였다(근로복지공단, 2019.7.17.). 또한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의 심신건강 증진과 고충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원 제도 및 사내 상담소 등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최수찬 외, 2017, p. 329). 한국EAP협회에서 민간기업 대상 EA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기타 - 범죄 피해자

• 서비스 대상과 주요 내용

영역별 폭력·학대 제도와 별개로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표 3-21>과 같다.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안내하며, 주요 전달체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가 존재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개인과 가족을 의미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의 지원 대상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다. 이 영역의 보호서비스 중 일부는 성폭력, 부부폭력(가정폭력) 보호서비스와 일부 대상이 중첩된다.

<표 3-21> 범죄 피해자 지원

| 구분 | 내용 |
|--------------|---|
| 범죄피해구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로 인해 사망, 장애, 중상해 시 구조금 지급 |
| 긴급복지지원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지원(위기 상황 기준에 가정폭력, 학대 포함) •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 지원 |
| 범죄 피해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 지원: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 긴급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 사망한 피해자 유족 대상 장례비 지원 • 간병비 지원: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생계 등의 사유로 간병이 어려운 경우 간병비 지원 • 부대비용 지원 • 직업훈련비 지원 |
| 임시보호 및 주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임시숙소: 임시숙소 제공, 단기간 숙박비용 지원 • 스마일센터: 강력범죄로 주거지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 대상 임시주거시설 제공 • 주거 지원 제도: 범죄 피해자 대상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원 |
| 피해자 보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조서: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조서, 진술서 등을 작성 • 비상호출기: 보복 피해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 교부 • 이전비 지원: 보복 피해 우려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

| 구분 | 내용 |
|------------|---|
| 범률 및 기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범률구조: 대한범률구조공단에서 범률상담 및 무료소송대리 등을 지원 •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 당해 사건 처분 결과,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 구급 사실, 출소 사실 등을 통지 |
| 상담 및 심리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일센터에서 범죄 피해자 및 가족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자료: 다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표를 재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e). 2019년 해바라기 센터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pp. 35-36; 경찰청 홈페이지. (2019b). 범죄피해자 지원.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03.jsp>에서 2019.12.30. 인출.

주: 성폭력 등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제외함.

• 전달체계별 주요 서비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전달체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상해 등)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한다.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표 3-2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긴급구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근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범죄현장에서 상담, 피해자 보호, 병원 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정리(청소), 청소지원 등 피해 초기에 신속한 긴급구호 실시 |
| 신변보호 | 보복 범죄 대비 위치추적장치 지급, 법정 동행 및 수사기관 동행, 임시 주거시설 연계 |
| 주거 지원 | 임대차보증금 담보·저리 대출 지원, 임대주택 연계 지원 |
| 치료비 | 범죄 피해로 인해 지출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
| 심리치료비 | 피해자가 임상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실비 지원 |
| 간병비 등 | 간병비 :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생계 등의 사유로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 비용 지원 기타 부대비용 : 의료보조기구가 필요하거나 원거리 치료 시설 이용이 필요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 지원 |

| 구분 | 내용 |
|---------|---|
| 생계비 등 | 부양을 제공할 친족 등이 없는 피해자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 지원 |
| 현장정리비 등 | 피해자가 주거, 관리하는 정주 가능한 건조물이 범죄 피해로 오염·훼손 되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 지원 |
| 취업 지원비 | 피해자 본인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고자 하거나, 가족 등 기타 범죄 피해자가 새롭게 생계를 떠맡게 되어 구직하여야 할 때 그 훈련비 및 부대비용 지원 |
| 기타 | 범죄 피해자 상담(심리,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피해자 구조 제도 안내 등), 법정 모니터링 |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201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http://www.moj.go.kr/hum_07/2251/subview.do에서 2019.11.20. 인출.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상해 등)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등은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계 가능하다(유경민 외, 2017, p. 53). 범죄 피해자는 심리상담, 진단평가, 심리치료, 기타 심신단련 프로그램 등 심리서비스와 필요시 외부 정신과 병원 연계를 제공 받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법률상담, 재판모니터링 등의 법률서비스와 사회 복귀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범죄 발생이나 방화 등으로 거주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의뢰하거나 개인이 직접 입소를 신청하여 스마일센터의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 등의 이유로 사건화 및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찾아와 위협할 수 있는 경우는 입소를 제한한다(유경민 외, 2017, p. 53). 퇴소한 경우에도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표 3-23〉 스마일센터의 지원 내용

| 사업 | 내용 |
|--|---|
| 피해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조사 및 피해 상황 청취, 지원 방안 강구 • 정신과 진료(협력병원 연계) • 심리평가 및 심리 치유 지원 • 외부기관 강사 초빙 또는 관련기관 교육훈련 등 알선 • 여가활동 및 심신단련 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자조 모임 등 지원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생활관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거주 제공 및 관리 • 남성, 여성, 가족생활관으로 구분 • 입소자의 생활안전과 퇴소 시 가족연계 등 보호계획 수립 |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외부기관 지원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 연계 • 직업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 및 구직활동 알선 • 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연계를 통한 법률상담 |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인사를 포함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 센터 운영 관련 주요사항 자문(회계결산, 내부규정 변경 등) •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법률가, 임상심리사, 상담전문가 등 인력풀 구성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실정보 수집 및 분석 |
|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를 위한 심리 지원 교육 및 연구, 기록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일센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피해자 심리회복 관련 교육 • 피해자 상담치유 관련 연구 • 상담일지, 치유 경과 및 결과 등 기록 및 통계관리 |

자료: 법무부, (2019b). 스마일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선정 계획서, p. 2.
<http://www.moj.go.kr/moj/223/subview>에서 2019.11.20. 인출.

제3절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 인력

이 절은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근로조건, 교육훈련의 기준과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전문성 차원에서 서비스 인력의 운영 기준과 현황을 분석한다.

1. 아동, 노인, 장애인

세 영역의 주요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보호서비스 인력의 자격, 근로조건, 교육훈련의 기준과 현황을 파악한다.

가. 아동

• 아동보호전문기관

2019년 사업안내 기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국비 50%)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보건복지부, 2019b, p. 45).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재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이며 2019년 예산은 225억 원이었다(법무부, 2019a, p. 253). 2018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62곳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17). 2019년부터 아동학대의 조사 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되어 민간에서는 조사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이며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24>와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2018년 5월 894명으로 보고되었다(강영훈, 2018. 5. 5.). 지역아동보호기관 실무자가 담당하는 사례 수가 너무 많아서 개별 사례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정과 서비스 연계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기현 외, 2014, p. 25). 2018년 기준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총 2만 4604건의 학대 사례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p. 16-17) 종사자가 담당하는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4〉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1명(상담원 겸직 가능),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이상, 상담원 6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 |
| 자격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이상 학력 보유자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또는 대학 등에서 심리학(복지심리학 포함)을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
| 근로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사회)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 • 근로시간: 평일 8시간 근무 + 24시간 운영으로 인한 전화당직 근무 |
| 교육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100시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보호체계핵심인력양성워크숍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아동 분야 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위탁 방식¹¹⁾으로 운영되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국고비 40%)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자본보조를 지원받는다(보건복지부, 2019b, p. 63).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65곳이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29).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보육사와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이며,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25〉과 같다.

11) 법령(「아동복지법」 제52조의2)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군·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신고조건을 변경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표 3-25〉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 • 원장 1명, 보육사 3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
| 자격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혹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 대학 이상 심리학과 졸업자 -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
| 근로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 • 근로시간: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교대근무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아동 분야 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인력의 임금은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지자체와 시설의 부담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임금과 수당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탁 운영을 맡은 시설의 규모나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근로조건 등은 시설에 따라 편차가 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종사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김기현 외, 2014, p. 25). 또한 쉼터의 경우 아동의 가출 및 응급진료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유경민 외, 2017, p. 49).

나. 노인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영역의 주요 전달체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시·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2곳이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 3).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며 2019년 예산 규모는 86억 원(중앙 12억 원, 지역 58억 원, 쉼터 16억 원)이었다(보건복지부, 2019d, p. 28).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상담원이며 2018년 기준 상담원 수는 248명(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 33)이었다. 상담원의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26>과 같다.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보건복지부, 2019a, p. 223)과 전문가 인터뷰에 의하면 사업비 중 인건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사회복지사 직급체계를 따라 호봉을 적용하지만, 실제 임금은 가이드라인의 평균 80% 수준으로 맞춰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등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기관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따라 슈퍼비전에도 기관별 차이가 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원 여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노인 영역의 경우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의 문제보다는 종사자의 처우나 기관별 임금 및 교육훈련의 격차 등의 문제가 있다.

〈표 3-26〉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 • 기관장 1명(노인복지시설의 장 겸직 가능), 상근직 상담원 6명 이상 |
| 자격 기준 | • 상담원 - 사회복지사,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행정업무 5년 이상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혹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노인학대 예방 교육 수료자 |
| 근로조건 | • 정규직, 계약직 고용 • 임금: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직급에 따른 호봉 적용 • 근로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 교육훈련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보호전문상담원 기본과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급/직무별 교육 • 지역 기관별 신입직원 대상 교육, 오리엔테이션 등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2019a). 2019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2018년 기준 상담원 1인당 신고 접수 건수는 62.4회였으며, 상담원 1인당 상담 횟수는 월 43.0회, 하루 1.4회 이상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 33). 개별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임상심리전문가 및 법률서비스 지원 가능 인력과 같이 기관의 심리 지원 및 법률 지원 역량을 높여 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

〈표 3-27〉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

| 구분 | (단위: 명, 건, 회) | |
|-----------------|---------------|-------------|
| | 전체 상담원 업무량 |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 상담원 수 | 248 | - |
| 신고 접수 건수 | 15,482 | 62.4 |
| 상담 횟수 | 127,965 | 516.0 |
| 현장조사 횟수 | 4,965 | 20.0 |
| 방문상담 횟수 | 25,767 | 103.9 |
| 학대 피해 노인 제공 서비스 | 145,552 | 586.9 |
| 학대 행위자 제공 서비스 | 27,464 | 110.7 |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 33.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을 일시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2019년 예산 수준은 16억 원이었다(보건복지부, 2019d, p. 28).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2018년 기준 전국에 18곳이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19a, p. 16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요양보호사이며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28>와 같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과 교육훈련에서 지역별, 시설별 차이가 있다.

<표 3-28>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 • 쉼터의 장 1명(노인보호전문기관 겸직 가능),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2명)(1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겸직 가능), 요양보호사 3명 |
| 자격 기준 | •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요양보호사 |
| 근로조건 | • 근로시간: 24시간 운영으로 인하여 직원 중 1명이 야간에 근무하도록 함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2019a). 2019 노인보호복지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다. 장애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기관은 대부분 장애인 인권과 권익 관련 단체들이다(유경민 외, 2017, p. 4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재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등의 사업에 포함되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된다. 2019년 예산 규모가 52억 원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 2019d, p. 13). 2019년 1월 기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곳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곳이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19c, p. 21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상담원이며, 2018년 기준 지역별 상담원 수는 총 40인에 불과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p. 80). 상담원의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29>와 같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국비 50%)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19c, p. 221) 지자체에 따라 인건비에는 차이가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본 인원 기준은 기관장 1인, 상담원 2인, 행정인력 1인으로 구성된다. 지역별로 자체적인 추가 예산 지원에 의하여 기관이 상담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관별 인력 수에는 차이가 있다. 지역의 추가 예산 지원으로 상담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대부분 인력에 대한 과업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에 차별금지조례 관련 업무까지 포함되기도 한다. 장애인학대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설득하고 관계를 맺는 등의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른 영역 전달체계 대비 상담 및 심리 지원,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상담 및 수사 지원을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법률 관련 업무의 비중이 크다. 상담원 인력 기준에는 변호사도 포함되며 실제로 서울과 경기 지역 기관에서는 변호사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역량강화과정(이)이 신설되어 2019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표 3-2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 • 기관장 1인, 상담원 2인, 행정인력 1인 |
| 자격 기준 | • 상담원 (1)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변호사 (3)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근로기준 | • 정규직, 계약직 고용 • 임금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을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 시간외수당은 지역별 차이가 있음 • 근로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 교육훈련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무자 대상 기본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역량강화과정(보수교육) • 전국 네 개 권역별 워크숍 제공 • 현장의 사례회의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보건복지부. (2019c).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2018년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평균 45.9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평균 397.1회의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p. 80). 또한 전국의 장애인 학대 사례를 17개 기관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학대 사례를 체계적으로 다루기에는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재

인력 수준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연계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거나 기관과 종사자의 경험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별 임금 수준이나 직급체계 등도 상이하며 기관 내 서비스 수행 인력 중 상근 인원의 부족과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 거리의 부담 등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도 차이가 있다. 장애인 영역의 경우 지역별 종사자의 처우, 숙련도 및 교육훈련 환경의 차이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피해 장애인 쉼터

2015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유경민 외, 2017, p. 27).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국비 50%)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며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유경민 외, 2017, p. 127). 2018년 전국에 8곳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 시·도 단위의 쉼터가 확충될 계획이다. 쉼터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피해 장애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홈 및 체험홈 등의 장소에서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pp. 108, 151).

피해 장애인 쉼터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생활지도원 등이며 자격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30>과 같다.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사업에서 다수의 쉼터가 단기보호시설 내에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재 쉼터의 인력과 운영비 수준으로는 보호 이외의 다른 지원을 수행하기 어렵다.

〈표 3-30〉 피해 장애인 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 •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
| 자격 기준 |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경력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 근로기준 | • 임금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준하여 임금 지급 - 시간외근무 등의 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제공 • 근로시간: 365일 24시간 운영되기에 교대제로 근무함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유경민, 이윤희, 송기호. (2017).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p. 126; 보건복지부. (2019c).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2. 성폭력, 부부폭력

두 영역의 주요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인력의 자격, 근로조건, 교육훈련의 기준과 현황을 파악한다. 성폭력 관련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 포함되며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313억 원으로 편성되었다(법무부, 2019a, p. 250). 한편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2019년 관련 예산 계획은 394억 7000만 원 수준이었다. 이 중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약 317억 원이었고 예방 관련 예산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으로 약 15억 원이었다(여성가족부, 2019i, p. 68).

가. 성폭력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에 39곳이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19c).

경찰과 의료인력을 제외하고 해바라기센터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상담원, 임상심리사이다. 2016년 기준 해바라기센터 인력 현황은 상담원 165명, 임상심리사 및 심리치료사 58명, 경찰관 125명, 간호사 78명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pp. 10-11).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의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31>와 같다. 상담원의 경우 직책수당(소장, 부소장, 팀장), 근속수당이 존재하나 직급 구분과 이에 따른 임금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9년 기준 권고 임금은 상담원 1호봉 연 2641만 원이었으며(여성가족부, 2019e, p. 159)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다. 사업지침상으로 수탁법인(병원) 전입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문가 인터뷰에서 지역이나 시설별로 상담인력의 전문성과 전문성 획득을 위한 여건과 노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해바라기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지원형: 부소장(1), 상담원(3~5), 간호사(1~4), 행정원(1), 임상심리사(1) • 아동형: 소장 또는 부소장(1),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2), 간호사(1), 상담원(2), 행정원(1) • 통합형(대도시): 상담원 6~7명, 간호사 3~5명,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4명, 행정원 1명 • 통합형(중소도시): 상담원 4~5명, 간호사 2~3명,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3명, 행정원 1명 <p>* 센터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종사자 수 조정 가능</p> |
| 자격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원 - 공통: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1년 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

| 구분 | 내용 |
|-------|---|
| | <p>학사학위 취득 후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2년 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 기관 상근 상담업무 2년 이상 경력자, 혹은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 기관 상근 상담업무 3년 이상 경력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심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아동)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아동)심리학 석사학위 취득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 혹은 (아동)심리학 학사학위 취득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심리치료사(아동형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병원 및 심리치료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혹은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병원 및 심리치료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동행 상담원(아동형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근로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¹²⁾ - 해바라기센터 호봉기준표를 준용하여 임금(4대보험료, 근무 형태에 따른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지급 - 센터 근무연수와 경력이 호봉에 반영됨 • 근로시간 - 해바라기센터 위기 지원형, 통합형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경찰, 상담원 등이 교대 근무 실시 - 해바라기센터(아동형)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 교육 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직원(보수)교육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사례 슈퍼비전 •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상담원 대상 주기적 전문가 슈퍼비전 • 교육비 지원: 피해자 지원 등 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해 종사자 교육비용을 연간 40만 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지원 - 기관 운영비 내에서 1인당 연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상담·심리치료, 집단 상담·치료, 힐링(정신건강·쉼)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e). 2019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12) 초임호봉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 ① 100% 인정: 해바라기센터 근무 경력(군복무 경력 포함), ② 80% 인정: 여성아동·청소년폭력 관련 시설 근무 경력, ③ 50% 인정: 그 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 경력, 공무원 경력

• 성폭력상담소

2019년 4월 기준 전국에 168곳의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중 25곳이 장애인 상담소이다(여성가족부, 2019f).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국비 50%)으로 운영비(총액의 10~20%)와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지자체와 시설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d, p. 73).

2018년 기준 상담소의 인력은 상근직 622명과 비상근 및 자원봉사자 829명으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19b, p. 1). 성폭력상담소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상담원이며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32>과 같다.

<표 3-32> 성폭력상담소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기준 | • 상담소의 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
| 자격 기준 | • 상담원 - 대학 이상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혹은 관련 업무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등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이수 |
| 근로조건 | • 임금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호봉(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 포함) 책정 - 1호봉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편성 • 근로시간: 주 5일 평일 8시간 근무 |
| 교육훈련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지역별 상담소·시설협의회 교육 |
| 기타 | •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 - 연간 1인당 20만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으로 지원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d).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 요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국비 서울은 50%, 나머지 지역은 70%)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수급자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며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d, p. 101). 2018년 기준 전국 31곳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b, p. 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인력은 2018년 상근직 161명과 비상근 및 자원봉사자가 4명으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19b, p. 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상담원이며,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33>와 같다.

<표 3-3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보호시설 10인 이하: 시설장 1명, 상담원 2명, 보조원 1명 • 일반보호시설 15인 이하: 시설장 1명, 상담원 2명, 보조원 1명 • 일반보호시설 20인 이상: 시설장 1명, 상담원 2명, 보조원 2명 |
| 자격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원 - 대학 이상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혹은 관련 업무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등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이수 |
| 근로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호봉을 책정하고(기본급, 4대보험, 퇴직적립금, 초과근무 수당) - 상담원은 생활복지사 수준을 적용 - 1호봉 종사자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 적용 • 근로시간: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교대제 근무 |
| 교육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지역별 상담소·시설협의회 교육 |

| 구분 | 내용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 - 연간 1인당 20만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으로 지원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d).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성폭력 영역 서비스 인력의 근로조건과 교육훈련

상담소와 보호시설 모두 지자체 및 기관별로 인건비 수준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역별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의 차이가 심각하고 운영비가 다른 지역 대비 절반인 경우도 있다(박선영, 2018, p. 69). 지역별 서비스 인력의 근로조건 편차는 서비스 질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력들은 대리적 외상이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겪거나 신경과민, 강박, 불면증, 탈진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정혜숙, 송지연, 2015, p. 161). 성폭력 영역의 보호서비스 기관들은 지침상으로는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액이 매우 적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부폭력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운영 주체는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직영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하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국비 50%)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지자체와 시설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초과 지급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d, p. 408). 2019년 9월 기준으로 중앙센터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전국 18곳이 운영 중이며 이 중 2곳

은 지자체에서 직영 운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g).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상담원이며,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34>와 같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상담원은 상근직 291명이며(여성가족부, 2019a), 센터당 15~16명이 배치되어 근무한다(윤정숙 외, 2017, p. 23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현장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종사자 안전 이슈를 더욱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표 3-34> 1366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여성 인구수에 따라 인력 차등 배치 (센터당 15~20명) |
| 자격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원: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취득 후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또는 1366에서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1년 이상 5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현장상담원: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을 갖춘 자(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채용 가능) 자원봉사자: 상담교육 이수 |
| 근로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호봉(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 책정 - 1호봉 종사자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 적용 근로시간: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교대제 근무 |
| 교육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역별 상담소·시설협의회 교육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인당 20만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으로 지원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d).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는 일반 상담소와 통합 상담소(성폭력 상담소 업무 병행)로 구분된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설치에 대한 신고 후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국비 50%)으로 운영비(총액의 10~20%)와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지자체와 시설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초과 지급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d, p. 350). 2018년 기준 전국에 203곳의 상담소가 있다(여성가족부, 2019a).

가정폭력 상담소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상담원이며,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35>와 같다. 2018년 기준 종사자 수는 687명, 비상근 및 자원봉사자 수는 1118명이다(여성가족부, 2019a). 지역별 임금이나 인력의 경력 수준에 차이가 있다. 상담원 교육훈련에서 인권, 여성주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중요하며 상담 기술 등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 수요도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훈련이 직급이나 임금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의 유인이 적다.

<표 3-35> 가정폭력 상담소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상담소 시설장 1명, 상담원 2명(국비 지원 시 1명 추가) |
| 자격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원 - 대학 이상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사회복지 시설/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자 |
| 근로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¹³⁾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호봉(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 책정 - 1호봉 종사자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 적용 • 근로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 구분 | 내용 |
|------|---|
| 교육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권역별 종사자 대상 교육 • 지역별 상담소·시설협의회 교육 • 상담소 자체 교육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 - 연간 1인당 20만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으로 지원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d).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주체는 국가 및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며 인가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 국고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인건비, 운영비(총액의 10~20%)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및 시설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초과 지급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d, p. 36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19년 초 기준 전국 66곳이 운영되며 이 중 가족보호시설이 20곳이다(여성가족부, 2019a).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상담원이며,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36>과 같다. 2018년 기준 종사자는 상담원 292명, 비상근 및 자원봉사자가 40명 수준이다(여성가족부, 2019a). 가정폭력상담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별 종사자 처우는 상이하다. 종사자들은 초기상담, 생활상담, 치료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연계, 외부서비스 이용 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중 일부는 외부인력을 활용하여 제공한다. 종사자의 전문성과 관

13)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 인정 기관: ①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

련하여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젠더감수성이며, 사회복지 등의 기술도 향상될 필요가 있다. 기관별 차이는 있지만 직무에 따라 외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훈련의 제공 내용과 다양성, 접근성 등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고 교육 지원 수준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있다. 기관별로 슈퍼비전을 통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보수교육 외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표 3-36〉 가정폭력 보호시설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0인 이하: 시설장 1명, 상담원 2명(국비 지원 시 1명 추가) • 11~30인 이하: 시설장 1명, 상담원 3명(국비 지원 시 1명 추가) • 31인 이상: 시설장 1명, 상담원 4명(국비 지원 시 1명 추가) |
| 자격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원 - 대학 이상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사회복지 시설/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자 |
| 근로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¹⁴⁾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호봉(기본급, 4대보험, 퇴직적립금, 초과근무 수당) 책정 - 상담원은 생활복지사 수준 적용 - 1호봉 종사자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 적용 • 근로시간: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 |
| 교육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지역별 상담소·시설협의회 교육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 - 연간 1인당 20만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으로 지원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d).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4)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 인정 기관: ①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보조율: 서울 50%, 기타 지역 70%)으로 지원받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비이다(여성가족부, 2019d, p. 474). 주요 서비스 수행 인력은 다른 가정폭력 영역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상담원이며 자격 기준도 동일하다. 종사자 자격 요건에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가 추가된다(여성가족부, 2019d, p. 466).

3. 청소년/학교, 군, 산업

세 영역은 별도의 보호서비스 체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수행되는 영역이다. 관련 전달체계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관여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현황을 기술한다.

가. 청소년/학교

- **지역 내 청소년 지원 체계**

학교폭력을 제외하고 청소년 대상 지원 체계에서 폭력·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전달체계와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상담 지원 등에서 청소년의 폭력 문제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37>과 같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은 주로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연 8시간 보수교육을 받지만 폭력 및 학대 관련 내용의 비중은 매우 낮다. 해

당 센터 인력의 사회복지적 개입은 부족한 상황이며 슈퍼비전과 사례관리 등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사업지침의 교육기준과 종사자의 근로조건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

〈표 3-37〉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자격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①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③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⑤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⑥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근로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책정¹⁵⁾ - 2019년 팀원 1호봉 185만 7000원 |
| 교육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h).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력 인정 기준: ① 100% 인정: 공공기관 상담원 경력, 청소년 관련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시설 근무 경력, 군 의무복무 경력, 청소년동반자 근무 경력,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원 경력,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전문상담원 경력, ② 80% 인정: 법인에서 설립한 전문상담기관 상임상담원 경력, 사회복지시설 상담 근무 경력, 교육 관련법에 의한 학교 상담 및 상담 교육 근무 경력, ③ 50% 인정: 국가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 사설상담기관 상담원 경력, 국가 및 지자체 운영 청소년 시설 상임임시직 및 촉탁 근무 경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원 근무 경력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생활보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시설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2019년 전국에 134곳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11. 25.). 청소년쉼터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은 <표 3-38>와 같다.

<표 3-38> 청소년쉼터 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구분 | 내용 |
|-------|--|
| 자격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상담원 ①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②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⑥ 그 밖에 ①부터 ⑤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근로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근로시간: 24시간 운영을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 조정 및 시행 |
| 교육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여성가족부. (2019h).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으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동반자가 있다. 청소년동반자는 2018년 기준 126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9h)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으로 전일제, 반일제로 근무한다. 청소년동반자의 역할은 위기청소년 대상 사례관리와 유사하다.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동반자는 상담, 지지 및 자원연계 활동을 통해 폭력·학대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표 3-39〉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인력

| 구분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동반자 |
|-------|---|---|
|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문제 개입 업무를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심리·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 상담 및 정서 지원, 기초생활 및 경제 지원, 사회적 보호 순으로 서비스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으로 전일제 혹은 반일제로 근무 |
| 자격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 상담관련분야 박사, 상담관련분야 석사+4년 이상 경력, 2급 자격증+3년 이상 경력 자격자가 시험 통과 2급: 상담관련분야 석사, 상담관련분야 학사+3년 이상 경력, 3급 자격증+2년 이상 경력 자격자가 시험 통과 3급: 상담관련분야 4년제 학사,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2년 이상 경력, 타 분야 학사+2년 이상 경력, 타 분야 전문학사+4년 이상 경력, 고졸+5년 이상 경력 자격자가 시험 통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등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

자료: 다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표를 재구성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3. 대통령령 제29845호.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서> 2019. 11. 28. 인출;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2019). 정의 및 활동. https://www.youthcounselor.or.kr:446/new/sub01_2.html에서 2019. 11. 28. 인출; 여성가족부. (2019h).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김현진 외. (2018).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82.

주: 청소년상담사는 자격검정 합격 후 연수과정(100시간 이상)을 마친 경우 자격 부여됨

• **학교폭력 대응체계**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전달체계는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긴급전화 117,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이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관련된 대표적 인력으로는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있으며, 관련 전달체계의 상담원 등의 인력은 모두 폭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임용을 거쳐 선발되어 학교 내 Wee클래스, Wee센터에서 근무한다.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p. 32).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상담 운영학교 선정 및 또래상담자·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8, p. 39).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은 학교폭력 예방, 신고 접수, 사건 처리, 사후관리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김현진 외, 2018, p. 111). 학교전담경찰관은 전업으로 담당학교를 지정하여 학교폭력 관련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학교폭력 예방활동, 신고 접수, 사건 처리, 가해자 및 피해자 사후관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등을 담당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2017년 1138명이다(경찰청, 2018, p. 148.)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찰의 개입과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서비스는 개인의 헌신과 경험에 따라 상이한 상황으로 이들의 양성 및 교육훈련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관련 자격으로는 학교폭력상담사와 학교폭력예방교육사가 있다. 학교폭력상담사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사는 유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다. 두 자격 모두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학생전담 보호관찰관,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의 신규 전문인력 운영안을 계획하고 있다(교육부, 2020. 1. 15.). 학교폭력 영역에서 경찰과 교정 전문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영역에는 사회복지 인력인 학교사회복지사가 존재하며,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폭력·학대 피해 지원 및 폭력·학대 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

• 청소년 교정복지

청소년 교정 분야의 인력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된다. 공공 영역의 청소년 교정 인력은 교정공무원, 보호관찰사이다. 교정공무원은 소년보호관찰 영역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특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자원봉사직으로 법사랑위원, 교정위원, 소년보호위원이 보호 및 상담 등을 제공한다. 상담 관련 자원봉사직은 보호관찰소의 자체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를 수행하며 소정의 수당을 받는다. 공공 영역에서 폭력·학대 가해자 대상 개입 등에 관한 교육제도는 제공되지 않는다. 교정공무원 등의 입장에서 폭력·학대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교육의 필요성은 낮다.

한편 민간 영역의 인력은 사회복지사 정도의 기술 수준을 요한다. 교정 분야의 가해자 및 행위자 대상 개입 중 대표적인 것이 회복적 사법정의 관점의 프로그램이며, 관련 민간 자격제도가 존재한다. 회복적정의협회의 회복적정의전문가 민간자격은 교육, 실습, 시험을 통하여 취득 가능하고 학교, 교정, 지역사회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 한국회복적사법정의센터에서 회복적 교정보호전문가 민간자격 제도와 관련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다. 한국보호관찰학회에서는 보호관찰 심리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과정을 제공한다.

청소년/학교 영역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청소년 교정복지 각각에서 폭력·학대에 개입할 수 있는 인력의 기준과 관리 부처가 모두 상이하다. 현재 청소년/학교 영역의 폭력·학대와 관련하여 학교와 경찰 인력의 역할이 크고 특히 청소년 영역에서는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인력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

나. 군

군 영역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군과 민간으로 구분된다. 군 내부의 영역은 군 사회복지보다는 군 복지의 개념이며 국방 헬프콜을 통한 고충상담 및 성폭력 신고가 가능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해 자살 및 군무이탈사고 예방, 민원 사전 해소 정도의 지원이 존재한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의 민-군 연계 서비스를 통해 민간 인력이 폭력·학대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군 내에서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 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군 교정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이다(서혜석, 2017, pp. 9, 11, 17). 이 중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군 장병의 폭력·학대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장병기본권 전문상담관 제도에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되었다(이봉주 외, 2018, p. 97). 2017년 기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총 370명이 배치되어 있다(서혜석, 2017, p. 9).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에 관련 업무와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병사들의 정신상담 청구권을 보장하고 부적응 병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병사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군사회복지학회를 중심으로 군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과 군 사회복지사 인력체계 구축을 주장하였으나(서혜석, 유흥위, 2008, pp. 236, 330;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6, pp. 17-18) 현재까지 군 영역의 사회복지 제도화와 전문인력 확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군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군 사회복지적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660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전문성은 교육 수준과 수련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이종호 외, 2014, pp. 175-176), 근로조건과 업무 자율성에도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는 군 영역의 폭력·학대 문제에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포괄하여 군 영역에서 사회복지적 실천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표 3-40〉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할 및 자격 기준

| 기관 | 지원 내용 |
|-------|---|
|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 부적응 장병 식별·관리 및 관련 사항 지휘관 보좌 • 보호·관심 장병에 대한 현장 위주 상담 및 관리 • 장병 기본권 제한 사항 식별 및 시정 지휘 조언 • 간부 및 상담병사 상담능력 향상 교육 • 장병 및 군인 가족에 대한 상담 • 다문화장병 관리 및 고충 처리 관련 지휘관 보좌 |
| 자격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경력자 - 심리상담 혹은 사회복지 국가자격 혹은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민간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상담 경험이 있는 자, 심리상담 혹은 사회복지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상담 경험이 있는 자, 심리상담 혹은 사회복지 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상담 경험이 있는 자 |

| 기관 | 지원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경력자 - 10년 이상 군 경력자 - 심리상담 혹은 사회복지 국가자격,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민간자격 소지자,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 학위 소지자 |
| 근로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형태 -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간 종료 후 1년 단위로 연장 - 근무 기간 5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 • 임금: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연차 적용이 어려움 |
| 교육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직무보수교육 실시 |

자료: 참고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서혜식, (2017). 군사회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망, 2017년 한국군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p. 10.

다. 산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직장 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전달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근로자지원제도의 경우 민간의 서비스로 존재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한국EAP협회에 위탁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협회가 공공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기업의 유사한 서비스들은 민간 기관의 상담인력을 통해서 제공된다. 한국EAP협회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기관의 상담인력에 의해 제공된다. 한국EAP협회는 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제공하며 민간 EAP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한국EAP협회 홈페이지, 2019).

〈표 3-41〉 한국EAP협회 EAP전문가 자격제도

| 자격명 | EAP전문가 1급 | EAP전문가 2급 | EAP planner |
|------|---|---|-----------------------|
| 응시자격 | (1) EAP 2급 자격 소유자로 기업상담 3년 이상 경력자 (2) 상담학 혹은 상담 관련 전공 박사학위 수료자로 기업상담 1년 이상 경력자 | (1) 협회 인정 기관의 자격증 소지자 (2) 상담학 혹은 상담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상담 실무 1년 이상 경력자 (3) 사회복지, 보건의학 계열 석사학위 취득자로 상담 실무 3년 이상 경력자 | 상담 비전공자로서 EAP에 대한 관심자 |
| 교육시간 | 집합교육 16시간 + 슈퍼비전 15사례 + 교육 20시간 | 집합교육 40시간 | 집합교육 24시간 |

자료: 참고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한국EAP협회 홈페이지. (2019). EAP전문가 자격 정보. www.keapa.co.kr/sub/sub02_01.php에서 2019. 11. 20. 인출.

4. 기타 - 범죄 피해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운영 중이다(법무부 홈페이지, 2019).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의 대학교수이며 직원은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행정 및 보안 요원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제도로 전국 스마일센터(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를 전액 국고 보조로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1월 총괄지원단 1곳과 지역별 스마일센터 13곳이 운영되고 있다(스마일센터 홈페이지, 2019). 스마일센터는 24시간 전화 접수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임시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어 임시보호까지 지원한다.

〈표 3-42〉 스마일센터 인력 기준

| 종사자 | 자격요건 |
|------|--|
| 센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사람 |
| 부센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범죄 피해자 심리치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또는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전문 상담사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상담원 또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행정담당(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공·사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우대) |

자료: 법무부. (2019b). 스마일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선정 계획서, p. 12.
<http://www.moj.go.kr/moj/223/subview>에서 2019. 11. 20. 인출.

법무부 산하의 피해자 지원 인력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가 존재한다. 2016년 3월부터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에 대응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윤정숙 외, 2017, p. 38), 배치 규모는 2020년 2월 총 561명이다(경찰청, 2020. 2. 24.).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센터 등 전문기관에 피해자를 연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상담, 모니터링 및 콜백서비스, 가정폭력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윤정숙 외, 2017, p. 38). 표면적으로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이나 실제로는 보호서비스 관련 자격이나 교육훈련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국내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현황을 고찰하기 위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부부폭력, 청소년/학교, 군, 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영역이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보호서비스라는 일반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영역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가 수행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영역과 성폭력, 부부폭력 영역은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있다. 하지만 위 개별 영역의 보호서비스 제도 간 폭력과 학대에 대응하는 공통의 서비스라는 인식이 나 제도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호서비스의 직무 및 기술에 대한 공통된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학교 영역은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폭력 외에 보호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한 영역이다. 군, 산업 영역은 모두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가 미비한 영역이다. 사법제도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는 제한이 있으며, 개별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폭력 피해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역별 보호서비스는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받으며, 특히 영역별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영역별 법령과 서비스 제공체계가 중첩되는 대상이 존재한다. 성폭력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성폭력과 아동학대,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등과 같이 한 사례가 서로 다른 전달체계에 중첩되는 경우 영역별 보호의 기준과 지원의 범위가 상이하며 건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영역별로 피해자 지원과 폭력·학대 예방에 대한 개입이 규정되기 때문에 폭력·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적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표 3-43〉과 같이 영역별 개입의 대상은 취약성, 위계, 의존성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영역별 서비스에서 대상의 자기결정권이 발휘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서비스 개입의 필요성과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균형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와 성폭력의 경우 서비스 개입의 필요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부폭력과 노인학대의 경우 서비스 개입에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며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표 3-43〉 영역별 개입 대상의 특징

| 구분 | 대상의 취약성 | 대상의 자기결정권 |
|--------|---|--|
| 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아동과 가족,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 시 피해자 보호의 의무가 더 강하게 작용 |
| 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한 취약성 친족 학대 행위자의 경우 상호의존성이 높을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노인과 가족,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 시 자기결정권 보장 자기방임에서 자기결정권과 피해자 보호 간의 이슈 있음 |
|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라는 취약성으로 권익을 침해받을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장애인과 가족,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 시 피해자의 권익과 의사, 자기결정권 강조 |
| 성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힘의 취약성 및 위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며 성인으로서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조 |
| 부부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힘의 취약성 가해자와 상호의존성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동 자녀를 대상으로 개입할 때 자기결정권과 자발성이 중요하게 작용 |
| 청소년/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이나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혼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와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 시 피해자 보호의 의무가 더 강하게 작용 가해자(행위자)나 가족 대상 개입의 경우 높은 자발성을 필요로 함 |
| 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계 체계의 하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이나 자기결정권을 발휘하기 어려운 위계 구조하에 있음 |
| 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계 체계의 하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

자료: 제3장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하였음.

아동, 노인, 장애인 영역과 성폭력, 부부폭력 영역은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하여 보호서비스가 기능하는 영역이나, 폭력·학대 가해자(행위자) 대상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조차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개입을 지원하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해자(행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개입 조치의 강제성이 부족하고 개입 방식의 선택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사법적 처벌 외에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보호서비스 기관과 인력이 피해자 지원과 폭력·학대 예방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 현행 체계의 한계가 있다.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특화된 영역이지만, 현행 제도의 근로 조건과 교육훈련 기준에서 양질의 인력에 의한 전문성을 요구하기 어렵다.** 영역별 보호서비스 체계는 관련 분야 경력이나 교육 이수를 종사자 자격 조건으로 제시하며 현장에서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을 통해 기관의 역량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노력하고 있다. 노인 및 장애인 영역은 증가하는 학대 사례 수 대비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업무량과 요구되는 전문성에 비해 종사자의 처우 조건은 낮은 수준이다. 즉 **전문성 있는 인력의 채용이나 기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유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영역별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유사한 업무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개별 영역에만 한정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아동 영역을 제외하고,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는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및 기관별 지원 규모와 역량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현행 전달체계 운영구조는 지역 및 기관 간 인건비, 교육훈련 지원 수준에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특히 지역별 격차는 인력 부족 문제와 서비스 질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행위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폭력·학대 보호서비스 인력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다른 사회복지 영역 대비 종사자 소진의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안전 관련 이슈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성폭력과 부부폭력 영역의 사업 지침에 종사자 소진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표 3-44〉 영역별 보호서비스 요약

| 구분 | 법적 근거 | 서비스 내용 | 인력 |
|----|--|---|---|
| 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만을 다루는 특례법이 존재하여 사법적 절차를 규정함 •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학대를 명시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신고의무 규정,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등을 담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의 신고 접수, 조사 및 판정, 응급 및 임시조치,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법률지원, 보호 및 생활 지원, 학습 및 교육 관련 지원, 복지 지원, 사후관리, 가해자(행위자) 대상 서비스, 신고의무 및 예방 교육 등 • 주요 전달체계: 아동보호전문기관(2018년 62개소), 학대피해아동상담터(2018년 65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 서비스 인력은 상담원(894명)과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100시간) 교육 이수 필요. 시설별로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의 편차가 큼. 상담원 인력 대비 업무량 과다 문제 있음. • 학대피해아동상담터: 주요 서비스 인력은 보육사와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응급상황 발생 시 인력 부족 문제 있음. |
| 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대 관련 개별 법령 없음 •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를 명시하고 노인에 대한 조치, 노인보호 관련 기관, 노인학대의 예방, 교육, 신고의무 규정,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등을 담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접수, 사례 분류 및 응급조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및 판정,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심리 지원,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생활 지원, 정보 제공, 사후관리, 학대 행위자 대상 서비스, 신고의무 및 예방 교육 등 • 피해자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서비스의 구축력 약함 • 주요 전달체계: 노인보호전문기관(2018년 32개소),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터(2018년 18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인력은 상담원(248명) •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터: 주요 서비스 인력은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직급체계에 따른 호봉 적용이 원천이나 실체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임금을 맞춰 주지 못하는 실정임 • 기관별 역량(수퍼바이저)과 상황에 따라 신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슈퍼비전 수준에 차이가 있음 |

| 구분 | 법적 근거 | 서비스 내용 | 인력 |
|--------------------|--|--|---|
| <p>장애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관련 개별 법령 없음 •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학대를 명시하고 장애인학대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에 문제 대응 기관, 장애인학대의 예방 교육, 신고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접수, 조사 및 판정,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지원, 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기타 지원, 보호, 사후관리, 학대 행위자 대상 서비스, 신고의무 및 예방 교육 등 • 주요 전달체계는 장애인권이용호기관(2019년 1월 18개소), 장애인 쉼터(2019년 7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장애인권이용호기관의 주요 서비스 인력은 상담원(40명) • 자격 기준은 관련 분야 경력이나 변호사 자격 요구. 지역 내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인력의 한계가 있음 |
| <p>성폭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령은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성폭력 범죄의 정의,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절차, 범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대상 지원 제도, 사법절차 등에서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기관, 성범죄 예방 교육, 신고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접수, 위기개입, 의료 지원, 상담 지원, 수사 지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법률 지원, 주거 및 보호 지원, 사후관리, 학대 행위자 대상 서비스, 성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등 • 주요 전달체계: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2018년 39개소), 성폭력상담소(2019년 4월 168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2018년 31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체계의 주요 서비스 인력은 상담원(상근직 기준 해바라기센터 165명, 상담소 622명, 보호시설 161명) • 자격 기준은 관련 분야 경력이나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 요구. 지자체/기관별 근무 조건과 교육훈련 여건에서 격차가 있음. |
| <p>부부폭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은 가정폭력의 정의, 피해자 지원, 사법적 절차, 지원 기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 예방 교육,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접수, 상담, 서비스 제공, 의료 지원, 주거 지원, 피해자 보호, 사후관리,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방 교육 등 • 사법처리 및 지원에서 자기결정권 중요 • 주요 전달체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2019년 9월 18개소), 가정폭력 상담소(2018년 203개소), 쉼터 등의 피해자 보호시설(2019년 초 66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체계의 주요 서비스 인력은 상담원(상근직 기준 1366센터 291명, 상담소 687명, 보호시설 292명) • 자격 기준은 관련 분야 경력이나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 요구. 지자체별 예산 차이에 따른 근무조건과 교육훈련 여건에서 격차가 있음. |

| 구분 | 법적 근거 | 서비스 내용 | 인력 |
|--------|--|--|--|
| 청소년/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법, 성폭력 관련법, 학교폭력 관련법, 아동·청소년성보호 관련법, 범죄 피해자 관련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폭력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법과 교정영역 관련법의 적용을 받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학대 및 폭력 문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 전달체계에서 다루어짐. 청소년 대상 보호서비스 컨트론타워 문제. • 학교폭력에 한정하여 신고, 조사, 위기개입, 피해자 지원, 예방·재범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함. 학교 밖 청소년의 학대 및 폭력 문제에 대한 보호서비스 체계가 부재함. • 폭력 가해자에 대해 학교폭력대응체계와 교정영역 체계의 개입이 이루어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학교 영역을 포괄하는 보호서비스 인력체계가 존재하지 않음 •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학교진담경찰관 • 청소년 영역: 진담 인력 부재(청소년상담사, 청소년동반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음) • 청소년 교정 인력(교정공무원, 보호관찰)은 보호서비스 관점의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음 |
| 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문제 외에 군 내 폭력에 대한 개별 법령, 훈령 및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사회복지 체계와 보호서비스 부재함 • 군 내부의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 지원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 업무에 포함될 수 있음 • 지역사회 군-민간 연계 프로그램의 민간 인력이 제공하는 업무에 포함될 수 있음 |
| 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의 근로자지원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와 근로자지원 제도에 따른 서비스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제공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위원회(EAP)이 민간의 서비스로 제공됨 • 민간 EAP 전문가 자격제도 있음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소관의 범죄 피해자 관련법이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규정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법률구조 지원, 국선변호사 지원, 진술조력인 지원, 스마일센터 운영 등 • 가려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지원 • 주요 전달체계: 범죄피해지원센터, 스마일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일센터: 사회복지사, 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 전문인력, 상담원 등 • 학대에방정찰관 |

자료: 제3장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하였음.

제 4 장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성인보호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

제2절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제3절 소결



4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 분석 <<

제1절 미국 성인보호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

이 절에서는 미국 아동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보호서비스 관련법과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텍사스주, 뉴욕주,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의 개념과 법령,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전달체계, 인력과 전문성을 살펴볼 것이다.

1. 보호서비스 법·제도의 역사적 발전

미국은 학대와 방임 및 착취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아동보호서비스(CPS: Child Protective Services)와 성인보호서비스(APS: Adult Protective Services)를 포함한다. 아동보호서비스는 학대와 방임 및 유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인보호서비스는 스스로를 학대, 방임 및 착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노인 및 장애가 있는 성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DCF, 2019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DHHS, 2003;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Website], 2019a).

가. 아동보호서비스

1) 아동보호서비스의 개념, 관련법, 역사적 발전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받고, 그 사례에 대응하는 증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의 위험요인과 안전 요인을 사정(assessment)하고, 안전의 지속성(permanency)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서비스는 주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지만, 주(state) 혹은 카운티(county) 정부의 분과로서 기능한다.

아동보호서비스는 모든 공공 아동복지기관의 중심이 되는 서비스로서,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점 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서비스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정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기관의 대응 등을 규정하는 각 주의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일반적으로는 “구체화된 법령, 재정 메커니즘, 그리고 기관이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구성하는 것(Waldfoegel, 1998, p. 105)”을 의미한다. 각 주는 개별적 법령 및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는 학대나 방임의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 혐의로 조사 중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칭한다(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2018). 이 서비스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 및 그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학대와 방임을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동의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Texas DFPS, 2018d).

- ① 아동에 대한 추가적 위험을 방지하고, 가능한 경우 원가정에서의 아동보호를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대체 가정 혹은 양육자에게 배치한다.
- ② 원가정이 아닌 세팅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가족이 역기능적 상황을 해결하도록 원조,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도모함으로써 아동 보호의 지속성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부모·자녀 관계를 종료함으로써 아동을 타 가정 및 양육자에게 영구적으로 배치한다.
- ③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아동에게 부모·자녀 관계를 종료할 것을 권장하거나, 다른 가정에 대한 적법한 영구 배치를 권장함으로써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한 위험 및 안전 요소 사정,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신고 사례와 관련된 정보 수집, 사례에 대한 결정, 상담 및 교육 등을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 학대 피해로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응급 거주지 제공, 필요시 경제적 지원, 가정 법원과 형사 법원이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조, 적절한 재활서비스의 연결, 사례관리 및 사례계획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OCFS, 2018;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Chapter 18, § 432.1, 2019a). 서비스 종사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예방적, 지지적 서비스의 욕구를 이해하여야 하며, 학대와 방임이 발생하기 전에 가족을 원조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종사자는 타 부서 프로그램 및 타 지역 기관 및 타 주 관계부서, 사설 아동복지 기관 및 자원봉사 기관들과 협력적으로 일해야 한다 (Texas DFPS, 2018d).

아동보호서비스는 다양한 관련법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1912년 설립된 아동국(Children's Bureau)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였고, 1958년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은 아동 보호를 위한 주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1960년대에는 49개 주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1974년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Pub. L. 93-247)은 아동학대 혐의의 의무적 신고, 관련 연구 지원 및 필수적인 트레이닝 제공, 그리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U.S. DHHS, 2018, p 192).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주로 국한하여,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시간 동안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아동 분리의 역할로 인해 부모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후 1980년의 「입양 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Pub. L. 96-272)과 1993년의 「가족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법」(Family Preservation and Support Services Act, P.L. 103-66)은 아동보호서비스의 강조점을 변화시켰다. 「입양 지원 및 아동복지법」은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기 전, 원가정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을 다할 것을 명시하였고, 가정으로부터의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적시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명시하였다. 가정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양 등 가장 적절한 영구적 계획을 모색할 것을 필수화하였다. 「가족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법」은 가정 외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정기능을 강화시키는 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명시하였다(U.S. DHHS, 2018).

동시에 아동보호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의 부재, 협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의 부재 및 이로 인한 부모의 법적 대응 등은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사 절차에 대한 트레이닝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면서, 아동에 대한 학대를 범죄 행위(criminal offense)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후 신체 학대와 방임 및 성적 학대 등 학대의 종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Crosson-tower, 2014).

1996년 재승인(reauthorized)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 Pub. L. 104-235)은 아동학대의 정의를 아동에게 실재적인 해로움이 있는 경우 혹은 심각한 해로움이 임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였고, 이 용어는 지역의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에 다양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줌으로써 취약한 아동 및 가정에 대한 대응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U.S. DHH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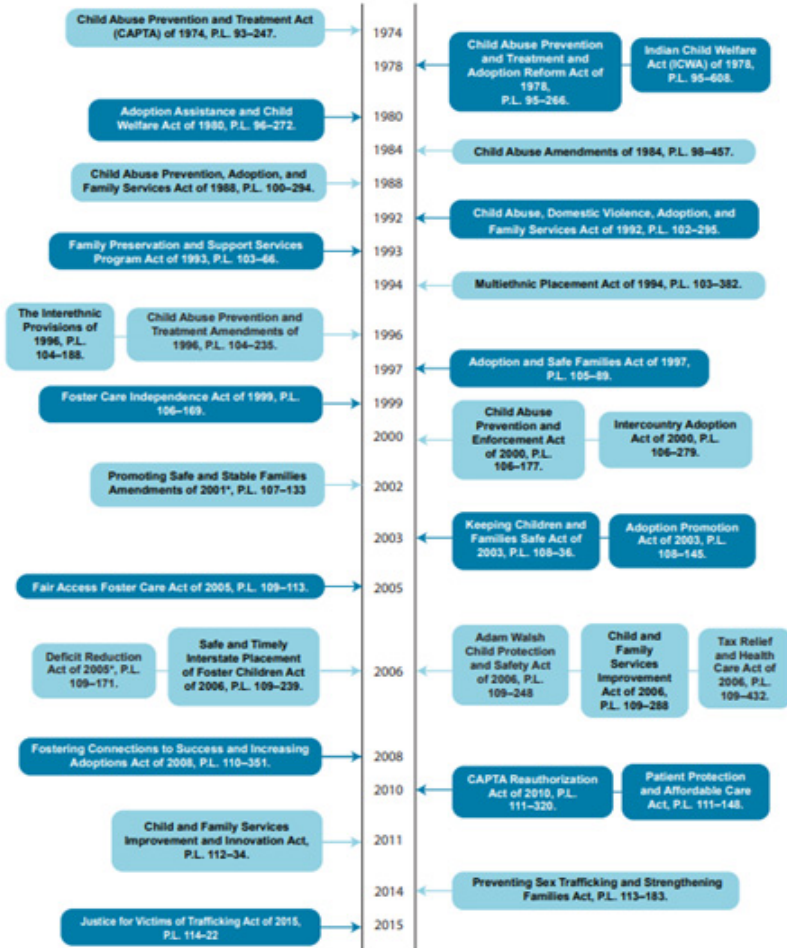
이후 1997년 「입양과 안전한 가족에 관한 법률」(Adoption and Safe Family Act, [ASFA], Pub.L. 105-89, 111 Stat 2115)은 부모의 학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가족 재결합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였던 이전의 정책 방향으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아동이 지난 22개월 중 15개월 이상을 위탁가정(foster care)에서 보호되었다면, 주(state)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할 것을 명시하였다(U.S. DHHS, 2006; Crosson-tower, 2014). 또한 「입양과 안전한 가족에 관한 법률」은 안전, 지속성, 아동의 웰빙을 아동보호의 세 가지 목표로 명시하였다.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이 있으며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아동국(Children's Bureau)이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리뷰(Child and Family Services Review)를 통해 각 주의 목표 달성 효과성을 모니터링한다. 사례관리자

는 가족과 함께 일함으로써 추가적인 학대 위험을 줄이고, 이미 발생한 학대의 영향을 완화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다.

2003년 「아동과 가족 안전 유지법」(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Pub. L. 108-36)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아동학대, 방임, 성학대의 정의를 제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부모 혹은 주 양육자의 역할에 실패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착취 및 피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또는 학대 행위 혹은 보호의 실패를 통해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에 임박한 위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U.S. DHHS, 2006).

2010년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재승인법」(CAPTA Reauthorization Act)은 해당 법의 기능과 활동을 조율 및 수행할 수 있는 아동학대와 방임 담당국(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의 설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임명,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정보센터 설치, 다학제적인 연구의 수행 지원, 주(state)와 지역 기관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실행, 주·지역 혹은 공공·사설 기관에 대한 기금 지원(예: 트레이닝 프로그램, 친족 위탁가정, 아동보호서비스와 가정폭력 지원 기관과의 협력 등), 주에서 제공하는 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금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 지원을 받는 모든 주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데이터 보고 의무 명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며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U.S. DHHS, 2018).

[그림 4-1]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연방법의 발전 과정



자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DHHS. (2018). Child Protective Services: A Guide for Caseworkers. Washington: Children's Bureau. p. 25.

• **텍사스주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 및 역사적 발전**

텍사스는 학대의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례에 대한 의무적 신고와 (Texas Family Code, 2017a),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Texas Family Code, 2017b). 이 정의는 아동 유기, 정서적 학대, 의료적 학대, 슈퍼비전의 부재,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부모로서의 의무 거부,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다.

1991년 텍사스주 보호 및 규제 서비스 부서(TDPRS: Texas Department of Protective and Regulatory Services)가 설립되어 휴먼 서비스 부서(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로부터 아동 및 성인 보호 서비스와 아동돌봄 라이선스(Child Care Licensing)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고, 정신건강 및 정신지체 부서(TDMHMR: Texas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Mental Retardation)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방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이전받았다. 이후 보호 및 규제 서비스 부서(TDPRS)는 가족 및 보호서비스 부서(DFP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로 명칭을 변경하였다(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System, 2013).

• **뉴욕주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 및 역사적 발전**

뉴욕주 「사회서비스 법」(New York Social Services Law [SSL])과 「가정법원 법」(Family Court Act [FCA])은 가정, 위탁가정, 아동 주간 보호프로그램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개입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범죄로 간주되는 일부 아동학대의 경우는 뉴욕주 형법에 따른다.

「사회서비스 법」(SSL)의 Title 6, Article 6(sections 411-428)은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과 지역사회서비스 부서(LDSS: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조사 및 가

족 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각 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 부서(LDSS) 내에 아동보호서비스 유닛을 설치하고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서 기능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법원 법」(FCA)의 Article 10(section 1012)은 아동학대, 방임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법 집행을 위한 관련 규정은 New York Codes의 Title 18에서 찾을 수 있다(OCFS, 2019a).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의 신고 사례를 조사하고, 아동을 추가적인 위험에서 보호하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뉴욕주의 법과 규정은 아동보호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정도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2)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의 전달체계

아동보호서비스는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아동보호서비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4-1〉 아동보호서비스의 역할

- 필수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로부터 학대 신고를 받는다.
- 신고된 사례를 스크리닝한다.
- 응급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다.
- 학대 아동에 대한 위험 정도를 결정한다.
- 학대의 가능성과 서비스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례에 대한 판단(disposition)을 내린다.
- 사례에 대한 사례계획을 세운다.
-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개입을 조율한다.
-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 아동과 가족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타 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필요한 경우 가정 외 보호(out-of-home placement) 및 슈퍼비전을 조율한다.

- 가족의 분리를 피하고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노력(reasonable efforts)을 다한다.
-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할 경우, 최소한으로 제약적인 영구 거주계획을 제공한다.
- 사례를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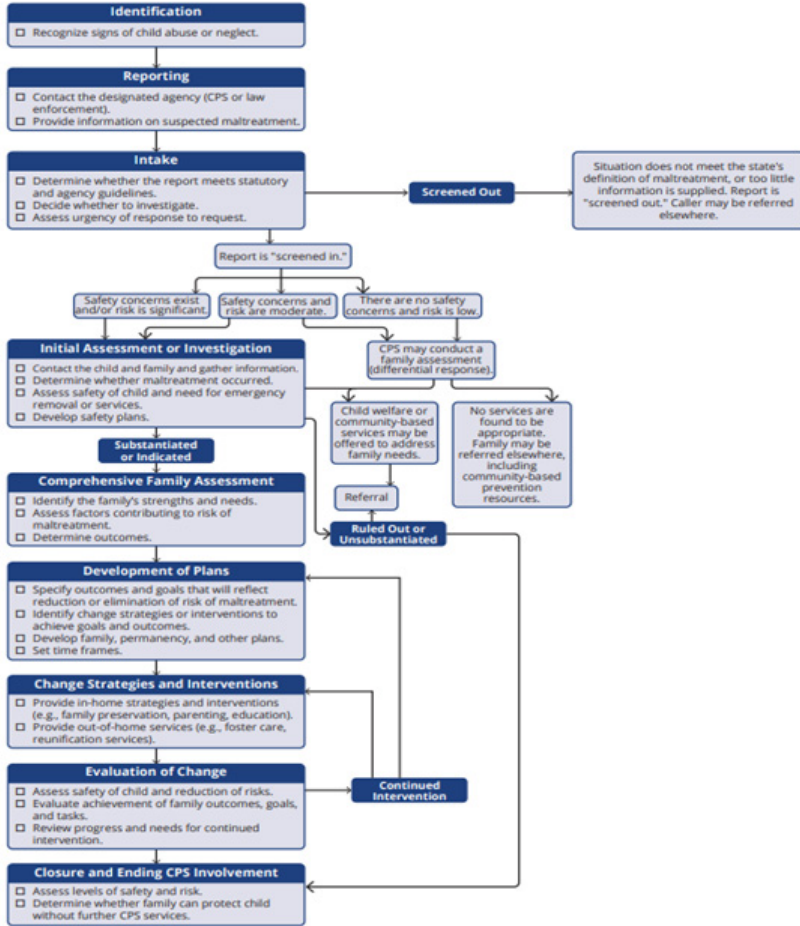
자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Crosson-Tower, C. (2014).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Pearson Education: Weber, M.W. (1997). Assessment of Child Abuse: A Primary Function of Child Protective Service, in The Battered Child, edited by M. E Helfer, R. S. Kempe, & R. D. Krugman (pp.120-14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아동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와 여러 전문가 및 공식적, 비공식적 파트너와 함께 일한다. 이는 법 집행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자, 정신건강 전문인력, 교육자, 사법 시스템, 위탁가정 등 가정 외 보호체계의 인력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를 발견, 조사, 예방한다.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는 다양한 주체의 공조를 조율하는 중심 기관으로 기능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U.S. DHHS, 2018).

아동보호서비스의 대략적인 서비스 프로세스는 [그림 4-2]와 같다.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의 제공 및 진행에는 부모의 협조가 요구된다. 아동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지만 부모가 조사 및 서비스 과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아동보호서비스는 법원 명령(court order)을 통해 조사 및 서비스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원가정 분리는 일반적으로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하며, 만일 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법원 명령 없이도 먼저 아동을 위험 상황으로부터 분리한 후 1일 이내에 긴급청문회(emergency hearing)를 개시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 아동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경우 또한 법원 명령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다(TexProtects, 2014).

[그림 4-2] 아동보호서비스 프로세스 개요



자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DHHS. (2018). Child Protective Services: A Guide for Caseworkers. Washington: Children's Bureau. p. 14.

• 텍사스주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텍사스 아동보호서비스에서 가족 및 보호서비스 부서(Texas DFPS)는 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의뢰를 받았을 때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아동보호조사(CPI: Child Protective Investigation)는 신고된 학대 사례를 검토하여 아동의 가정 내에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부모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위협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 후 가족 및 보호서비스 부서(Texas DFPS)는 사례에 대한 판단(disposition)을 내린다. 사례에 대한 판단은 ① 학대나 방임 혐의가 증거에 의해 입증됨(reason to believe), ② 혐의가 입증되지 않음(ruled out), ③ 이사, 조사에 대한 협력 거부 등으로 조사의 결론을 내릴 수 없음(unable to complete), ④ ①~③의 어느 결정도 적절치 않음(unable to determine), ⑤ 행정적인 종결(administrative closure)로 나누어진다(Texas DFPS [Website], 2019b).

텍사스 가족법률(Texas Family Code)의 정의에 부합하는 아동학대와 방임 신고는 두 가지의 우선순위 그룹으로 구분되며, 우선순위 1은 사망 혹은 심각한 해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학대나 방임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 할당된다. 조사는 전화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순위 1에 할당되지 않은 모든 사례는 우선순위 2로 할당된다. 우선순위 2의 사례에 대한 조사는 신고 후 72시간 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순위 2는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대나 방임의 의심 사례를 포함하며, 이 중 일부는 차등적 대응체계(AR: Alternative Response)로 배정된다(Texas DFPS [Website], 2019b).

차등적 대응체계(AR)는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서

비스로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가족의 참여를 강조한다. 텍사스에서는 2014년 일부 카운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학대에 대한 기존 조사 방식과는 다르게 학대나 방임 혐의에 대한 입증(substantiation) 대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계획에 초점을 둔다. 차등적 대응체계(AR)로 배정되지 않은 사례는 일반적인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Texas DFPS [Website], 2019b).

또한 아동보호서비스는 가족의 역량을 강화시켜 아동이 원부모와 함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가족 기반 안전서비스(FBSS: Family-Based Safety Services), 가족 그룹 의사결정(FGGM: Family Group Decision Making), 부모교육(Parenting Classes)을 포함한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은 위탁 가정, 친인척위탁 등 가정 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Texas DFPS [Website], 2019c).

가족 및 보호서비스 부서(Texas DFPS)는 주 전체를 총괄하는 텍사스 학대 핫라인(Texas Abuse Hotline)을 통해 아동학대나 방임의 의심사례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성인 및 성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임, 착취 의심사례도 함께 신고받고 있다(Texas DFPS [Website], 2019a).

• 뉴욕주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아동 및 가족 서비스 플랜(Child and Family Service Plan)에 따르면 개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 대상이 되며 아동보호서비스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Title XX에 명시된 아동 및 성인의 학대, 방임, 착취를 방지하고 보존, 재활 및 가정을 재결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OCFS, 2019a ; OCFS [Website], 2019a).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은 주 전체를 총괄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SCR: Statewide Central Register of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핫라인은 뉴욕주 내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전화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 사례를 해당 지역 아동보호서비스에 전달한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며 신고의무자와 신고의무자가 아닌 신고자 모두의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학교 종사자, 사회서비스 직원, 아동양육기관 종사자, 아동보호 및 거주간호 종사자 또는 봉사자, 법 집행기관 종사자를 포함한다. 신고의무자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경범죄(class a misdemeanor)에 해당하는 처분(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OCFS, 2019b).

텍사스의 차등적 대응체계(AR)와 유사하게 뉴욕주 또한 일반적인 조사에 비해 가족에게 유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사정 대응체계(FAR: Family Assessment Response)를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 「사회서비스법」(SSL)은 뉴욕주가 지역사회서비스 부서(LDSS)에 가족사정 대응체계(FAR)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사정 대응체계(FAR) 프로그램은 지역의 자원, 직원의 역량, 가족의 욕구 등을 반영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가족사정 대응체계(FAR)는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11년에 아동보호서비스의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OCFS, 2019a).

가족사정 대응체계(FAR)는 가족의 고유한 욕구와 특성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보호서비스의 전통적인 조사 절차를 대신하여 가족사정 대응체계(FA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족사정 대응체계(FAR)는 위탁가정이나 아동주간보호에서 발생한 학대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가족사정 대응체계(FAR)는 즉각적으로 아동에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공될 수 없으며,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OCFS)의 승인을 받은 지역사회서비스 부서(LDSS)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OCFS, 2018). 또한 사례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 아동매춘, 근친상간, 과실치사, 아동유기, 아동에 대한 심각한 학대 혐의 등을 포함할 경우 가족사정 대응체계(FAR)로 할당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신고는 반드시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NYCRR Chapter 18, § 432.13, 2019).

나. 성인보호서비스

1) 성인보호서비스의 개념, 관련법, 역사적 발전

성인보호서비스(APS)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제공되는 전국적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성인 대상 학대, 방임, 착취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사례를 조사하며, 개입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및 평가, 의료, 사회적, 경제적, 법적, 주거 관련 원조 및 위기개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위해를 가하거나 신체적, 정서적인 가해를 피하기 위한 혹은 필수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서비스나 물자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돌봄 제공자나 수탁자가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는 행위 혹은 스스로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자기방임)을 의미한다. 착취는 사기, 불법, 부적절한 행위 혹은 과정으로 노인의 금전이나 이득 등의 자원을 사용하여, 노인의 적법한 자원의 사용 및 접근을 박탈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Social Security Act, 2011).

각 주(state)는 개별적인 성인보호서비스 체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인보호서비스는 각 대상자가 가진 개별적 욕구를 사정하고 안전과 건강, 독립을 지지하기 위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이나 성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등이 의심될 때 일반 시민들은 지역 성인보호서비스 사무소에 이를 신고하며, 전문인력은 이러한 신고가 학대, 방임, 착취 등과 같은 성인보호서비스의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때 성인보호서비스 전문인력들은 의사나 간호사, 법 집행관들과 협력하여 일하며, 신고 사례가 성인보호서비스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대상자와 직접 면접을 통해 안전, 원조의 필요성 등을 사정하고, 웰빙과 독립을 지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결정한다(Texas DFPS, 2018b).

197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Title XX에 명시된 사회서비스 포괄 보조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은 각 주와 지역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주는 경제적 자립의 달성과 유지, 아동과 성인에 대한 학대와 방임 및 착취의 방지 및 해결, 부적절한 시설 보호의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커뮤니티 보호 제공,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시설입소 보장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예산을 할당받는다(Social Security Act, 2011). 이러한 서비스는 아동돌봄, 아동과 성인을 위한 보호, 위탁가정 내 아동과 성인 지원, 가정의 유지 및 관리, 성인 주간보호, 교통편, 가족계획, 교육, 고용, 정보 제공 및 의뢰, 상담, 식사 배달, 건강 지원,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특수욕구 지원,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이 법은 서비스 계획과 평가 등을 포함한 행정 비용, 교육기관 및 비영리기관 등에 대한 트레이닝, 학회 및 워크숍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Social Security Act, 2011).

성인보호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사회서비스 포괄 보조금(SSBG)에 의해 편성된다. 다만 사회서비스 포괄 보조금의 예산을 편성하여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각 주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역사적으로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만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은 주의 정책과 방향성에 따라 상이하게 존재해 왔다(Mixson, 2010).

각 주는 성인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대와 방임의 정의, 대상자 선별 기준, 서비스 전달에서의 절차와 규정 등을 정립하고 성인보호서비스 담당자들은 주법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정립·제공한다. 학대나 방임, 착취 의심 사례의 신고의무 조항 또한 주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의 경우 모든 시민은 노인과 성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례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Texas Human Resources Code, 2015), 뉴저지주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법 집행관, 소방관, 의료활동 종사자 등에게 의심 사례의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National Adult Protective Services Association; NAPSA, 2015).

요약하자면 성인보호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법은 주마다 상이하고 서비스의 정책과 절차는 각 주의 요건에 따른다. 따라서 이 성인보호서비스와 관련한 법과 제도 및 관련 부처는 주마다 다르게 발달되어 왔다.

• 텍사스주 성인보호서비스 관련법 및 역사적 발전

텍사스주 성인보호서비스는 1970년대 중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tle XX가 통과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법령은 각 주(state)가 아동과 노인, 장애가 있는 성인을 학대와 방임, 착취에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텍사스의 경우 1992년에 보호 및 규제 서비스 부서(TDPRS: Texas

Department Protective and Regulatory Services)가 창립되면서 성인보호서비스는 이 부서 산하로 포함되었다. 1993년 성인보호서비스는 연령 제한으로 더 이상 아동보호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법적 후견인 제도(guardianship)를 관리하게 되었으며, 1999년 성인보호서비스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법적 후견인 제도를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후 조직 개편과 함께 보호 및 규제 서비스 부서(TDPRS)는 가족 및 보호서비스 부서(DFPS)로 명칭을 바꾸었고, 성인보호서비스는 가족 및 보호서비스 부서(DFPS) 산하로 자리매김하였다. 가족 및 보호서비스 부서(DFPS)는 아동보호서비스(CPS)와 아동돌봄 라이선스(CCL), 예방 및 조기 개입(PEI: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도 함께 관할하고 있다.

2005년 기존에 성인보호서비스에 할당되었던 법적 후견인 프로그램은 텍사스 노령 및 장애 부서(Texas Department of Aging and Disability)로 이전되었으며, 성인보호서비스는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Texas DFPS [Website], 2019d).

• 플로리다주 성인보호서비스 관련법 및 역사적 발전

1974년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법」(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buse Act of 1974)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에 대한 전문가의 신고의무를 명시하였고, 정신장애(mental illness)를 장애의 예로 추가하였으며, 1980년에는 노화로 인한 취약함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1977년 「성인보호서비스 법」(the Adult Protective Services Act [APS Act])의 Section 410.10, F.S.는 취약한 노인에게 대한 학대와 방임, 착취를 형법(criminal act)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

공할 것을 명시화하였다. 1983년 아동과 장애인 학대 관련 규정을 명시했던 플로리다 법령(Florida Statute)은 「성인보호서비스 법」(APS Act)과 통합되어 현재 성인보호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성인보호서비스 법」(APS Act)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임, 착취를 발견하고 교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필수적으로 명시하였다. 현재 플로리다 법령(Florida Statute) 415는 성인보호서비스에 대한 법적 필수요건 및 책임을 명시하는데 이는 보호서비스 제공, 응급상황 시 피해자 분리(emergency removals), 신고의무, 사망 사례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 거짓된 혐의 신고 및 민사상 면책 특권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Kaptusta, 2019).

•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 관련법 및 역사적 발전

성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뉴욕주의 건강 관리서비스는 Kathy's Law와 「가족보호 및 가정폭력에 대한 법」(the Family Protection and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action of 1994)에 기반하고 있다. Kathy's Laws는 양로원이나 가정의료기관(home health care agencies)에서 60세 이상의 신체 부자유자 혹은 장애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간병인 및 돌봄종사자에 대해 페널티를 가하는 법이다. 「가족보호 및 가정폭력에 대한 법」은 병원 혹은 클리닉에서 성인 가정학대 피해자로 의심되거나 확정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는 법이다(OCFS [Website], 2019b).

뉴욕주 「사회서비스 법」(New York Social Services Law)의 Chapter 473은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민관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확립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Chapter 473-b는 위험이 의심되

는 사례를 선의로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상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보호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한 다른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New York Social Services Law § 473, 2012).

2) 성인보호서비스 제도의 전달체계

• 텍사스주 성인보호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성인보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Texas DFPS [Website], 2019e). ① 65세 이상의 성인, ② 18~65세의 정신이나 신체적 장애 또는 발달장애가 있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돌보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성인, ③ 라이선스가 없는 성인 대리양육 홈 등의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성인.

“상당한 제약”은 의학적 상태, 전문가의 진단 또는 진단과 관련하여 관찰되거나 보고되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장애 또한 제약으로 인정된다. 성인보호서비스 전문인력은 신체, 정신, 지능, 발달적 손상을 전화통화, 쇼핑, 요리, 청소, 약물의 규칙적 복용, 날씨에 맞는 착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교통서비스의 이용, 의사결정,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기술 등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사정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법적 후견인이 있는 경우나 하나 이상의 메디케이드 웨이브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Texas DFPS, 2018b).

성인보호서비스는 조사 과정을 통해 학대나 방임, 경제적 착취 상황, 범위, 그 원인 등을 밝혀낸다. 이 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Texas DFPS, 2018b).

〈표 4-2〉 텍사스주 성인보호서비스 조사 과정의 목적

- 의심 사례 피해자가 보호서비스 이용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
- 혐의나 조사 상황이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
-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조건들을 파악
-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
- 의심 사례의 가해자와의 계속적인 만남이 피해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지를 사정
- 범죄 행위로 추정되는지를 결정하고 법 집행 부서에 연락
- 보호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사정
-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에 대해 법적인 개입이 필요한지 결정
- 가정 내 폭력이 있었는지를 조사
- 보호서비스가 요구된다면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결정

자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Texas Human Resources Code. (2015). Retrieved from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HR/htm/HR.48.htm>. 2019.11.26.; Texas DFPS. (2018b), Retrieved from http://www.dfps.state.tx.us/handbooks/APS/Files/APS_pg_1300.asp#APS_1311. 2019.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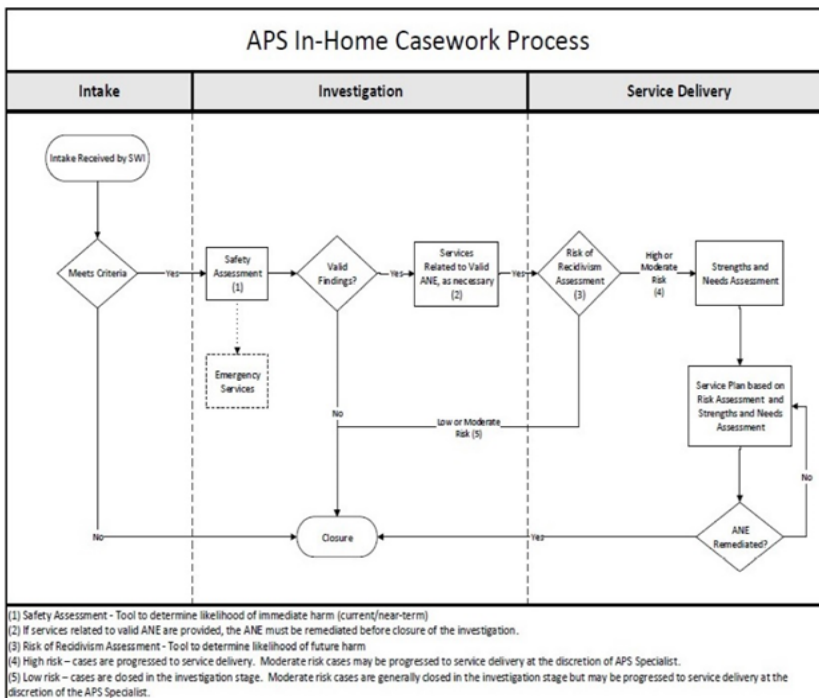
텍사스의 성인보호서비스 관련 정의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은 텍사스 「행정법」(Texas Administrative Code [TAC])의 기준에 근거한다 (e.g., TAC Title 40, Part 19, Chapter 705, Rule §705. , Title 40, Part 19, Chapter 705, Subchapter A, Definition). 각 혐의는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를 배당받으며(우선순위 1~4) 우선순위에 따라 성인보호 서비스가 피해자에게 초기 대면을 해야 하는 기한(24시간 내~14일 내)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Texas DFPS, 2018b).

신고된 사례가 성인보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인보호서비스 전문인력은 추가적인 학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가용자원을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연결하기도 한다. 텍사스의 성인보호서비스는 주거비, 수도·전기·가스 등의 재건, 사회서비스,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보호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

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Texas Human Resources Code, 2015).

대략적인 서비스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3] 성인보호서비스 재가 케이스워크 과정



자료: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2018c). Adult Protective Services, Protecting with purpose, passion and persistence, Strategic plan FY18-22,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About_DFPS/Reports_and_Presentations/APS/documents/2018/2018-03-27_APS_Strategic_Plan__FY_18-22.pdf. 2019. 11. 26.

• 플로리다주 성인보호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플로리다 성인보호서비스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DCF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소속이며 학대, 방임, 자기방임 및 착취 혐의의 현장조사,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 사정, 필요한 위기 서비스 제공, 욕구 평가 및 슈퍼비전 제공, 지속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성인이 최소한의 제약하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돕는다(Kaptusta, 2019).

성인보호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거나 정신장애, 정서장애, 감각장애, 장기적인 신체 손상 및 발달장애, 뇌 손상, 노화, 자기방임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업재활 미대상자이며 영구적인 신체, 정신적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9a).

성인보호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성인이 지역사회 내, 가능하다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찾도록 원조한다. 예를 들어 성인 장애인 가정보호(Home Care for Disabled Adults)와 성인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보호(Community Care for Disabled Adults)가 있다. 전자의 경우 18~59세 성인에게 재가 서비스(in-home care)를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에게 보조금과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후자는 영구적 장애가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18~59세의 성인들을 위한 원조서비스이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9a).

특정 전문가 집단(예: 의료 종사자)은 학대 및 방임 의심 사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핫라인 서비스(팩스, 전화, 온라인)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사례들은 중앙 접수센터를 통해 각 담당 지역의 부서로 전달

된다. 신고 시 피해자 이름, 주소, 나이, 인종 및 성별, 피해자 장애 여부, 위해와 상해로 의심되는 증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9).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후 24시간 내에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는 대면 접촉을 원칙으로 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9a).

•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스스로를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 혹은 다른 위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거나, 조력이 가능한 사람이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보호서비스는 대상자의 안전 여부 점검, 타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결, 비공식적 재정 관리, 대리 수취인(representative payee) 및 법적 후견인 지정 등 다양한 범위의 직접 서비스 및 의뢰(referral) 서비스를 제공한다(OCFS [Website], 2019a).

뉴욕주 「사회서비스 법」(New York Social Services Law)의 Section 473은 학대와 방임 및 경제적 착취를 규정함으로써 성인보호서비스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 학대(사고가 아닌 물리력의 사용으로 신체적 상해, 고통, 손상을 초래한 경우), 성적 학대(모든 종류의 합의되지 않은 성적 접촉), 정서적 학대(의도된 정신 혹은 정서적 위해), 능동적 방임(돌봄 제공자가 돌봄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다하지 않는 것), 수동적 방임(돌봄 제공자가 의도는 없으나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자기 방임(신체적 또는 정서적 손상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기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경제적 착취(성인의 재정, 소유 및 자원이 다른 개인에 의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New York Social Services Law § 473, 2012; OCFS [Website], 2019c).

성인보호서비스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의 성인서비스 부서(Bureau of Adult Service)가 주관하며 주의 규정에 따라 조사, 사례기록관리 및 서비스 전달을 담당한다.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4-3〉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 주관 부서의 역할

- 주 내 각 지역의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 감찰
- 성인보호서비스 유닛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 주 기준에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 사례 점검
- 성인보호서비스 인력 대상 훈련 개발 및 실행
-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향상 방안 모색
- 성인보호서비스 슈퍼비전 및 행정절차와 관련한 요구 사항 및 불만 사항에 대응
- 성인보호서비스 관련 정책 발간
- 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자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Website]. (2019c). Adult protective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psa>. 2019. 11. 22.

뉴욕주의 성인보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표 4-4〉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의 기능

- 성인의 욕구와 위험요인을 조사 및 사정
- 피해를 입은 성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 의료서비스, 가정 내 의료서비스, 식사 배달, 가사돌봄 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사례관리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적절성 모니터링
- 서비스 및 급여 취득을 위한 권익 옹호
- 최대 30일까지의 대안적인 주거 제공(living arrangement) 검색
- 공식적, 비공식적 자산관리 제공(예: 사회복지 수급액에 대한 자산관리)
- 위기개입(예: 비자발적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입소 등)
- 비자발적 장기적 개입(예: 법적 후견인 선정)

자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Website]. (2019d). Adult protective services.: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psa/services.asp>. 2019. 11. 22.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는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학대, 방임 및 경제적 착취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성인보호서비스의 원칙은 첫째,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 결정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보호를 추구한다(self-determination). 둘째,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한적 개입을(involuntary interventions), 최소한의 제약을 추구하는 방법으로(the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제공한다(OCFS [Website], 2019e).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 의뢰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4년 의뢰 건수는 4만 4367건으로, 이는 1997년 대비 77%나 증가한 양이다. 최근 성인보호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약 70%의 성인보호서비스 의뢰 건이 자기방임에 의한 것이라 보고되었다(OCFS [Website], 2019f). 또한 뉴욕주 노인학대 발생에 관한 연구(New York State Elder Abuse Prevalence Study)에 따르면 성인보호서비스 혹은 관련 기관으로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 한 건당 23.5건의 사례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신고된 사례 한 건당 43.9건의 사례가, 방임의 경우 신고된 사례 한 건당 57.2건의 사례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Lifespan of Greater Rochester Inc., Weill Cornell Medical Center of Cornell University, & 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 2011).

2. 아동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 제도의 인력

가.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의 인력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에서 사례관리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 학위가 요구된다. 그러나 아동복지행정가협회(NAPSWA: 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Child Welfare Administrators)와 미국 아동복지연맹(CWLA: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은 아동보호서비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혹은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복지교육은 종사자의 직업 유지 및 직업 안정성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양질의 아동복지실천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였다(U.S.DHHS, 2003).

아동보호서비스 사례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가져야 한다.

〈표 4-5〉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의 역량

- 아동보호서비스의 가치, 철학 및 전문성
- 강점 기반의 개입 기술
- 아동보호의 법적 측면
- 사정 및 조사
-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 계획과 개입
- 문화적 반응성
- 의사소통
- 건강 지향(Wellness)

자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DHHS (2018). Child Protective Services: A Guide for Caseworkers. Washington: Children's Bureau.

양질의 지속적인 슈퍼비전은 종사자 스스로가 인식한 임파워먼트, 종사자 자기효율성, 기술의 활용, 높은 직업만족도 및 낮은 소진, 일선 종사

자(frontline staff)의 직업 유지 등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Cearly, 2004; Curry, McCarragher, & Dellmann-Jenkins, 2005; Yankeelov, Barbee, Sullivan, & Antle, 2009; DePanfilis & Zlotnik, 2008; Collins-Camargo & Royse, 2010; U.S. DHHS, 2018). 아동보호서비스 종사자들은 직업의 책임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받으며, 이는 협의 슈퍼비전(consultative supervisory practices)과 코칭 슈퍼비전(coaching supervisory practices), 개인 및 그룹 슈퍼비전 등을 포함한다(U.S. DHHS, 2018).

• 텍사스 아동보호서비스 인력

아동보호서비스 조사관은 아동학대 및 방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며,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예후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아동보호서비스 조사는 매일 24시간 이루어지며 인터뷰 및 정보 수집을 통해 실제로 학대와 방임이 있었는지, 개입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한다. 조사관은 위험요인과 안전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추가적인 학대와 방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안한다. 아동보호서비스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Texas DFPS [Website], 2019f).

- ① 아동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안전한가를 파악
- ② 학대와 방임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를 조사
- ③ 신고 이후 학대와 방임의 위험이 있는지를 결정
- ④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계획 설정

아동보호서비스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표 4-6〉 아동보호서비스 조사관의 임무

-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사례 조사,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 학대 혹은 방임의 징후를 조사
- 법의학적 조사 및 사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위험을 판단
- 사례 신고자, 가족, 의사, 간호사 등의 관련자를 인터뷰하고, 개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
- 객관성과 공감(empathy)의 균형을 맞추며 위기 상황에 개입
- 문서화

자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Website]. (2019f), What is a CPS investigator specialist?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Jobs/CPS/cps_investigator.asp. 2019. 11. 4.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 이후에는, 가족 중심 안전서비스(FBSS) 사례관리자가 아동 보호를 위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① 학대와 방임을 야기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줄이기 위한 계획, ② 가족의 강점을 파악하고 가족을 유지하는 동시에 아동의 안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조, ③ 법 집행기관, 치료사, 법원, 다양한 기관 간의 지역사회 공조 모색 등을 포함한다.

가족 중심 안전서비스(FBSS) 사례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표 4-7〉 가족 중심 안전서비스(FBSS) 사례관리자의 역할

- 아동학대 및 방임의 위험을 사정, 안전에 대한 계획 수립
-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입 없이 가족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원조하기 위해서 가정방문 진행
-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
- 개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아동 및 부모와의 지속적인 연락
- 가족이 아동학대와 방임을 야기했던 이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변화를 위한 부모의 역량 강화를 모색
- 필요한 경우 아동을 위험 상황에서 분리
- 사례관리 내용을 문서화
- 객관성과 공감의 균형을 맞추며 위기 상황에 개입
-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며 이해

자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Website]. (2019h), What is a CPS Family-based Safety Services (FBSS) specialist?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Jobs/CPS/fbss.asp>. 2019. 11. 4.

텍사스에서 아동보호서비스 조사관 및 가족 중심 안전서비스(FBSS) 사례관리자(신입 아동보호서비스 전문가 기준)가 되기 위해서는 ① 학사 학위, ② 2년제 학위와 관련 직종 2년 이상 종사 경력, ③ 60시간의 대학 크레딧과 관련 직종 2년 이상 종사 경력, 혹은 ④ 90시간의 대학 크레딧과 관련 직종 1년 이상 종사 경력이 요구된다. 관련 직종 종사 경력은 사회서비스 기관 혹은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유급 혹은 무급(자원봉사) 경력 등을 포함한다. 그 외에 텍사스 운전면허증,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보호서비스 전력 조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입(entry-level) 아동보호서비스 전문가의 기본급은 월 3817달러에서 4095달러 사이이며 경험이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본급 이외에 아동보호서비스 조사관들은 월 416달러의 추가 수당을 받으며 업무를 시작한 지 120일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가족 및 보호서비스 부서(Texas DFPS) 내에서 훈련과 슈퍼비전이 제공되며,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도 제공된다(Texas DFPS [Website], 2019h).

텍사스는 정부 규정을 통해(Texas Government Code, Chapter 656) 주의 기관이 고용인의 임무와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편당을 사용할 것을 승인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할 경우, 혹은 교육 참여가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고용인의 지식과 기술을 확장시킬 경우 교육 휴가(education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 및 담당자는 고용인이 일상 업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고용인은 교육 참여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가족 및 보호 서비스 부서(DFPS) 종사자, 아동보호서비스 종사자, 이

전 아동보호서비스 종사자 집단 모두가 교육 휴가가 종사자들의 직업 유지에 미치는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Leung et al., 2017).

• 뉴욕주 아동보호서비스 인력

아동보호서비스는 사회복지나 관련 분야의 교육 배경 및 경력을 가진 종사자를 선호하며, 아동 및 가족과 일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호한다. 주의 규정은 2006년 12월 이후에 고용된 모든 아동보호서비스 슈퍼바이저에게 학사 학위와 2년 이상의 아동복지서비스 경력을 요구하며, 슈퍼비전을 제공하지 않는 아동보호서비스 종사자에게는 학사 학위나 관련 분야 휴먼서비스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2019b).

가족 사정 대응체계(FAR)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는 반드시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에서 규정된 가족 사정 대응체계(FAR) 훈련을 받아야 한다(OCFS, 2019a).

나. 성인보호서비스 제도의 인력

성인보호서비스에서 전문요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 학위가 요구된다. 직급에 따라 상당 기간의 성인보호서비스 근무 경력 혹은 성인보호서비스 자격증이 요구될 수 있다. 각 주 및 지역 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요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 및 기간은 내부 방침에 의하여 정해진다.

전미 성인보호서비스협회(NAPSA)는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을 높이고, 성인 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 고취, 권익 옹

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인 비영리기관이며, 성인보호서비스 협회 자격(NAPSA certific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텍사스 성인보호서비스 인력**

텍사스 성인보호서비스에서 일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전공 무관 4년제 대학 졸업이다(Texas DFPS [Website], 2019g).

성인보호서비스는 텍사스 노인학대연구소(TEAM: Texas Elder Abuse and Mistreatment Institute)를 결성 및 운영하여 미국 내 의과대학 및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들에게 임상 케어 및 법의학적인 사정을 제공하고 연구협력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임상 케어는 성인보호서비스 조사, 노인의학 사정, 의학적 평가, 성인보호서비스와 의료팀의 공조, 법원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며 카운티의 의료 조사관 및 지역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월 1회 회의)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 사망 케이스를 조사한다.

텍사스 노인학대연구소(TEAM)는 노인학대, 방임, 착취 및 자기방임(self-neglect)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종사자 및 일반인에게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 사망의 원인과 위험요인, 학대당한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비용, 의학적 개입 등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for Victims of Crimes, Victims of Crime Act),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4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다(Texas DFPS [Website], 2019d).

• 플로리다 성인보호서비스 인력

플로리다주 성인보호서비스에서 성인보호서비스국(Office of Adult Protective Services)은 본부의 역할을 담당하며 산하에는 지역(region) 성인보호서비스 유닛과 세부지역(circuit) 성인보호서비스 유닛이 있다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DCF, 2019b).

본부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DCF)와 플로리다 법령(Florida Legislature)에 따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향상시킬 책임을 갖는다. 지역과 세부지역의 종사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하고 프로그램 수행의 적정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각 산하 지역에 대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또한 산하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니터링하여 서비스가 프로그램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한다. 본부는 인력 개발과 훈련을 통해 정책과 절차를 전달 및 배포함으로써 주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DCF, 2019b).

지역의 성인보호서비스 종사자들은 프로그램의 정책을 실행하며, 프로그램 관리자는 종사자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주의 정책, 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각 지역은 휴먼서비스 프로그램 전문가(human service program specialists)를 두어 계약을 관리하고, 현장 유닛을 모니터링하며, 기술적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대상자들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무를 가진다.

세부지역 성인보호서비스 종사자는 프로그램 관리자(OPA: Operational Program Administrator), 성인보호조사 슈퍼바이저(APIS: Adult Protective Investigator Supervisor), 휴먼서비스 상담 슈퍼바이저(HSCS: Human Services Counselor Supervisor), 보호서비스 조사관

(PI: Protective Investigator), 보호서비스 슈퍼비전 상담사(Protective Supervision Counselor; Human Services Counselor)가 있다. 프로그램 관리자(OPA)는 모든 유닛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모든 프로그램의 서비스 전달을 관리한다. 성인보호서비스 슈퍼바이저(APIS)와 휴먼서비스 상담 슈퍼바이저(HSCS)는 모든 종사자들이 플로리다 법령 및 정책에 의거한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유닛 슈퍼바이저는 보호서비스 조사관과 상담사에게 정기적인 콘퍼런스, 사례 모니터링, 평가, 회의, 훈련 등을 제공한다(DCF, 2019b).

보호서비스 조사관(PI)의 주요 역할은 학대, 방임, 착취 및 자기방임의 신고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웰빙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결하는 것이다. 보호서비스 조사관(PI)은 프로그램과 기관의 정책, 지역사회 자원 등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의뢰(referrals)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호서비스 슈퍼비전 상담사(Protective Supervision Counselor)는 주로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학대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며, 모든 서비스 내용과 사례관리 내용을 기록할 의무를 갖는다(DCF, 2019b).

또한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DCF)는 각 카운티의 보안관 사무실(sheriff's office) 혹은 지역 경찰서(police department)와 공조하여 범죄 수사를 진행하거나 범죄경력 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긴급하게 진입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의료행위를 위한 긴급 호송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희생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호서비스 조사관(PI)이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DCF, 2019b).

• 뉴욕 성인보호서비스 인력

사례관리자, 슈퍼바이저, 법률가 등 지역 성인보호서비스 종사자는 타 전문가 및 지역 사회 내 자원봉사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할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성인보호서비스 종사자는 사례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교육, 성인보호서비스의 법적인 측면,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이슈 등이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방식 등을 교육받는다. 또한 성인학대 및 방임, 의사 결정 등의 주제에 대한 주기적인 워크숍이 제공된다. 사례관리자와 슈퍼바이저에게는 성인보호서비스의 법적 측면과 슈퍼비전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도 제공된다(OCFS, 2016).

3. 미국 보호서비스의 전문성 논의

Mixson(2010)은 각 주 및 텍사스 내 각 지역에서 제공되는 성인보호서비스의 비일관성이, 연방정부 지침의 명확성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성인보호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연방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취약한 성인 대상자들을 포괄하기보다는 노인학대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그 이유로 들었다.

성인보호서비스는 사회서비스 포괄 보조금(SSBG)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포괄 보조금은 각 주에서 제공이 장려되는 서비스의 종류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성인보호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기금의 분배 및 운용은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대상 선택(예: 장애의 범주 등) 및 서비스의 종류 또한 상이하다.

또한 예산의 부족, 인력 및 종사자 훈련의 부족, 과도한 업무량, 지역사

회의 자원 부재 등이 성인보호서비스의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이후 텍사스의 성인보호서비스 예산은 대폭 확대 되었지만, 동일 예산으로 지원되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성인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성인보호서비스의 과다한 업무 건수와¹⁶⁾ 업무 수행의 지체를 초래했다. 성인보호서비스 종사자의 이직률은 21.9%, 아동보호서비스의 경우 17.4%로, 다른 서비스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Texas DFPS, 2018a). 이는 사례관리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서비스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성인보호 서비스 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아동보호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급여가 낮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The Texas Tribune, 2019). 성인보호서비스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소진과 2차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응 방안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Ghesquiere, Plichta, McAfee, & Rogers, 2018). 이와 관련하여 Wold(2010)는 종사자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기 및 개인의 탄력성과 대처기제를 고용 시에 검토하는 것, 고용 후 지속적으로 팀 회의 및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 성인보호서비스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 업무에서 오는 감정적인 피로 및 고갈과 이직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성인보호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이다(Ernst, et al, 2014; Halarewicz, Gelman, Ghesquiere, & Rogers, 2019). 서비스의 질적, 양적 지표에 대한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할당되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주의 서비스 내역을 필수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성인보호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및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의

16) 2017년 일일 평균 업무 건수가 33.8건(Evans, 2018, Oct 9).

부재를 야기하였다(Mixson, 2010).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3년 미국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는 각 주의 성인보호서비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전국 성인학대신고시스템(NAMRS: National Adult Maltreatment Reporting System)의 파일럿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각 기관에 의해 제출된 기관의 정책과 실천, 대상자 관련 정보, 가해자에 대한 정보, 조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통계자료 등을 취합하였다. 2016년 전체 주를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여 2017년에는 55개 주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보고하였으나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은 제한적인 수준이다(U.S. DHHS, 2015).

Ernst et al.(2014)은 성인보호서비스 실천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성인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서비스 효과성을 검토하는 연구자간의 공조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전미 성인보호서비스 협회(NAPSA)와 같은 전국적 조직의 지침 및 방향성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과 실천 방향, 각 주의 조항을 논하며 종사자 교육 및 일반인의 인식 고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증거기반의, 일관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제2절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¹⁷⁾

이 절에서는 독일 사회의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보호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동향을 파악하고 보호서비스에 대한 역사적 발전, 법과 전달체계, 프로그램 및 인력의 전문성을 살펴보았다.

17) 이 절은 저자 홍문기의 논문(Hong, 2016)을 일부 참고하여 번역·재구성하였음.

1.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발전

독일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야 아동학대 문제와 더불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노인학대 등의 보호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체계는 산업화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1990년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

가. 산업화 이후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발전¹⁸⁾

19세기 초 산업사회는 급격한 노동력의 수요로 인해 아동의 노동, 아동에 대한 착취와 방임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적 관심이 된 아동의 노동환경은 1829년 아동방임 보호단체(Der Schutz von sittlich vernachlaessigten Kindern)의 설립으로 아동착취와 폭력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형성되었다(Herrmann, Dettmeyer, Banaschak, & Thyen, 2010, p. 6). 정부 차원에서는 노동착취를 당하는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9세 이하 노동금지법」(Preussliche Regulativ ueber die Baeschaffung jugendlicher Arbeiter in Fabriken)이 1839년 4월 6일에 제정되었다. 이후 1853년에 12세 이하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과 1891년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등장하였다. 1898년에는 베를린 아동착취 및 학대 보호를 위한 협회(der Verein zum Schutzes der Kinder gegen Ausbeutung und Misshandlung in Berlin)가 구성되었다(Jordan et al., 2012, pp. 36-38).

19세기 말에는 국가가 직접 아동보호에 관여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및

18) (Hong, 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주정부 차원에서 건강 및 사회부, 아동복지시스템, 가족복지를 위한 상담 서비스(Gesundheits- und Sozialaemter, Kinderfuersorgesystem, Soziale Beratung zur Familiebildung) 등이 시작되었다. 1903년에는 아동노동을 위한 첫 번째 제국법¹⁹⁾이 등장하여 공장의 아동착취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한 폭력에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대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900년 연방정부는 「민법」(Buergerliche Gesetzbuch [BGB])에 부모와 양육권자의 아동학대나 방임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였다. 1912년에 아동을 학대해 신체에 심한 손상을 입힌 경우 처벌하도록 형법에 규정하였다(Herrmann et al., 2010, pp. 6-9).

나치 정부(1933~1945)하에서 공공기관은 중앙집권화되었으며, 아동·청소년 활동단체는 국유화되었다. 나치 정부는 사회통제와 홍보활동(프로파간다)을 목적으로 가정에 개입하기 위해 법을 활용하였으며,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태도를 벌미로 친권에 개입하였다(Herrmann et al., 2010, p. 9).

나치 정부 이후 1953년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 [JWG]) 개정을 통해 청소년청을 조직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에 함부르크 독일 아동보호협회(In Hamburg der Deutsche Kinderschutzbund)가 설립되었다. 1973년에는 학교나 집에서 교정이나 교육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체벌이 학교에서 폐지되었다. 1976년 첫 번째 독일 아동보호기관(KSZ: Kinderschutzzentrum)이 설립되고 1980년 이후부터 아동보호가 사회 이슈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Fegert et al., 2010, pp. 21-22).

1989년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따라 독일은 모든 아동을 신체 및 정신적 폭력,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19) Gesetz betreffend die Kinderarbeit in gewerblichen Betrieben

1991년 연방의회에서 협약을 비준하고 아동권리의 이행과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개입과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 지원법」(KJHG)을 개정하였다. 1994년에는 아동폭력 업무에 다학제 간 접근이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에 대한 독일협회(DGgKV: Deutsche Gesellschaft gegen Kindesmisshandlung und -Vernachlaessigung)를 하노버에 조직하고 2009년에는 성학대의 예방을 위한 협회(Deutsche Gesellschaft fuer Praevention und Intervention bei Kindesmisshandlung und -vernachlaessigung)를 구성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가족 안에서의 폭력 없는 교육법」(Gesetz auf gewaltfreie Erziehung in Familien)이 제정되었다(Herrmann et al., 2010, p. 9).

나.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강화

독일 사회에서 1990년 이후부터 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이전까지는 매체를 통해 아동학대나 폭력의 보고가 매년 10건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매체의 보도가 매년 급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Fegert, Ziegenhain, & Fangerer, 2010, p. 22). 2006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인 케빈(Kevin) 사례²⁰⁾가 보도되어 독일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보호시스템

20) 2살 아동 케빈은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청소년청이 보호를 진행하고 있었음. 하지만 학대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청소년청 공무원, 의사, 관계자 등 아무도 케빈을 보호할 수 없었음. 2006년 10월 10일에 담당 공무원이 일시보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케빈은 이미 일주일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시신은 훼손된 채 냉장고에서 발견됨(Maeurer, 2006, pp. 2-4).

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조사하여 공개하였고, 브레멘 시의회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케빈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다(Aldenhoff, 2016).

케빈 사례를 통하여 독일 아동보호시스템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각 주 청소년청의 아동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시스템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담당자의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사정하는 평가의 인식 차이, 부서 간 협력 문제, 다른 관청 간 협력의 어려움, 예산의 부족, 정보 수집의 법적규정 문제, 예방에 대한 어려움, 잘못된 문화, 담당자의 평가오류, 양육 문제에 대한 늦은 개입, 가족에 대한 접근 어려움, 청소년청의 규정된 상담시간, 행정의 인사문제, 아동인식 부족, 담당자의 교육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Fegert et al., 2010, p. 235).

독일사회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변혁을 추진하였다. 연방정부는 2005년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Jugendhilfentwicklungsgesetz [KICK])을 개정하고 아동보호에 있어 국가의 개입권을 강화하였다. 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에 국가는 제2의 양육권자로서 친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국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보호에 있어 청소년청과 가정법원, 민간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2012년 제정된 「연방아동보호법」(Bundeskinderschutzgesetz [BkiSchG])은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의무적 협력과 정보전달 등을 규정하였다(Hong, 2016, p. 24).

아동보호시스템의 총책임 역할을 부여받은 청소년청은 아동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모든 예방적 지원 체계의 권한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위험사정 및 조사 등을 실제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가정법원이 징후나 상흔 없이도 청소년 청의 청구로 아동보호체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 시에도 친권에 대한 개입을 통해 아동보호를 강화하였다(Hong, 2016, p. 25).

주정부 차원에서도 2007년 브레멘의 아동복지 안전과 아동방임 보호를 위한 조례(Gesetz zur Sicherung des Kindeswohls und zum Schutz vor Kindervernach-laessigung [KiWG]) 제정과 같이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아동보호 관련법을 제정하였다(Fegert et al., 2010, p. 326).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개입체계와 더불어 다양한 예방적 접근에 대해 규정하였다. 199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가능해졌으나, 부모나 양육권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문제를 밝히고 도움을 청구해야 예방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의 특수문제에 있어 사전적인 예방시스템의 요구가 급증하였다. 사전적 예방시스템(Fruehwarnsystem)은 양육권자나 부모가 아동과 관련된 양육 문제를 직접 관할 관청에 상담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기관이 아동을 살펴보고 아동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평가하여 청소년청과 협력하는 구조를 말한다. 2007년 주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모든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내용을 3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관청은 정보를 받은 아동과 정보를 받지 않은 아동을 살펴보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정보를 받지 않은 아동은 편지 등을 통해 직접 가정에 건강검진을 요청하거나, 가정에 개입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운영한다(Fegert et al., 2010, p. 324).

독일에서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예방적 논의와 연구들은 다양한 접근

체계와 방법론을 제안하게 되었고, 아동의 생활조건 및 환경의 변화까지 촉구되었다. 예방적 관점은 아직까지도 클라이언트인 대상자가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는다는 인식이 강하며 대상자의 사전 인지가 어렵고, 지원 가능한 예방적 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Lukas, 2013, p. 680).

2.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관련법 분석

독일에는 아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복지에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나 일시보호, 친권의 제한 및 박탈과 관련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지원법」(KJHG)과 민법(BGB)에 규정되어 있다. 아동과 청소년 폭력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지원법과 민법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에 관대한 국가 개입의 규정을 살펴보고, 아동보호를 위한 청소년청의 개입과 지원 체계, 가정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친권의 제한 및 박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가. 아동·청소년보호체계와 관련된 헌법의 규정

아동·청소년지원의 법적 보호규정은 헌법 6조에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법이고, 부모에게 의무로서 우선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Art. 6. Abs. 2 GG). 헌법 6조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우선권이 국가보다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부모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양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국가는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부모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부모는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Schone, 2008, p. 23). 헌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자율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인성을 갖춘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부모-아동 관계에 우선권을 둔다 (Meysen, 2008,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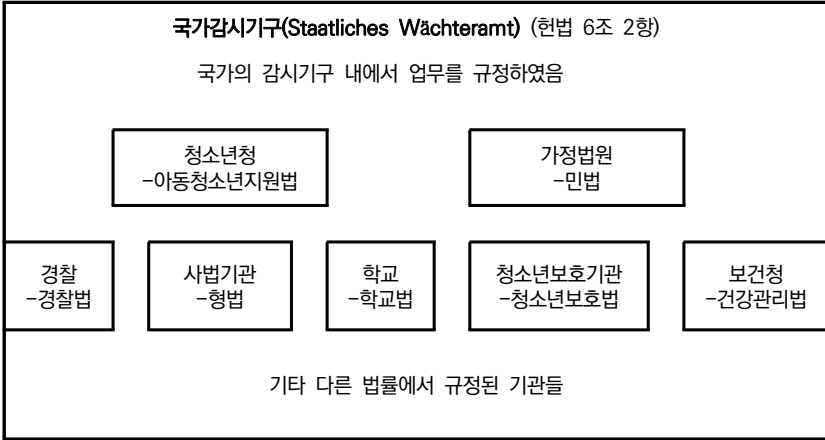
헌법 6조 2항은 “공공기관(staatliche Gemeinschaft)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감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다.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은 국가의 개입권 보다 우선할 수 없다. 즉, 국가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Wiesner, 2002, p. 592). 부모가 아동의 발전과 교육에 필요한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감시기구가 아동·청소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친권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6조 2항 3절에서는 양육권자의 의지에 반하여 법에 따라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양육권자가 국가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양육권자가 다른 이유로 아동을 방치하여 위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즉, 헌법은 국가의 개입권과 부모의 양육권 중에 부모의 친권을 우선하는 한편, 부모가 헌법에서 규정한 아동양육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작동을 위해 아동보호와 관련된 지원 체계는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의 청소년청을 규정하고, 친권 개입과 아동보호에 대한 규정은 민법(BGB)상의 가정법원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Wiesner, 2002, p. 593).

또한 유관기관인 경찰, 법원, 학교, 지역 아동·청소년보호관청, 청소년 유해미디어를 점검하는 연방기관(Bundespruefstelle fuer jugedgafaehrdende Medien), 보건소(Gesundhietsaemter) 등은 국가의 감시기구(Staatliches Waechteramt) 역할을 부여받아 아동·청소년보호의

예방과 개입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Meysen, 2008, p. 18).

[그림 4-4] 국가감시기구(Staatliches Wächteramt)



자료: Meysen, T. (2008). Das Recht zum Schutz von Kindern, in : Institut fuer Sozialarbeit und sozialpaedagogik e. V. (ISS) (Eds.). Vernachlessigte Kinder besser schuetzen. Sozialpaedagogisches Handeln bei Kindeswohlgefaehrung. 2 Auflage. Muenchen: Reinhardt. p. 18.

나.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

1) 「아동청소년지원법」의 발전 과정

아동·청소년지원을 위한 여러 규정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고자 1922년 「제국청소년복지법」(Reichsjugendwohlfahrtsgesetz [RJWG])을 제정하였다(Struck, 2002, p. 531). 제국청소년복지법은 청소년의 양육과 보호, 청소년청의 지역 단위 지원 강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다. 당시 바이마르공화국(1919~1933)의 청소년 정책 통합 시도는 좋았으나, 예산의 한계로 제국청소년복지법을 실행하기는

어려웠다(Wabnitz, 2009, p. 37). 나치 정부(1933~1945) 시기에 외형상 제국청소년복지법은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모든 관청과 민간단체들은 나치 정부에 소속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청소년복지법은 그대로 활용되었으며, 1953년 독일 연방공화국은 아동·청소년복지 업무의 전달 체계 강화 등을 담아 제국청소년복지법을 개정하였다(Raetz-Heinisch, Schroerer, & Wolff, 2009, p. 23). 1961년 기존 제국청소년복지법을 「청소년복지법」(JWG)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 관계, 가정에 대한 감독 강화(Heimaufsicht), 정기적인 청소년보고서의 발행과 연방청소년계획의 규정을 마련하였다(Muender, 2013, p. 540). 1973년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적 지원 체계를 위한 개정 노력은 재정적 한계와 정치적 대립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²¹⁾ 10여 년간의 토론과 시도 끝에 1990년 5월 11일 연방상원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의결되어 1990년 6월 26일 공포되었다. 본 법은 1990년 10월 3일에 동독에서, 1991년 1월 1일에 서독에서 적용되었다. 1991년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에서 아동·청소년의 복지 위험이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하는 방향에서 다양한 예방적 지원 체계를 규정하도록 변경되었다. 부모와 양육권자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의 책임하에서 부모나 양육권자를 지원해 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은 가정법원을 통하여 친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육과 관련된 감시기구인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2~43조에 근거하여 오

21) 1973년부터 개정을 위한 청소년지원법(Jugendhilferecht) 논의가 시작됨. 전문가의 개정법안을 토대로 1978년 정부의 초안과 1979년 연방상원의 다른 방향의 초안이 만들어짐. 1980년 5월 23일 독일의회(Bundestag)에서 청소년지원법을 의결하였으나, 연방상원(Bundesrat)은 예산 문제로 통과하지 못하였음. 1988년부터 전문가의 개정법안이 다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법안 개정의 움직임이 지속되었음. 마침내 정부의 초안은 1989년 9월 29일 만들어지게 되고,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으로 이어짐(Muender, 2013, p. 540).

직 긴급한 경우에만 가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일시보호할 경우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양육책임을 가진 부모의 친권이 국가의 개입권보다 우위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었다(Beckmann, 2008, pp. 15-16).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Fieseler, & Herborth, 2010, p. 171).

- 기존 사후 개입적인 접근에서 아동·청소년의 발전 지원을 위한 예방적 접근으로 법적 토대 변화
- 가족 상황과 환경적 접근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분화된 법적근거
-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
-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교육 지원의 접근
- 심리적 장애(seelisch behinderten)를 겪는 아동·청소년의 지원
- 후기 청소년(Junge Volljaehrige)에 대한 지원 확대
- 욕구에 기반한 증상기적 청소년지원계획 수립과 실행

2005년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조항이 추가되어 아동복지 위협시에 아동·청소년의 보호 업무를 강화하였다. 청소년청은 부모나 양육권자에 대한 아동양육 불이행 시 아동발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위험 상황일 경우 일시보호를 할 수 있다(Jordan, 2007, p. 7). 위 조항의 개정은 아동보호체계에 본질적인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아동보호 업무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근거 마련과 아동복지 위협에 대한 가시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Jordan et al., 2012, p. 114).

2)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의 보호서비스 업무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조 1항에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발달

과 교육을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제1조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제3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성장의 지원하에서 아동발달에 손상이 되는 사항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려 노력해야 하며, 부모나 양육권자는 아동을 양육할 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동복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은 부모의 양육을 감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위협 시에 국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에서 위임한 아동보호 업무를 규정하였다(Buchkremer, 2009, p. 309).

이어서 2조에서 관련 복지 업무를 아동·청소년복지 업무(Leistungen der Jugendhilfe)와 다른 업무(Andere Aufgaben der Jugendhilfe)로 분리한다. 복지 업무를 2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가 아동복지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업무(§§11~41KJHG)와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분리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이다(§§42~60 KJHG). 이 조항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는 국가의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업으로 분류된다(§ 3 Abs. 3 KJHG).

부모나 양육권자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개입 이전에 예방적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지원 서비스, 가족보충서비스, 가족대체서비스를 규정하였다(§§ 11~41 KJHG). 가족 지원 서비스(familienunterstuetzende Leistungen)는 가정 구성원 간 스트레스나 다양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상담과 지원, 주거, 이혼 및 별거, 교육상담 및 의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16~21 KJHG). 가족보충서비스(familienergaenzende Leistungen)는 양육권자나 부모의 양육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한계가 있을 경우에 주간보호시설, 외부교육 및 도우미 등의

외부적 지원을 통해 부모 역할의 일부분을 지원한다(§§ 22~32 KJHG). 가족 대체서비스(familienersetzende Leistungen)는 양육권자나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한 상실된 상태에서 외부 시설에서 아동을 위탁하거나 아동보호를 지원한다(§§ 33~35 KJHG)(홍문기, 2015, p. 102).

8a 조항은 아동보호 업무와 개입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전문가의 협력, 위험요인의 사정(Abs.1 Satz 1, Abs. 4 Satz 1 Nr. 2), 아동·청소년 및 양육권자의 참여(Abs. 1 Satz 2 und 3, Abs. 2 Satz 1, Abs. 4 Satz 1 Nr. 3, Satz 2), 민간단체에서 공공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청소년청은 아동보호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위험사정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사정 평가는 아동이 긴급한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아동이 가족 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27 ff. Sozialgesetzbuch [SGB VIII]), 가정법원의 협력을 통한 친권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1666, 1666a BGB), 경찰이나 심리치료 기관 등에 아동보호 예방을 위해 협력을 요청할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Deutscher Bundestag, 2004, p. 30).

또한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의 복지 위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험이 인지될 경우 위험요인 평가와 가정법원의 개입 요청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가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에 청소년청은 가정법원의 판결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일시보호 할 수 있다(§ 8a Abs. 2 Satz 2). 또한 청소년청은 필요시 다른 관할 관청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Jordan, 2008, p. 41).

다만 이 조항은 청소년청이 친권에 대해 개입하는 근거 규정은 아니며

절차로써 아동·청소년을 현존하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시규정으로 본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청이 양육권자에 개입하기 위해 친권 제한이나 박탈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 이 점에서 청소년청과 가정법원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50조에 따라 아동보호 업무에 있어 명확한 업무분담을 규정하였다.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의 주무관청으로 지원과 상담의 기능을 가지고, 가정법원은 친권 개입을 통한 아동보호 조치결정의 역할을 한다. 각 기관은 독립적이고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아동보호 업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 제7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청을 아동·청소년보호 업무의 총책임 기구로 규정하였다(Wabnitz, 2009, p. 111).

특히 부모나 양육권자가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긴급한 위험이 발생할 시에 청소년청은 일시 보호를 진행할 수 있고(§ 42 KJHG), 친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8a Abs. 3 Satz 1). 아동보호 업무의 효과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조에서는 공공기구와 민간단체 간 독립성을 존중하고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3~4 KJHG).

3) 「민법」(BGB)에 규정된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의 개입

민법(BGB)은 1666조와 1666a조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 개입과 아동보호 조치의 최종적인 결정을 규정하였다.

민법 1626조 1항에는 아동양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명시한다. 이어 2항에서는 부모는 아동의 발달 상황에 따라 양육 방법에 대해 부모-아동 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 1626 Abs. 2 BGB). 민법에서도 헌법에서 명시한 친권의 우선권을 명시하였고,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양육권자나 부모는 아동·청소년과 양육 방법에 대한 의견이 합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한다.

민법 1666조, 1666a조에서는 양육권자나 부모가 아동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 개입을 규정한다. 독일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발달에 대한 현존하는 증상기적 위협이 있을 때 가정법원의 관여와 친권의 개입 없이 아동보호 업무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법원의 판사는 아동학대나 폭력, 방임 등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결핍된 양육환경 및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나 부모의 친권 조치와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먼저 가정법원은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아동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정 및 평가하게 된다(Schone & Tenhaken, 2012, p. 94).

가정법원의 개입 근거는 아동·청소년이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위험에 놓여 있을 때나 부모에게 양육 의지가 없을 때 혹은 아동·청소년에게 현존하는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때이다. 개입 근거를 토대로 아동복지에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동발달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잠재위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도 가정법원은 아동 위험을 예방하거나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위험 상황 등에 개입할 수 있다(Zorn, 2006, p. 226). 가정법원을 통한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을 통한 양육의무의 남용, ② 위험 예방을 위한 부모의 양육 의지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이다(Schone & Tentaken, 2012, p. 96).

「자녀 복지의 위험에 대한 가정법원 조치의 편의를 위한 법률」

(Erleichterung familiengerichtlicher Massnahmen bei Gefaehrung des Kindeswohls)²²⁾이 2008년 7월 12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빠른 시기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의 상흔이 발견되기 전에 위험요인만으로도 가정법원의 관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청과 가정법원은 각 기관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각각의 업무를 이행하고, 가정법원은 필요시에 부모에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Nothhafft, 2008, pp. 1-2).

가정법원은 판결 이전에 당사자인 14세 이상 청소년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59 Abs. 1 FamFG). 14세가 되지 않은 아동에게는 성향이나 애착 등 판결에 중요한 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59 Abs. 2 FamFG).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은 아동의 의견수렴을 중지할 수 있으며, 아동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 경우 차후에 실시할 수 있다(§ 159 Abs. 3 FamFG). 아동복지 위험을 근거로 아동을 가족에게서 분리하거나 친권의 제한 및 박탈이 필요할 경우, 가정법원은 절차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다(Zorn, 2006, p. 248). 가정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절차보조인을 이용할 경우 절차보조인 참석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159 Abs. 4 FamFG). 절차 진행 시에 부모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160 Abs. 1 FamFG),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60 Abs. 1 FamFG).

가정법원은 절차 진행 시 청소년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증거수집과 증인심문을 하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9ff, 163FamFG). 가정법원은 조사를 통하여 아동복지 위험이 존재하거나 양

22) 2008년 개정된 민법에서 가정법원의 개입요건을 '부모의 친권 남용이나 방임,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분을 삭제하여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요건을 완화하였음(윤정숙 외, 2017, p. 553).

육권자가 아동폭력 위험을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 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9ff, 163 FamFG).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법원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666 Abs. 3 BGB).

- 아동·청소년 지원 및 건강 지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한 지원 체계 명령
- 의무교육 이행에 대한 명령
- 임시적 혹은 시간제한 없이 지정된 지역의 집에 머무르거나 아이가 정기적으로 머무르는 장소인 집 등의 사용에 대한 금지
- 아동과의 연락 및 만남 금지
- 친권의 부분적 제한 및 박탈

가정법원은 아동보호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장기적,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만약 가정법원이 조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내에 판결에 대한 재심사를 해야 한다 (§ 166 Abs. 2-3). 아동·청소년 복지의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가정법원의 조치 결정이 필요치 않을 경우 민법 1666, 1666a조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1696 BGB).

아동청소년지원법(KJHG)과 민법(BGB)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체계도를 살펴보면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업무체계도



자료: Kinder und Jugendhilfe. (2019). Jugendhilfe zwischen Preavention, Leistungserbringungen und Intervention. Retrived from <http://www.kinder-jugendhilfe.info/wai1/showcontent.asp?ThemaID=4675>. 2019. 11. 24.

4) 「연방아동보호법」(BkiSchG)²³⁾의 관계기관 협력의무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된 연방아동보호법(BkiSchG)은 청소년청의 지속적인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체계에도 불구하고, 아동폭력 및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인 청소년청의 역할만으로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담보할 수 없었기에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아동보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청소년청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이른바 예방시스템(Fruhen Hilfen)을 갖춰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 문제를 의료기관

23) Gesetz zur Stärkung eines aktiven Schutzes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 Bundeskinderschutzgesetz [BkiSchG]

과 보육기관 등에서도 인지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상황 시에 청소년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방아동보호법 1권(Artikler)은 아동보호서비스의 정보와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아동보호서비스에서 가족과 아동을 만나는 모든 아동·청소년기관과 종사자의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관이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발달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모나 양육권자의 양육의무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이 법은 아동폭력의 위험과 아동의 손상을 예방하는 업무의 공동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1 Gesetz zur Information und Kooperation im Kinderschutz [KKG]).

국가의 모든 기관은 태아부터 세 살까지 아동의 발달을 위한 정보, 상담, 도움 지원 체계를 부모나 양육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KKG). 아동보호체계의 예방적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해 의료기관, 학교 등 아동보호서비스 관련기관²⁴⁾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총책임자로서의 청소년청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3 KKG).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만나는 종사자가 아동복지 위험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청소년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4 KKG).

24) 의료관청(Gesundheitsämter), 사회관청(Sozialämter), 공동서비스기관(Gemeinsame Servicestellen), 학교(Schulen), 경찰(Polizei), 질서관청(Ordnungsbehörden) 노동청(Agenturen für Arbeit), 병원(Krankenhäuser), 소아과센터(Sozialpädiatrische Zentren), 예방지원기관(Frühför derstellen), 사회문제를 위한 상담소(Beratungsstellen für soziale Problemlagen) 임신지원상담소 (Beratungsstellen nach den §§ 3 und 8 des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es), 폭력보호를 위한 관련기관(Einrichtungen und Dienste zur Müttergenesung sowie zum Schutz gegen Gewalt in engen sozialen Beziehungen), 가족교육관련기관(Familienbildungsstätten), 가정법원(Familiengerichte), 치료종사자(Angehörige der Heilberufe)(§ 4 KKG)

3.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가. 아동보호서비스 총책임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청(JA: Jugendamt)

1) 청소년청의 업무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의 유익한 성장발달과 사회적 성장을 돕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율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인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SGB VIII).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하여 청소년청은 중앙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 속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아동·청소년정책과 업무 범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하며, 주청소년청과 지역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른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모든 지역 단위에 청소년청을 조직해야 하며, 청소년청을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69 Abs. 1 und 3 SGB V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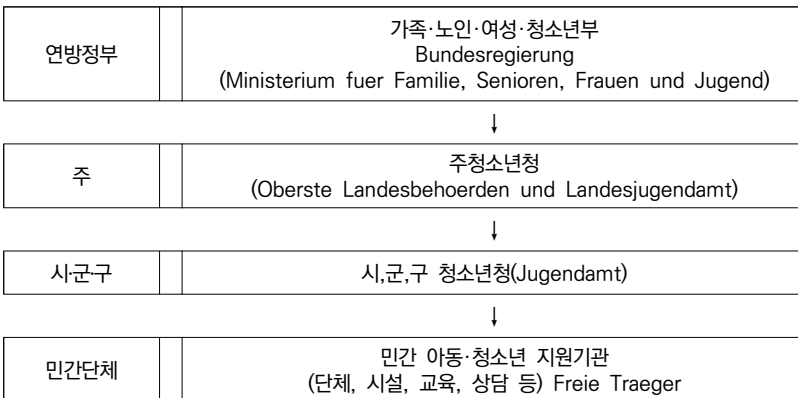
주청소년청과 지역청소년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Wabnitz, 2009, p. 126).

- 지역청소년청의 업무 범위: 아동청소년지원법 11~41조에 따른 업무 실행, 42~6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79조 1항에 따른 총책임의 역할
- 주청소년청의 업무 범위: 아동청소년지원법 85조 2항에 따른 상담과 지원업무 1) 지역청소년청의 지원, 2) 청소년청과 민간단체 협력 지원, 3) 주청소년청의 프로젝트 및 행사 운영, 4) 민간기관이나 단체 지원, 5) 교육 지원, 6) 외국 원조, 7) 후견단체 및 후견관리 허가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에 규정된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책임의 역할을 가진다. 아동·청소년의 복지업무(§§ 11~41 SGB VIII)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위탁하거나, 위탁할 기관이 없으면 직접 수행한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업무(andere Aufgabe)는 대체적으로 법원과의 협력, 절차보조인과 후견인, 아동보호에 대한 위기개입과 일시보호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필요한 업무로 민간단체에 위임할 수 없다(§ 76 SGB VIII). 하지만 인증받은 민간단체는 제76조에 따라 공공기구의 책임과 함께 규정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Stecklina, 2012, p. 142).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일시보호, 법원과의 협력, 후견인, 절차보조인, 감호제도 등을 수행해야 한다(§§ 42-60 SGB VIII).

[그림 4-6] 독일 아동·청소년 전달체계 흐름도



자료: Gries, J., & Ringler, D. (Eds.). (2003). Jugendamt und Jugend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ltmannsweiler: Schneider. p. 75.

2) 아동·청소년보호 업무와 관련된 청소년청의 역할

청소년청은 부모와 양육권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유익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으로 아동·청소년의 복지 위협 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 Abs. 5 SGB VIII). 즉 국가는 가정법원의 개입 이전에 부모의 양육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청은 부모가 아동·청소년에게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례성 원칙²⁵⁾에 따라 가정법원과 함께 친권에 개입할 수 있다.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공공기구로서 특별한 법적 위치에 놓여 있고 아동보호의 책임기구인 동시에 복잡한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청소년이 복지를 위협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친권을 가진 양육권자가 일시보호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거나, 가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42조 1항에 따라 이들을 일시보호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청이 친권을 가진 양육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아동보호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Nahrwold, 2011, p. 148) 일시보호는 관계자인 아동·청소년을 적합한 기관이나 다른 주거유형에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42 Abs. 1 Satz 3 SGB VIII).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를 진행하는 경우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

25) 국가는 부모권에 개입하기 전에 비례성원칙(Verhältnismaessigkeit)을 준수해야 함. 문제 범위나 크기에 따라 처음 단계에서 가족의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움과 지원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이러한 지원 체계를 수용하지 않을 때 국가는 친권에 개입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증해야 하는 것이 개입의 근거임. 비례성 원칙은 가정법원의 친권에 대한 조치(§§ 1666, 1666a BGB), 청소년청의 일시보호(§§ 8a, 42 SGB VIII) 등과 관련되어 있음(Nahrwold, 2011, p. 145).

년지원법 제42조에 따라 3가지 전제조건하에서 개입이 가능하다 (Goldberg & Schorn, 2011, p. 44)

-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일시보호를 요청하였을 경우
- 아동·청소년의 긴급한 복지 위협으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가정법원이 일시보호가 필요한 시점에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 외국 미성년자가 동행자 없이 입국하였을 경우와 독일에 양육권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개입 권한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지원법 8a조(§ 8a Abs. 3 Satz 2 SGB VIII)는 42조의 일시보호와 관계가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청소년청은 친권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청의 권한은 임시적이고, 최종적인 개입을 판단하는 권한은 가정법원에 있다. 청소년청이 아동의 복지 위협 발생 시 양육권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일시보호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은 2005년 10월 1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제42조가 개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청소년청에 일시보호 권한 범위에서 제한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업무 권한을 허가하였다. 하지만 일시보호 시 청소년청에 직접적인 강제 권한을 부여하진 않는다(§ 42 Abs. 6 SGB VIII).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에게 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청소년청은 유관기관인 경찰에 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Zorn, 2006, p. 240)

청소년청은 일시보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

- 어떠한 도움과 지원이 가능한지 아동·청소년에게 설명함(§ 42 Abs. 2).
- 신뢰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해치는 사람이라면 다른 관계자에게 정보를 전달함(§ 42 Abs.2).
- 양육권자에게 일시보호에 대해 지체 없이 설명함(§ 42 Abs. 3). 청소년

년청은 일시보호 관련 내용, 장소 등을 부모와 가정법원에 통지함.

-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양육비와 의료 지원 등 돌봄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구축함(§ 42 Abs. 2).
- 양육권자가 일시보호에 동의하지 않을 시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을 지체 없이 양육권자에게 인도하거나, 가정법원의 개입을 통해 친권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함. 양육권자에게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을 인도하려면 청소년청의 위험사정 평가에 따라 아동복지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양육권자가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 42 Abs. 3 Satz 2 SGB VIII). 다른 방법은 가정법원이 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해 가능한 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여하게 하는 것임(§ 42 Abs. 3 Satz 2 SGB VIII). 이때 가정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일시보호가 긴급한 조치인지, 아니면 다른 적합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이 점에서 청소년청은 친권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의 제한이나 박탈에 대한 평가를 기다려야 함(Nahrwold, 2011, p. 146).²⁶⁾
-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보호 내에서 구금조치를 할 수 있음(§ 42 Abs. 5 SGB VIII).

청소년청은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아동복지의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 8a SGB VII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양육권자나 부모 등이 앞에서 논의된 지원 체계의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

26) 친권 개입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효력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독립된 법원, 즉 가정법원이 민법 1666조에 따라 권한을 가짐. 경찰, 질서관청(Ordnungs behörde)과 같이 청소년청도 긴급개입을 목표로 일시적인 개입이 가능함. 최종적인 결정은 가정법원에 속해 있음.

우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아동보호가 가능하도록 관여하고 필요시에 가정법원과 함께 친권에 관여할 수 있다 (Schone & Tenhaken, 2012, p. 94).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50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체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청(JA)은 총책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및 양육권자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입한다. 특히 청소년청은 아동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청소년지원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모나 양육권자의 양육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방적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춘다. 이러한 지원 체계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양육권자가 아동·청소년을 적절하게 양육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청은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기구로서 가정법원, 경찰, 다양한 민간단체와 함께 아동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모색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청과 가정법원이 직접 연결돼 있는 구조를 바탕으로 청소년청은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자인 부모나 양육권자에게 양육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가정법원의 친권개입을 통해 아동보호서비스의 최대 목표인 아동·청소년의 최대 이익과 발달이 전제되도록 한다.

경찰은 가정폭력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청소년청에 의무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청소년청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형법절차는 경찰-검찰-법원을 통해 진행한다.

나.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개입체계 분석

1)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개입체계 분석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 8a에 따라 아동복지가 위험한 경우의 구체적 개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청이 아동·청소년의 위험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인지하고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평가해야 한다. 위험평가 시 양육권자와 아동·청소년을 고려해야 한다(§ 8a Abs. 1 SGB VIII). 양육권자가 위험사정평가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청은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관여를 요청하거나(§ 8a Abs. 2 SGB VIII) 아동·청소년 복지업무 외 의료기관이나 경찰 등 관할관청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8a Abs. 3 SGB VIII). 만약 지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아동·청소년의 복지 위험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개별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거나 경험있는 전문가에게 관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a Abs. 5 SGB VIII). 청소년청은 아동복지 위험에 대한 중요한 근거나 징후를 인지하였을 경우 개입해야 하며,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Jordan, 2008, p. 29).

- 아동의 외형(예: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외상, 영양실조 등)
- 아동의 태도(예: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 무관심하거나 불안한 행동 등)
- 부모나 양육권자의 태도(예: 아동에 대한 폭력, 의료행위에 대한 중단, 아동격리 등)
- 가족의 상황(예: 노숙행위, 아동구걸 등)
- 부모나 양육권자의 개별적 상황(예: 빈번한 음주, 약물, 외관 등)
- 가정 상황(예 : 쓰레기로 꽂 차 있거나 지저분한 집안환경 등)

2) 개입 절차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정부와 주청소년청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입 절차가 다르며, 위험사정 평가도 다르게 나타난다. 다양한 연구에서 아동복지 위험 시 개입 절차 및 평가도구를 제안하였다. 독일청소년연구소(DJI: Deutsche Jugendinstitut)에서 제시한 개입 절차는 다음의 6단계이다 (Kindler, Lillig, Herbert, Meysen, & Werner, 2006, p. 44).

- 1단계 : 아동복지 위험 신고 및 인지
- 2단계 : 연락 및 정보 수집
- 3단계 : 아동복지 위험에 대한 사정 및 평가
- 4단계 : 아동·청소년,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세스
- 5단계 : 가정법원 협력
- 6단계 : 지원 프로세스와 변화에 대한 평가

가) 아동복지 위험의 신고 및 인지

청소년청의 담당공무원(ASD: Allgemeiner Sozialer Dienst)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먼저 부모나 아동이 스스로 신고하였을 경우로 위험, 갈등, 양육 부담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경우이다. 또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외부 관계자인 친척, 이웃, 의사, 경찰서, 학교 종사자 등이 인지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청 담당공무원이 이혼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중에 위험 상황을 인지한 경우이다. 이때 담당공무원은 초기 정보를 토대로 “지금 당장”, “24시간 내”, “한 주 이내” 혹은 “한 주 이상”으로 나누어 사례에 대한 개입계획을 세워야 한다(Kindler et al., 2006, p. 47). 초기

아동복지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신고자와의 협력을 통한 아동복지 위험에 대한 평가, 아동복지 위험의 긴급성 판단,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해야 한다.

나) 현장방문과 정보수집

아동복지의 위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과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아동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청소년청은 먼저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상담하고,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 가정환경을 파악하며, 학교나 유치원, 병원 등 평소 아동·청소년과 관련 있는 교사나 종사자와의 접촉을 시도한다. 초기상담과 정보수집은 아동·청소년이 현재 어떠한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8a Abs. 1 Satz 1 und 2 SGB VIII). 청소년청은 「개인정보보호법」(Datenschutzbestimmungen)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양육 상황에 대한 인지, 아동·청소년 및 양육권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정보조사 및 자료조사를 진행한다(§ 62 Abs. 3 Nr. 2d und Nr. 4 SGB VIII). 필요시 아동보호 업무 인지를 위해 관계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62 Abs. 3 Nr. 2d und Nr. 4 SGB VIII).

최초 가정방문 시 2명의 동료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사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와의 상담 및 가정환경 등을 살펴보고 다른 공무원은 관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Janz, 2004, p. 9). 아동·청소년 및 부모 등 관계자와 처음 만남을 시도할 때에 위험사정²⁷⁾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아동·청소년이 다음 만남 때까지 안전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8a Abs. 1 Satz 2 SGB VIII). 위험사정 평가에 따라 청소년청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8a Abs. 1 Satz 3, §§ 27. 36 SGB VIII), 아동·청소년

27) Sicherheitseinschaetzung

이 긴급한 위험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일시보호나 가정법원, 경찰 등에 개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8a Abs. 3, § 42 SGB VIII, § 1666 BGB).

다) 아동복지의 위험사정 및 평가

아동·청소년이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위험 시 지체 없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당장의 조치가 필요없다고 하면, 위험요인(Risikoeinschaetzung) 평가가 중요하다(Jordan, 2008, p. 29). 아동·청소년이 현재 어느 정도 아동복지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위험요인 평가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최상의 발달을 꾀하기 위해 평가하는 사항으로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업무이다(Alle, 2012, p. 55).

사례를 담당하는 청소년청의 공무원은 혼자서 평가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위험요인 평가 시 아동청소년지원법(KJHG) 제8a조에 따라 다른 직원과 함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유익한 발달을 위해 아동보호 상황과 삶의 환경에 대해 평가할 때에는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손상 정도, 위험 부분에 대한 조사(강도, 빈도, 손상된 범위의 기간) 또는 예상되는 손상의 개연성 수준(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 표시나 징후에 따른 진단),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준비성이나 능력, 존재하는 위험을 종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절한 조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Jordan, 2008, p. 200).

독일은 주마다 아동위험을 평가하는 분석도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슈

투트가르트에서 사용하는 평가 척도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부모나 양육권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분류하고 이행 정도에 따라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Hong, 2016, p. 204). 평가도구는 아동발달 및 아동학대, 방임, 성학대의 파악과 정신병, 심리 문제, 중독, 가정폭력 등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현재 양육 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아동 요구 이행, 아동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폭력적인 태도나 협박, 위협에 대한 부모-아동 관계, 양육권자의 현재 상태 및 양육을 위한 능력 등을 고려한다(Kinderschutz Zentrum Berlin, 2009, pp. 92-93).

라)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세스

위험요인 평가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세스를 계획해야 한다.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상담, 치료, 가정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삶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족 내 위험요인을 낮춰야 한다. 만약 부모나 양육권자가 지원을 거부해 아동·청소년의 위험 상황을 경감시키지 못할 때 청소년청은 가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즉 아동·청소년의 위험 상황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시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가정법원의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Kindler et al., 2006, p. 44).

마) 지원 프로세스의 평가 및 조치 변경

청소년청은 적절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의 위험요인이 경감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담당자는 아동·청소년, 부모 등 관계자들과 함께 변화체계를 사정하고 평가한다. 평가와 결과에 따라 지원 프로세스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지, 혹은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Kindler et al., 2006, p. 44).

3) 아동보호서비스 관계기관 협력과 예방적 지원 체계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a조 1항에 따라 서로 다른 업무를 가진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²⁸⁾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위험사정척도를 진행할 때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때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는 서로 다른 업무를 실행하지만 동등한 권리를 가진 파트너로 간주된다(Schone & Tenhaken, 2012, p. 260).

- 민간단체는 아동복지 위험 시에 아동·청소년을 살펴보고, 기관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청소년청은 부모에게 양육적 도움을 지원하거나 일시보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친권에 대한 개입과 청소년청과의 협력을 통해 최종적인 아동보호 결정을 한다.

연방아동보호법(BkiSchG) 제3조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²⁹⁾ 간 아동보호와 예방지원 업무를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각 기관 종사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복지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제4조에 따라 청소년청에 아동·청소년의 위험 상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3 BkiSchG).

28) 독일에서 협력은 기관별로 공동 합의된 목표 아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함. 네트워크는 협력의 비의무적인 유형으로 공동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아동보호를 위해 서로 간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함.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 협력을 위한 공동의 해결과 의지, 중장기적 업무 분담과 참여에 대한 가시이익, 중장기적 프로세스로서 준비성과 협력, 협력 파트너의 업무 분야와 역할인식이 필요함(Schone & Tenhaken, 2012, p. 254).

29)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건강청 및 사회청, 노동청, 의료기관 및 경찰, 질서청, 학교, 사회문제 상담소, 가족교육센터, 가정법원, 치료 관련 종사자, 예방지원센터 등이 있음(§3 BkiSch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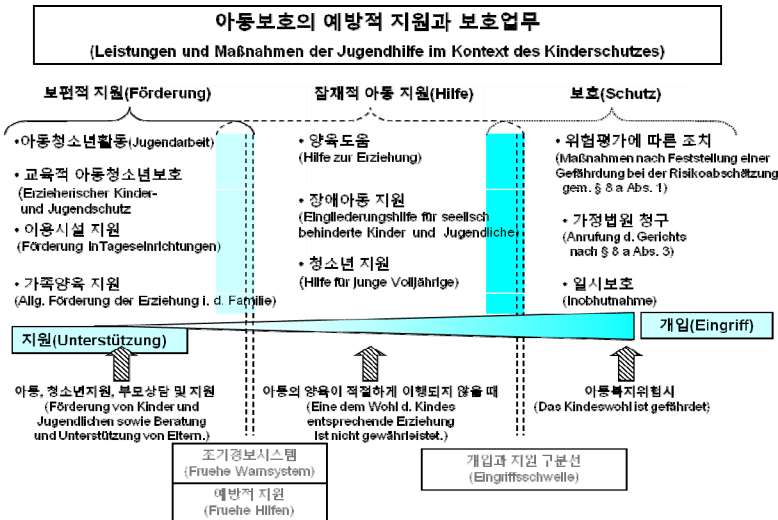
아동보호서비스의 업무는 크게 보편적 지원, 잠재적 아동 지원, 아동보호로 나눌 수 있다(Schone, 2013). 보편적 지원은 모든 아동이 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받고 양육권자나 부모 등이 양육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센터나 청소년클럽, 교육센터, 주간이용시설 및 문화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양육과 관련된 교육 및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적 아동·청소년보호는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에 따라 유흥업소의 출입 제한, 알코올 및 흡연 금지, 아동에 대한 노동행위 금지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가족양육지원은 출산 후에 아동도우미(Hebamme) 파견이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을 모니터링한다. 이 외에도 출산 전 산모지원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등 경제적 지원 체계를 통해 아동성장을 지원한다.

잠재적 아동 지원은 부모나 양육권자가 양육에 대한 부담이나 가족 내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양육 관련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지원법(KJHG) 제28조에 따른 양육상담은 부모-아동 관계 문제, 학교에서의 어려움, 발달 문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심리학적 문제 등 삶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과 관련된 상담, 아동·청소년의 낙태 및 상담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정도우미를 파견하여 부모나 아동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나 의사 등 연계, 아동발달 관련 영양 및 검사, 여가 지원, 숙제 등을 지원한다(Fieseler & Herborth, 2010, p. 426)

마지막 아동보호는 아동·청소년이 위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청소년청이 위험에 대한 사정평가를 진행하고 일시보호 및 가정법원 청구 등을 통해 가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보편적 지원과 잠재적 아동 지원 사이에는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관계 기관 간 예방조기경보시스템(Fruehwarnsystem)을 갖추고 아동과 청소년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하였다. 잠재적 아동 지원과 아동보호 사이에는 자율성에 따른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가정에 개입하여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필요시 경찰, 가정법원 등 유관기관과 가정에 개입해야 한다.³⁰⁾

[그림 4-7] 독일 아동보호서비스 예방적 지원과 보호 업무



자료 : Schone. (2013). Praevention und Intervention im Kontext Fruehe Hilfen, Vortrag zur Fachtagung "Zwischen Praevention und Intervention - Konzepte Frueher Hilfe".

30) 자세한 사항은 Micosatt & Yilmaz(2018) 참조.

• **의료기관과의 예방 지원 체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하다.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조산원, 가정도우미, 치료사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아동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아동·청소년의 복지 위험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연방아동보호법 제3조에 따라 양육권자나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상황에 따라 청소년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Abs. 1 KKG). 예방적 아동보호를 위해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조례(Kinder und Jugendgesundheitsdienstverordnung [KJGDV])를 제정하여 청소년청에 발달 문제, 질병, 장애 문제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가능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Hong, 2016, p. 211)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실시(§ 2 Abs. 1 KJGDV)
- 초등학교 1학년 건강검진 실시(§ 2 Abs. 2 KJGDV)
- 집나지움 5학년, 6학년, 10학년 건강검진 실시(§ 2 Abs. 3 KJGDV)

•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예방 지원 체계**

교사와 학교 사회복지사 등은 아동과 청소년을 자주 살펴볼 수 있어 예방적 지원 체계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이다. 주정부마다 학교법에 아동보호조례를 규정³¹⁾하여 학교 내에서 아동보호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31) Regelung von Verfahrensablaufe zum Schutz des Kindeswohls : Baden Wuerttemberg(§ 85 Abs. 3 und 4), Bayern(§ 31 Abs. 1), Brandenburg(§ 4 Abs. 1 und 63), Nordrhein-Westfalen(§ 42 Abs. 6), Rheinland-Pfalz(§ 3 Abs. 2), Sachsen(§ 50a Abs. 1), Thueringen(§ 55 Abs. 2)

록 하였다. 교사나 교장, 학교 사회복지사는 아동과 청소년복지 위협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위협을 측정해야 한다. 학교는 부모나 양육권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 교체, 숙제 지원, 추가 수업 등의 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필요시 청소년청과 협력을 통해 익명으로 관련 자원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 위협이 증가되거나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개입이 시급히 요청될 때에는 청소년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Hong, 2016, p. 214).

•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협력

아동보호서비스상에서 경찰과의 협력은 아동·청소년의 위협을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위협을 인지하였을 경우 수사를 개시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긴급한 위협에 처해 있을 경우 청소년청과 협력해 일시보호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시 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아동학대 상흔을 살펴 봐야 하며, 상담소 등과 연계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Hong, 2016, p. 218).

• 관계기관과의 예방적 지원 체계

양육의 어려움, 아동 문제, 가족위기, 가정폭력, 중독, 임신 문제 등으로 양육·결혼·가족·생활상담소(Erziehungs-, Ehe-, Familien- und Lebensberatungsstellen), 여성단체(Frauenzentren), 중독상담센터(Suchtberatungsstellen), 임신상담센터(Schwangerschaftskonfliktberatungsstellen)를 방문한 부모나 양육권자에게 사회복지적, 심리학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감시기구로서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발달이 잘 진행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필요시 청소년청과 협력하여 추가 지원이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Hong, 2016, p. 220).

• **아동보호센터(Kinderschutz-Zentren)를 통한 아동보호서비스³²⁾**

아동보호센터는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되어 조직된 첫 민간단체이다. 1975년 베를린 자유대학 라인하트 볼프(Reinhart Wolff) 교수와 대학생들의 주도로 첫 번째 아동보호센터가 설립되었다. 1970년대부터 가정 내 폭력과 아동보호에 대한 문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들과 함께 1980년에 연방 차원에서 아동보호전문가(Arbeitskreis) 그룹이 결성되고 1986년 쾰른에서 아동보호센터연합회(Die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Kinderschutz-Zentrum als gemeinnuetziger Verein)가 조직되어 7개 지역에 아동보호센터가 설치되었다(Kinderschutz Zentren [Website], 2019).

1990년 아동보호센터연합회의 주도로 8번째 국제세미나(ISPCAN: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를 함부르크에서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기존 아동보호센터의 자원봉사 인력이 아동보호업무에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공유하고, 구조와 인력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1993년 연방청 소년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Bundes geschäftsstelle)을 쾰른에 개소하였다(Kinderschutz Zentren [Website], 2019).

아동보호센터는 독일 내 27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모든 아동보호센터의 제공 프로그램은 부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갈등상황에서의 위기개입, 아동보호와 관련한 일반상담(§ 8a SGB VIII),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 지원 및 슈퍼비전, 각 지역 추가 교육 및 보수교육, 아동보호에 대한 정보 및 행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베를린 아동보호센터의 업무를 살펴보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부모상담, 예방지원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치료서비스, 일시보호시설 운영, 교육 등이 있다.

32) (Kinderschutz Zentren [Website], 201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부모상담은 아동발달과 관련된 문제, 유치원·어린이집이나 학교 내에서의 아동 문제, 부모와 아동 간 관계의 어려움, 양육 부담에 대한 위기나 어려움, 아동에 대한 돌봄, 아동학대 문제 등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상담한다. 아동보호센터는 가족갈등 문제나 폭력에 대한 해결방안, 아동이 폭력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며 가족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을 한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다. 아동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화가 났다거나 위협을 당할 때, 집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적 상황을 느낄 때, 아동의 부모가 폭력적으로 싸우거나 분노가 있을 때, 아동의 지인이나 친척 등이 성적으로 괴롭힐 때, 가정의 일로 아동에게 부담이나 걱정을 줄 때 아동보호센터는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적 지원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시 단기적 아동보호도 가능하다.

셋째,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임신부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매주 모여 공동으로 아동놀이를 진행하고, 양육질문 등을 통해 서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발달이나 문제 등에 관해 상담을 진행한다.

넷째, 아동·청소년 치료를 진행한다.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치료, 발달지연의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치료, 사회심리적 문제를 지닌 아동·청소년의 치료를 지원한다.

다섯째, 위기아동을 긴급보호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청소년청을 통해 긴급 일시보호할 수 있으며, 9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Kinderschutz Zentren [Website], 2019).

• **국가조기지원센터(Nationales Zentrum Fruehe Hilfen)³³⁾**

국가조기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위기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파악하고 당사자인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기 지원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아동위험을 이른 시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체계를 만들어 협력한다.

조기 지원 대상은 태아부터 3세까지 영유아를 가진 부모로서, 양육의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조기에 인지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하도록 돕는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07년 개소부터 국가조기지원센터에 아동·청소년 예방과 관련한 연구플랫폼, 서비스 품질관리, 관계기관 협력 등의 업무를 계획하였으며, 16개 주정부별로 국가조기지원센터 협력사무소를 만들어 지역별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4. 독일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독일에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는 아동·청소년복지 업무 중에서도 특별한 업무로 간주된다.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인력은 먼저 청소년청에서의 일시보호,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전담공무원(ASD)이 있으며 민간단체는 아동보호센터(KSZ) 등에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및 교육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인력이 있다. 민간단체는 청소년청과 같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만, 일시보호 및 가정법원과의 협력 등 권한이 필요한 업무는 청소년청이 진행한다.

청소년청 전담공무원(ASD)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되

33) (Nationales Zentrum Fruehe Hilfe: NZFH, 200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어 있을 때, 언제 청소년청이 개입해야 하는지 혹은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가정법원의 개입 여부 등 개별 사례마다 아동의 최상의 발달과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Krieger, Lang, Messer, & Osthoff, 2007, p. 101). 전담공무원은 전문성에 따라 아동의 위험을 사정 및 결정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가족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과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한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부모의 아동양육 부담 해소, 예방적 지원을 통한 아동보호, 양육환경 지원, 아동보호 이행에 대한 관찰 및 평가, 가정법원의 개입 여부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한다. 따라서 청소년청 전담공무원은 아동·청소년의 위험에 대하여 노련하게 대응해야 하며, 예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정의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Hong, 2016, p. 235).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담공무원은 전문역량과 개인역량을 필요로 한다. 보호서비스의 전문역량은 아동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업무 실행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에 대한 노련함을 필요로 한다. 한편 개인역량은 사회적 능력을 기반으로 다른 기관 혹은 다른 전문가와 협력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추진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Deutscher Kinderschutzbund, 2014, p.13).

일반적으로 청소년청 전담공무원은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현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전담공무원(ASD)의 기준은 아동청소년지원법(KJHG) 제7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의 인력은 각 업무과제에 적합한 사람으로 업무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특별한 경험에 기초하여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청소년청과 지역청소년청에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호에는 각각의 업무가 요구하는 범위에서 적절히 추가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에게 아동보호 업무를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호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 Abs. 72 KJHG).

제2항에는 원칙적으로 지역청소년청과 주청소년청의 주요 기능을 전문인력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인력은 대상에게 위험이 발생하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한 사정평가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춰야 한다. 제3항에는 공공기관이 청소년청과 주청소년청의 직원에게 추가 교육과 실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인력은 지속적인 교육 및 슈퍼비전을 제공받아야 한다(§ 2~3 Abs. 72 KJHG).

법적 규정을 토대로 현장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ASD)의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인력은 아동·청소년 복지업무의 담당자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청의 업무에 아동보호서비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동·청소년 복지업무 담당자 중 추가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은 공무원에게 아동보호 전문인력의 자격이 주어진다. 사회복지나 교육학, 사회교육 분야의 대학을 졸업하고 아동보호 업무와 관련되어 현장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인력 교육을 받을 수 있다(Deutscher Kinderschutzbund, 2014, p. 14).

아동보호 전문인력은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해야 하며 당사자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동보호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는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 자격 기준을 갖춘 인력은 아동보호 전문인력 자격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주별로 교육기관 등이 다르게 나타나며, 자격과정의 예시로 교육아카데미(Bildungsakademie BiS) 자격과정을 살펴보겠다.

교육아카데미(BiS) 아동보호 전문인력 자격과정은 총 9일 동안 진행되며(§§ 8a, 8b SGB und § 4 KKG), 1~2일차(Block 1)에는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인력의 기준, 법적인 규정, 아동보호서비스의 의료적 관점, 아동보호 전문인력의 역할 등 법적인 규정과 기초이론을 다룬다. 3~4일차(Block 2)에는 위험평가, 동료 슈퍼비전의 방법, 아동보호서비스의 사례 회의 및 참여 방법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의 인식-평가-방법의 실재를 학습한다. 5~7일차(Block 3)에는 아동보호 전문인력의 역할과 업무, 상담과정, 현장조사 실행,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의 역할, 상담, 협력에 대해 수련한다. 8일차에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업무를 다뤄 보고 9일차에는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에 대한 정리로 자격과정을 종결한다(Bildungsakademie BiS, 2020, pp. 20-21).

자격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종사자로 아동보호서비스 담당 부서에 소속되어야 하며, 관련 전공 교육을 받고 아동보호 현장에서 최소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만 참여 가능하다. 9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아동청소년지원법 8a, 8b조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인력 자격증(Zertifikat der Kinderschutz Fachkraft)이 수여된다(Bildungsakademie BiS, 2020, pp. 20-21).

예를 들어 카셀(Kassel) 청소년청의 경우 4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ASD)이 근무하며 아동보호서비스, 양육 및 이혼 상담, 양육 지원 등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³⁴⁾ 40명의 전담공무원

34) 아동·청소년의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지원(§ 8 KJHG),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발전 문

중 16명은 아동보호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보수교육(Zusatzausbildung)을 통해 자격을 증명하여 아동보호 전문인력(bosonders qualifizierte Fachkraefte)으로 간주된다. 아동보호 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전담공무원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직원이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상담 및 협력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아동복지 위험에 대한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관련기관인 학교, 유치원, 경찰서,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아동복지 위험시에 기관을 방문하여 협력한다(Hong, 2016, pp. 237-238).

5. 독일 한국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정책적 접근 및 시사점

가.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신고·조사시스템

• 아동·청소년 학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에도 주마다 신고시스템이 존재한다. 다만 독일은 사후 개입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보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였다. 신고시스템에서 아동·청소년의 외상이나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주변인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가족, 부모와 연관되어 있어 가족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고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한 가정과 아동에 집중적인 보호시스템을 갖

제에 대한 상담 지원(§ 16 KJHG), 면접교섭권과 부부관계, 이혼 등에 대한 상담(§ 17 KJHG),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상담과 지원(§ 18 KJHG), 아동, 부모 주거 유형에 대한 상담 등(§ 19 KJHG), 가족 양육과 상담, 아동의 위기환경에 대한 상담, 관리, 연계 등 (§ 20 KJHG), 청소년진로지원(§ 13 KJHG), 아동 이용시설 연계 및 상담 지원(§ 23 KJHG), 아동·청소년이 위험한 상황 시 일시보호(§§ 42-43 KJHG), 가정법원의 절차에 대한 협력(§ 50 KJHG I.V. mit §§ 49 und 49a FamFG), 아동복지 위험 시 가정법원에 개입 요청(§ 1666, 1666a BGB).

출 수 있는 반면 국가의 개입에 따른 낙인과 수많은 아동학대 의심신고들과 같이 비효율적인 국가의 개입을 야기할 수 있다. 신고시스템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청소년의 발달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의 복지 문제가 의심스러운 경우 관계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 공적 체계를 통한 조사·판정·조치 시스템 명확화

독일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업무를 민간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복지 업무를 민간단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업무는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업무상 가정에 대한 개입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필요시 가정법원, 경찰서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일시보호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아동·청소년보호 관련법의 상세한 규정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의 상세한 규정을 통한 개입체계

아동청소년지원법 8a조항은 아동·청소년보호 업무의 개입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위험사정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에 대한 사정평가는 아동·청소년이 긴급한 위험에 놓여 있는지, 가정법원 협력을 통한 친권개입이 필요한지, 경찰이나 상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지 등을 평가한다. 특히 전문가의 협력, 아동·

청소년 및 양육권자의 참여와 함께 전문적인 사례관리, 보호 결정의 적합성, 관계기관의 협력 및 지원프로세스의 운영 등을 아동·청소년 발달을 위해 청소년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청소년청의 책임 명확화와 관계기관 협력 의무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7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총책임 역할을 부여받은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부모나 양육권자의 양육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 체계를 갖춘다. 지원 체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양육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 및 친권개입 등 다양한 개입체계를 진행한다.

청소년청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징후나 상흔 없이도 아동·청소년보호 문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 시에도 친권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였다. 민간단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모니터링하고, 기관의 직접 지원이나 타 기관 위임을 제공하며, 필요시 청소년청과 협력해 가정 지원 및 일시보호를 진행한다.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복잡한 과정에서 청소년청에 총책임의 역할을 부여하고, 아동·청소년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보호의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독일은 신고나 학대 판정 이전에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에 따라 가족지원서비스, 가족보충서비스, 가족대체서비스를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정과 부모의

위험요인을 낮추고 가정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보호 문제로 개입하더라도, 지원 범위를 아동·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가정법원을 통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라. 개입적 관점에서 예방적 관점으로 변화

• 아동·청소년보호 관점의 인식 변화 및 예방적 지원 체계 확대

199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은 기존 사후개입적 관점에서 사전예방적 지원 체계로 변화하여 가족 상황과 환경 접근에 따른 지원 체계,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부모와 양육권자를 감독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 양육의 책임이 있는 양육권자를 지원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지원 체계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양육권자가 아동·청소년의 보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개입을 명시화하였다.

• 「연방아동보호법」(BkiSchG)을 통한 관계기관 협력의무

청소년청만으로 아동·청소년보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연방정부는 연방아동보호법을 제정하고 관계기관의 의무적 협력을 규정하였다. 관계기관인 학교나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모든 기관은 아동·청소년보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차적 위험을 사정하고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필요시 익명으로 청소년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을 통해 청소년청과 가정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이 장은 미국 아동 및 성인 보호서비스와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발전과 법적 근거,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인력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법령은 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법」은 아동 및 성인의 학대, 방임, 착취에 대한 방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아동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는 연방법과 주법에 근거하여 제공된다. 이 장에서 다룬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독일의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는 독일의 다른 복지서비스 대비 가정 대상 개입의 적극성과 국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는 가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련법은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를 국가기관인 청소년청이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업으로 분류한다.

미국의 보호서비스는 아동 및 성인 대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전문서비스이자 보호체계로서 기능한다. 특히 아동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점 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에서 공공기관인 청소년청이 서비스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과 「민법」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청소년청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여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텍사스주와 뉴욕주 모두 아동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를 동일 부서에서 관할한다. 텍사스주의 경우 아동과 성인 학대에 대한 긴급 상담전

화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통합된 부서에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접수와 같은 공통의 기능을 주에서 일원화된 창구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 아동보호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 조사체계 외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텍사스주의 차등적 대응체계(AR)와 뉴욕주 가족사정 대응체계(FAR)는 일반 조사사례와 다르게 가족을 중심으로 더 유연한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폭력·학대의 유형과 특징에 따라 대상자에게 개입할 수 있는 유연한 선택지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는 사후적 개입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지원 체계를 강조하며, 학대에 대한 조사시스템과 별개로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사후적 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사전예방적 지원 체계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 아동보호서비스와 노인보호서비스의 경우 협회 등의 민간 영역이 보호서비스 업무 및 기술의 규정, 교육훈련 제공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성인보호서비스의 경우 전미 성인보호서비스협회(NASPA)에서 제공하는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신규 종사자의 학력이나 경력 기준은 엄격한 수준은 아니며 훈련과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텍사스주 보호서비스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종사자에게 교육 휴가를 제공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종사자의 교육훈련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주요 인력은 청소년청의 전담공무원이며, 청소년청에서는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이 모두 일할 수 있다. 보호서비스는 복지업무에서도 특수한 기술로서 훈련이 제공되며 보호서비스 경력

을 갖춘 인력이 관련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자격을 갖추 수 있는 보호서비스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영역 중심의 보호서비스 인력 운영 방식은 한국의 보호서비스 인력 운용에도 정책적 함의를 줄 것이다.

제 5 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제언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호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고찰한 후 국내 보호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보호서비스는 폭력 및 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호서비스의 범위는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 피해자의 장기적 치유 및 회복 지원, 폭력·학대 예방 및 재범 방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개별 영역별로 서로 다른 법령과 제도로 발전하였으며 사회복지 영역이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보호서비스라는 일반론적 정의와 공통적 관점이 부재하였다. 아동, 노인, 장애인 영역과 성폭력, 부부폭력 영역은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관련 법령과 전달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학교 영역은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외에 보호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한 영역이며, 군, 산업 영역은 모두 폭력·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보호서비스가 미비한 영역이다. 영역별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피해자 대상 개입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와 성폭력의 경우 서비스 개입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영역이며, 상대적으로 부부폭력과 노인학대는

서비스의 개입에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영역이다. **부부폭력과 노인학대 영역에서 피해자가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현재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의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자(행위자) 대상 다양한 개입을 수행하기에는 현행 전달체계의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해자(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강제하거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

현행 보호서비스 체계가 존재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고·조사: 신고 및 의뢰 접수, 조사·판정³⁵⁾
- 위기개입: 초기 상담, 가해자 분리 및 긴급조치
- 피해자 지원: 사정 및 개입계획 수립, 상담 및 심리서비스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생활 지원, 교육·훈련 및 취업·자립 지원, 정보 제공 및 외부자원 연계, 사후관리
- 예방·재범 방지: 예방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예방사업, 가해자 상담 및 프로그램

아동학대,³⁶⁾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의 경우 보호기관이나 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신고 및 의뢰 접수, 조사·판정, 초기상담, 상담 및 심리서비스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및 외부자원 연계, 사후관리, 가해자 대상 개입, 예방사업이 수행되며, 보호시설에서 임시보호 및 생활 지원, 교육·훈련 및 취업·자립 지원, 정보 제공 및 외부자원 연계를 제공한다.³⁷⁾ 성폭력과 부부폭력(가정폭력) 영역은 조사·판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호서비스 하위 기능을 수행한다. 위기개입 관련 기능을 1366센

35) 경찰 등의 사법체계가 신고·조사와 위기개입(가해자 분리 등)에 개입함.

36) 2019년 이후 조사기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공 부문으로 이관되었음.

37) 노인영역 보호시설은 교육·훈련 및 취업·자립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

터,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피해자 지원의 주요 기능을 상담소에서 수행하며 보호시설은 임시보호 및 생활 지원, 교육·훈련 및 취업·자립 지원, 정보 제공 및 외부자원 연계를 제공한다. 다만 성폭력과 부부폭력에 대한 제도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현행 보호서비스 체계가 존재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개별 영역별로 보호서비스의 하위 기능을 모두 유사하게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영역별 동일한 하위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영역별 서비스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영역별 전달체계가 예방 및 재범 방지 기능까지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과 인력 여건 속에서 각 영역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호서비스의 하위 기능은 모두 영역별로 나열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보호서비스의 여러 하위 기능 중 영역 간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없었다.** 즉, 개별 영역 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보호서비스의 기능은 유사하지만,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영역에서 수행되는 보호서비스는 유사한 직무 혹은 기술로 인식되지 못한다.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특화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자격조건과 처우조건은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호서비스 체계가 존재하는 영역의 전담기관들은 교육훈련과 슈퍼비전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지만 현행 제도의 근로조건과 교육훈련에서 종사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하게 만드는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간 예산, 인건비, 교육훈련에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인력 부족 문제와 서비스 질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독일의 보호서비스 제도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의 법령은 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서비스는 아동 및 성인 대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전문서비스이자 보호체계로서 기능한다. 한편 독일의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는 다른 복지서비스 대비 가정 대상 개입의 적극성과 국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은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를 공공기관인 청소년청이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업으로 분류한다.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에서 공공기관인 청소년청이 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사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서비스에서 공공전달체계의 공적 책임성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 준다.

미국 보호서비스 사례에서 텍사스주와 뉴욕주 모두 아동보호서비스와 성인보호서비스를 동일 부서에서 관할하며, 텍사스주의 경우 긴급 상담 전화와 같은 공통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텍사스주의 차등적 대응체계(AR)와 뉴욕주의 가족사정 대응체계(FAR)는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 조사체계와 다른 개입 방식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더 유연한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독일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는 사후적 개입뿐만 아니라 예방적 지원 체계를 강조하여, 학대 조사시스템과 별개로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 아동보호서비스와 노인보호서비스의 경우 민간 영역이 보호서비스 직무 규정, 교육훈련 제공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성인보호서비스의 경우 전미 성인보호서비스협회(NASPA)에서 제공하는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주요 인력은 청

소년청의 인력이다. 독일 보호서비스 사례에서 보호서비스는 복지업무에서도 특수한 기술로 구분되며, 보호서비스 관련 직업교육 및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2절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제언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 개선과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겠다.

1. 보호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 강화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에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을 강화하여 의무보호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개별 영역에서 폭력과 학대 문제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공통의 목적을 가진 “보호서비스”로 재정의하고, 의무보호서비스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의무보호서비스는 폭력 및 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에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서비스의 의무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개별 영역의 특수성 중심의 개입보다는, 한국 사회의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공통적 접근 방식과 서비스의 지향점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의 관련 법령에서 실질적으로 보호서비스에 해당하는 체계와 서비스가 규정되어 있다. 제도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보호서비스 체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영역별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과 지침 정비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대 및 폭력의 영역에 따

라 피해자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의 의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의 의무성 강화와 함께 제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조치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호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의무보호서비스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호서비스 관련 체계와 인력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보호서비스 수준 강화와 체계 정비

첫째, 보호서비스 체계가 이미 존재하는 영역의 경우, 보호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보호서비스가 학대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이자 체계인 것처럼 한국의 의무보호서비스는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체계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범부처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고 부처 간 조정 및 협력을 통해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호서비스의 기능은 폭력·학대 신고 및 조사, 위기개입, 피해자 지원, 예방 및 재범 방지로 구분되며, 현행 보호서비스는 개별 영역의 전달체계에서 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개별 영역의 전달체계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영역의 구분 없이 전국 및 지역 단위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기능과 **영역별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기능을 연결하는 **의무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세 가지 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영역별 전달체계에서 폭력·학대 사례

에 대한 접수·조사, 위기개입을 제공한 후 지자체 공적체계에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자체가 사례관리를 위한 기관 연계와 정보교환의 중심점이 될 것이며 복지서비스 및 의료시설과의 연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번째 안은 텍사스주의 통합적 긴급 상담 전화와 같이 신고 및 접수의 기능을 지역에서 공통적 기능으로 수행하는 방안이다. 추가하여 지자체 조직과 지역의 여러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단위로 폭력·학대 사례의 발굴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 안은 폭력·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폭력·학대 전반에 대한 전국 혹은 지자체 단위의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폭력 및 학대 예방에 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재조정의 방식에 따라 의무보호서비스 제도에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주요 역할이 재조정되고 지자체와 기관의 보호서비스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결정될 것이다. 다만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등의 이슈가 있는 영역의 경우, 위 의무보호서비스 체계 구축안과의 연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무보호서비스 제도에서 보호서비스의 내용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서비스에서 학대 사례의 감지와 발굴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예방적 기능 사례와 같이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예방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잦고 관찰이 가능한 관련 기관(보육시설, 학교, 지역아동센터,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병원 등)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청소년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면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텍사스주의 차등적 대응체계(AR)와 뉴욕주 가족사정 대응체계(FAR)는 학대의 발생원인과 가족체계에 주목하여 일반 학대조사와는 별개로 학대 사례에 개입하는 프로세스이다. 의무보호서비스 제도에서 일반 학대조사 프로세스와 별개로, 가족 지원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입 프로세스를 개발함으로써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행위자)에 대한 더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노인학대와 부부폭력의 경우 개입의 강제성 확대에 주력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호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폭력·학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의무보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트라우마 치료 등의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치료 지원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체계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가해자(행위자)를 대상의 개입을 더욱 확대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가해자(행위자) 대상으로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강화하고 사회봉사 등의 다양한 조치 방식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확충되어야 한다.**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의 다양화와 함께 개입의 효과성 검증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교정 분야를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며, 향후 교정 분야 전반으로 의무보

호서비스 제도의 포괄 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이다.

폭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과 인식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적 폭력·학대 예방 교육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포괄적 차원에서 폭력·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 대상 예방 교육에서 주요 폭력 및 학대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기획·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영역, 군 영역에서 보호서비스 제도화가 필요하다. 두 영역은 폭력·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존재하거나 체계화되지 못한 영역이다. **지역 내 청소년 지원체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청소년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서비스가 명시되고, 청소년 영역에서 가해청소년 대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영역에서 지자체가 보호서비스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폭력·학대 문제를 겪는 지역 내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발굴되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군 영역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엄격한 위계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폭력·학대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군 영역에서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군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3. 보호서비스 인력의 교육훈련체계 정비와 처우 개선

첫째,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차원에서 서비스 인력 교육훈련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의 범위와 지식, 기술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서비스의 틀에서 폭력·학대 문제와 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초적 지식, 영역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예: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 민감성 갖기), 폭력·학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식과 기술(예: 트라우마 이해 및 회복 과정)로 교육훈련 과정이 설계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보호서비스 인력 대상 교육체계가 공통 기초교육, 영역별 심화교육, 일반 심화교육의 체계로 구성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교육체계 개발과 동시에, 개별 영역에서 폭력·학대 문제를 다루는 서비스 인력들이 보호서비스 교육훈련 체계로 포괄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보호서비스 교육체계가 넓은 범위의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자(공무원, 경찰, 민간 종사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역별 교육훈련과 슈퍼비전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플랫폼을 신설하여 보호서비스의 틀에서 기관과 종사자들이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서비스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의 처우와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자체, 시설에 따라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교육훈련 여건이 상이하며, 종사자가 교육훈련을 받아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가 교육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텍사스주 보호서비스에서 종사자 대상 교육 휴가와 교육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의무보호서비스 제도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휴가를 의무

화하고 기관에 대한 교육예산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사자가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유인을 강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직급체계의 신설이나 급여체계에 교육훈련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과 같이 개인이 교육훈련을 받고 전문성을 개발하게 만드는 유인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표준 가이드라인의 강화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보호서비스 차원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제도 차원에서 폭력·학대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 및 행위자와 접촉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폭력·학대 문제에 개입하는 보호서비스 인력의 소진 문제와 전이로 인한 트라우마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영역별 보호서비스 현황과 해외 보호서비스 제도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 보호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현황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 국내 보호서비스 현장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제도 설계와 실제 서비스 현장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현장 중심의 정책적 제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는 보호서비스 인력의 규모, 근로조건, 직무, 자격 및 훈련, 서비스 수요 대비 업무 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호서비스 인력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구체화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동욱, 송귀채. (2016).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법학논총, 33 (2), 73-101.
- 강영훈. (2018.5.5.). “아동학대 신고는 느는데…상담원 1명이 만명꼴 담당”.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4112900061>에서 2020.1.30. 인출.
- 경찰청. (2018). 2018 경찰백서.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6_2018.jsp에서 2019.11.24. 인출.
- 경찰청, (2019.7.12.). 보도자료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되는 결과 초래할 수도”.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1B000001121942000에서 2019.11.24. 인출.
- 경찰청. (2020.2.24.). 보도자료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00224093843562에서 2020.2.28. 인출.
- 경찰청 홈페이지. (2019a). 2018 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18.jsp에서 2019.12.30. 인출.
- 경찰청 홈페이지. (2019b). 범죄피해자 지원.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03.jsp>에서 2019.12.30. 인출.
- 고용노동부. (2019.7.17.).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현장 안착 추진”.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674에서 2019.11.29. 인출.
- 관찰부처 합동. (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412>에서 2019.11.19. 인출.
- 교육부. (2018). 2019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https://www.moe.go.kr/board>

- 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6866에서 2019.12.30. 인출.
- 교육부. (2020.1.15.). 보도자료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50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0.1.30. 인출.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세종: 교육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보호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2688호, <http://www.law.go.kr/법령/가정보호심판규칙>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48호, <http://www.law.go.kr/법령/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002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18#0000>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30호, [http://www.law.go.kr/법령/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00830,20141103\)](http://www.law.go.kr/법령/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00830,20141103))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1953호,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59177>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15049호, [http://www.law.go.kr/법령/군인복지기본법/\(15049,20171128\)](http://www.law.go.kr/법령/군인복지기본법/(15049,20171128))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법률 제16034호, <http://www.law.go.kr/법령/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법률 제16272호,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에서 2019.11.28.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643호,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252#0000>에서 2019.11.28.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4319호, [http://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14319,20161202\)](http://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14319,20161202))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법률 제15881호, <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http://www.law.go.kr/lsEfnfoP.do?lsiSeq=61603#>에서 2019.11.23.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법률 제14965호, <http://www.law.go.kr/법령/민법>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18호, <http://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구조법, 법률 제14583호, <http://www.law.go.kr/법령/범죄피해자%20보호법>에서 2019.11.23.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4583호, <http://www.law.go.kr/법령/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2019.11.23.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구조법, 법률 제14102호, [http://www.law.go.kr/법령/법률구조법/\(14102,20160329\)](http://www.law.go.kr/법령/법률구조법/(14102,20160329))에서 2019.11.23.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2166호,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127950>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13호, <http://www.law.go.kr/법령/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소년 교육지침, 법무부훈령 제1043호,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38523>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90호, <http://law.go.kr/lInfoP.do?lsiSeq=149552#0000>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소년 처우지침, 법무부훈령 제1276호, <http://www.law.go.kr/행정규칙/보호소년%20처우지침>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대관리훈령, 국방부훈령 제2273호, <http://www.law.go.kr/행정규칙/부대관리훈령>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6272호, <http://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서 2019.11.28.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2호, <http://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2019.11.28.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1호,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B%B0%8F%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0>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96호,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20사건의%20증인신문%20및%20피해자%20보호에%20관한%20규칙>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제801호,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54149>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대한특례법, 법률 제16445호,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9110호, <http://www.law.go.kr/lInfoP.do?lsiSeq=87478#0000>에서

-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법률 제13524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0000>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5호, <http://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법률 제16248호,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224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43&efYd=20170530#0000>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찰청예규 제874호,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68689>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904호,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72호,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27호, [http://www.law.go.kr/법령/진술조력인의선정등에관한규칙/\(00827.20141013\)](http://www.law.go.kr/법령/진술조력인의선정등에관한규칙/(00827.20141013))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5호,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서> 2019. 11. 28.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령 제123호,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에서> 2019.11.28.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5913호,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5988호,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제952호, <http://www.law.go.kr/행정규칙/피해자%20보호%20및%20지원%20관한%20규칙>에서 2019.11.23.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66호, <http://www.law.go.kr/법령/학교안전사고%20예방%20및%20보상%20관한%20법률>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6-99호,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8129>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법률 제16441호, <http://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20및%20대책%20관한%20법률>에서 2019.10.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법률 제15982호, <http://www.law.go.kr/법령/형법>에서 2019.11.23.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법률 제16850호, <http://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에서 2019.11.23. 인출.
-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10,29). “가정폭력 신고 대비 검거는 13%에 불과”. <http://www.kangci.net/dtlBBS.do;jsessionid=731460A53AF1280567734016F599560B?pageIndex=1&bbsNum=newsdata¬iceNum=33820&strKeyOption=0&strKey=>에서 2020.1.30. 인출.
- 근로복지공단. (2019.7.17.).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6에서 2019.11.29. 인출.
- 권문일. (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적개입. 보호관찰, 12(1), 7-37.

- 권오열, 고흥월. (2015). 군 상담의 개념적, 조직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31(1), 237-270.
- 권희경, 장재홍. (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 김기현, 김미숙, 양심영, 하태정. (2014).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의 서비스 연계성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7, 1-34.
- 김경희, 윤민화, 정해린, 구혜완. (2018).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의 과정 및 성과 평가. 서울: 굿네이버스.
- 김동수. (2016.11.). 군민협력 그린캠프. 2016 한국군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 김미선, 서보람. (2018). 인천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연구.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 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 (2013).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순양, 손능수. (2015).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분석 및 정책적 제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 (4), 241-271.
- 김승권, 김유경, 김정숙, 박계림. (2013).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호 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신열, 최정민. (201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수퍼비전과 직무만족 간 관계. 사회과학연구, 55(1), 155-180.
- 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영지, 김희진. (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용세, 류병관. (2002).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 동향. 피해자학연구, 10(1), 137-172.
- 김정혜, 윤덕경, 정수연, 이인선, 이주영. (2018).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최수정.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진, 김지연, 이승현, 류지웅, 정동철, 정인식. (2018).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협동연구총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김형모. (2014).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46), 239-266.
- 김혜영. (2014). 한 미 일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52, 119-141.
- 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근영, 이미진. (20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2018).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59, 7-24.
- 류정희, 전진아, 이상정, 이주연, 정익중, 유민상. (2018a). 생애주기주기별 학대 경험연구: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함영진, 이상정, 김지연, 김가희, 김지민, 권영지. (2018b). 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준혁. (2016). 직장 내 폭력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5(2), 207-236.
- 박미은. (2018). 군사회복지실천론 강정관점의 적용. 경기도 고양시: 공동체.
- 박선영. (2018).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박성수. (2018). 효율적인 소년범죄 사회내처우를 위한 정책제언-보호관찰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18(2), 123-159.
- 박세경, 강혜규, 류정희, 이주연, 노충래, 이상균...황옥경. (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 (2015). 아동보호체계의 실태 진단과 안전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 보건·복지 Issue&Focus, 291, 1-8.
- 박철우. (2017). 자살위기개입과 자살예방 관련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지각하는 어려운 점과 극복 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10(1), 69-92.
- 박헌국. (2018). 학교폭력 예방대책 운영현황과 연계체계 분석. 한국경찰연구, 17 (2), 113-150.
- 법무부. (2000). 여성수사관제도.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19a).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http://www.moj.go.kr/moj/426/subview.do>에서 2019.11.20. 인출.
- 법무부. (2019b). 스마일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선정 계획서. <http://www.moj.go.kr/moj/223/subview.do>에서 2019.11.20. 인출.
- 법무부 홈페이지. (201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http://www.moj.go.kr/hum_07/2251/subview.do에서 2019.11.20. 인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2019a). 청소년비행예방. www.cppb.go.kr/cppb/716/subview.do에서 2019.11.22. 인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2019b). 소년보호관찰. www.cppb.go.kr/cppb/717/subview.do에서 2019.11.22. 인출.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노인 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c).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d). 보건복지부 2019 예산. 세종: 보건복지부.
- 복지로 홈페이지. (201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No=144>에서 2019.11.22. 인출.
- 생활법령정보. (2019). 성폭력의 범위.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1&cciNo=1&cnpClsNo=1>에서 2019.10.22. 인출.
- 서재경, 제철용, 최윤경. (2016). 한국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한국장애인복지학*, 32, 141-165.
- 서혜석. (2017.10.). 군사회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망. 2017년 한국군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 서혜석, 유흥위. (2008). 군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서울: 양서원.
- 손민희. (2016.11.). 위기가정 병사 사례관리. 2016 한국군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 신은경. (2016.11.). 군인가족지원 프로그램. 2016 한국군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 스마일센터 홈페이지. (2019). 전국 스마일센터. <http://resmile.or.kr>에서 2019.12.20. 인출.
- 안수란, 강혜규, 전진아, 유재언, 하태정, 김혜승...송나경. (2018).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a). 2018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sSn=704302에서 2019.11.20. 인출.
- 여성가족부. (2019b).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sSn=704305에서 2019.11.20. 인출.

- 여성가족부. (2019c). 2018 해바라기센터 운영 실적.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295에서 2019.11.20. 인출.
- 여성가족부. (2019d).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e). 2019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f). 2019년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298에서 2019.11.20. 인출.
- 여성가족부. (2019g). 2019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현황.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272에서 2019.11.20. 인출.
- 여성가족부. (2019h).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i).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t6+EXn2E1lKg0AvRqyAxcAiN.mogef11?mid=plc505&bbtSn=704759에서 2019.11.20. 인출.
- 여성가족부. (2020.2.5.).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8300000036>에서 2020.2.6. 인출.
- 여성가족부. (2019.11.25.). 보도자료 “청소년쉼터 운영, 3년 전보다 개선”.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77에서 2019.12.30. 인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9a).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CYS-Net).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6.do에서 2019.11.29. 인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9b).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http://www.mogef.go.kr/mp/pcf/mp_pcf_f004.do에서 2019.11.1. 인출.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2016 해바라기센터 연감. 서울: 여성가족부.
- 유경민, 이윤희, 송기호. (2017).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윤정숙, 이승현, 김미숙, 김유경, 김지민, 박미랑. (2017).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봉주, 백학영, 오영삼, 이선혜, 정미경, 채수진...황명주. (2018).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생활공간 활용 방안. 서울: 한국사회복지서비스연구원.
- 이봉주, 정해린, 이신혜. (2019.10.).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천 강화를 위한 전문 서비스 개발 및 효과성 평가. 2019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이상정, 류정희, 임정미, 이주연, 노혜련, 변미희. (2018).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유진. (2012).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운수. (2018). 군·경·소방 조직에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한국군사회복지학, 11(1), 125-156.
- 이인선, 황정임, 최지현, 조운수. (2017). 가정폭력실태와 과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현민. (2018).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방향 논의: 현행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후견과 신탁, 1(1), 245-259.
- 이종호, 최장욱, 황윤상, 윤형호, 서동욱, 송영무, 황인무. (2014).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은희, 박세경, 류정희, Hajime Takeuch, 정희선. (2016).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보의 효율적 연계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혜숙, 송지연. (2015).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사회복지사들의 분투와 성장: 원스톱 위기개입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4), 137-171.

- 조범근, 김준영, 배귀희, 문명재. (201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4), 269-298.
- 조흥식. (2016). 아동학대, 의무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211, 26-31.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2019). 정의 및 활동. https://www.youthcounselor.or.kr:446/new/sub01_2.html에서 2019. 11. 28. 인출.
- 최수찬, 우종민, 왕은자, 장승혁. (201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경기도 파주: 근로출판사.
- 최인규. (2016). 지역사회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에 관한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6), 259-266.
- 홍문기. (2015). 독일 아동보호체계 분석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법적 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6(1), 97-123.
- 한국 EAP협회 홈페이지. (2019). EAP전문가 자격정보. www.keapa.co.kr/sub/sub02_01.php에서 2019.11.20. 인출.
-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군사회복지학회 10년사. 한국군사회복지학회.
- Aldenhoff, K. (2016, Oktober 10). Fall Kevin : Vor Zehn Jahren schockierte sein Tod ganz Deutschland. Weser Kurier, Retrieved from <https://www.weser-kurier.de>. 2019.10.28.
- Alle, F. (2012). Kinderwohlgefaehrdung, 2 Auflage, Freiburg: Lambertus.
- Banks, D., Landsverk, J., & Wang, K. (2008). Changing policy and practice in the child welfare system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to identify and respond effectively to family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7), 903-932.
- Beckmann, K. (2008). Kinderschutz in oeffentlicher Verantwortung. Schwalbach: Wochenschau.

- Bergeron, L. R. (1999). Decision-making and adult protective services workers: identifying critical factor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3-4), 87-113.
- Bergeron, L. R. (2006). Self-determination and elder abuse: do we know enough?.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6(3-4), 81-102.
- Bildungsakademie BiS. (2020). Programm 2020. Wuppertal. Retrived from <https://bis-akademie.de>. 2020.1.15.
- Bonnie, R. L., & Wallace, R. B. (2003). *Elder mistreatment: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in an aging America*.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Brown, H. (2004). *Violence against vulnerable groups*. Council of Europe.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uer Verbraucherschutz.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 Retrieved from <http://www.gesetze-im-internet.de>. 2019.10.28.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uer Verbraucherschutz. Bundeskinderschutzgesetz [BkiSchG] Retrieved from <http://www.gesetze-im-internet.de>. 2019.10.28.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uer Verbraucherschutz. Buergerliche Gesetzbuch [BGB] Retrieved from <http://www.gesetze-im-internet.de>. 2019.10.28.
- Buchkremer, H. (2009). *Handbuch Sozialpaedagogik. Ein Leitfaden in der sozialen Arbeit*. 3 Auflage. Darmstadt: WBG.
- Cearly, S.(2004). The power of supervision in child welfare services, *Child and Youth Care Forum*, 33(5), 313-327, <https://doi.org/10.1023/B:CCAR.0000043038.97882.2f>

- Chames, C., & Lomofsky, D. (2014). Towards effective child protection: Adopting a systems approach. *South African Child Gauge* 2014, 43-50.
- Children's Bureau. (2016). Intergenerational patterns of child maltreatment. Issue Brief, 201608, 1-19.
- Collins-Camargo, C., & Royse, D. (2010)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effective supervision, organizational culture promoting evidence-based practice, and worker self-efficacy in public child welfare, *Journal of Public Child Welfare*, 4 (1), 1-24, DOI: 10.1080/15548730903563053
- Crosson-Tower, C. (2014).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Pearson Education.
- Curry, D., McCarragher, T., & Dellmann-Jenkins, M. (2005). Training, transfer, and turnover: Exploring the relationship among transfer of learning factors and staff retention in child welf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8), 931-948.
- Delaney, S., Quigley, P., & Shuteriqi, M. (2014). Understanding and applying a systems approach to child protection: A guide for programme staff. *Child Frontiers and Terre des homes*.
- DePanfilis, D., & Zlotnik, J. L. (2008). Retention of front-line staff in child welfare: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9), 995-1008.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07.12.017>
- Deutscher Bundestag. (2004).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Drucksache 15/3676)*. Retrieved from <http://dip21.bundestag.de>. 2019.10.28.
- Deutscher Kinderschutzbund Landesverband NRW e.V. (2014). *Kompetenzprofil Kinderschutzbundfachkraefte*, Retrieved from

<https://www.kinderschutzbund-nrw.de>. 2019.10.28.

- Ernst, J. S., Ramsey-Klawnsnik, H., Schillerstrom, J. E., Dayton, C., Mixson, P., & Counihan, M. (2014). Informing evidence-based practice: A review of research analyzing adult protective services data.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26(5), 458-494. doi:10.1080/08946566.2013.832605
- Evans, M. (2018, October 9). Texas workers caring for elderly feel “treated like a stepchild” as caseload increases, pay stays the same. *The Texas Tribune*. Retrieved from <https://www.texastribune.org/2018/10/09/texas-cps-aps-forgotten-caseworkers-legislators>. 2019.11.4.
- Fawcett, B. (2008). Women and violence, in : Fawcett, B., & Waugh, F. (Eds.). (2008). *Addressing violence, abuse and oppression: Debates and challenges* (pp. 7-16). Routledge.
- Fawcett, B., & Waugh, F. (Eds.). (2008). *Addressing violence, abuse and oppression: Debates and challenges*. Routledge.
- Fegert, J., Ziegenhain, U., & Fangerer, H. (2010). *Problematische Kinderschutzverlaeuft*. Weinheim und Muenchen: Juventa.
- Fieseler, G., & Herborth, R. (2010). *Recht der Familie und Jugendhilfe*. 7 Auflage. Koeln: Luchterhand.
-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DCF (2019a). *Adult protective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www.myflfamilies.com/service-programs/adult-protective-services/clients-we-serve.shtml>. 2019.11.10.
-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DCF (2019b). *Adult protective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www.myflfamilies.com/admin/publications/cfops/CFOP%20140-xx%20Adult%20Services/CFOP%20140-02,%20Adult%20Protective%20Services.pdf>.

2019.11.10.

- Galtung, J. (1985). Twenty-Five Years of Peace Research: Ten Challenges and Some Responses. *Journal of Peace Research*, 22(2), 141-158.
- Garcia-Moreno, C., Hegarty, K., d'Oliveira, A. F. L., Koziol-McLain, J., Colombini, M., & Feder, G. (2015). The health-systems response to violence against women. *The Lancet*, 385(9977), 1567-1579.
- Ghesquiere, A., Plichta, S. B., McAfee, C., & Rogers, G. (2018).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f adult protective service worker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30(1), 1-19. doi: 10.1080/08946566.2017.1352550
- Goldberg, B., & Schorn, A. (Eds.). (2011). *Kindeswohlgefährdung : Wahrnehmen, Bewerten, Intervenieren*. Opladen: Budrich.
- Goldberg, S. (2015). OSHA targets health care, social services for upgraded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Business Insurance*; Chicago, 49(10), 1-3.
- Gries, J., & Ringler, D. (Eds.). (2003). *Jugendamt und Jugend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ltmannsweiler: Schneider.
- Hagemann-White, C. (2019). Redres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Institutional frameworks of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in four countries, in : Hagemann-White et al. (Eds.). (2019). *Interventions against child abuse and violence against women: Ethics and culture in practice and policy* (pp. 87-103). Verlag Barbara Budrich.
- Hagemann-White, C. & Meysen, T. (2019). Intervention cultures gender family, and the state in responses to violence, in Hagemann-White, C., Kelly, L., & Meysen, T. (Eds.). (2019). *Interventions against child abuse and violence against women:*

- Ethics and culture in practice and policy (pp. 189-207). Verlag Barbara Budrich.
- Halarewicz, A.K., Gelman, C., Ghesquiere, A., & Rogers, G. (2019). "Opening the door": developing and pilot testing an adult protective services worker engagement training in New York city,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31(3), 191-208. doi: 10.1080/08946566.2019.1588183
- Hanlon, M. (2008). Men and violenc, in : Fawcett, B., & Waugh, F. (Eds.). (2008). *Addressing violence, abuse and oppression: Debates and challenges* (pp. 17-24). Routledge.
- Healey, L., Connolly, M., & Humphreys, C. (2018). A collaborative practice framework for child protection and specialist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services: Bridging the research and practice divide. *Australian social work*, 71(2), 228-237.
- Herrmann, B., Dettmeyer, R., Banaschak, S., & Thyen, U. (2010). *Kindermisshandlung. 2. Auflage*. Heidelberg: Springer.
- Hetherington, R. (1998). Issues in European child protection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1(1), 71-82 .
- Hong, M. (2016). *Kinderschutz in institutionellen Arrangements*. (Doctoral dissertation thesis, Kasseler Edition Soziale Arbeit Band 2). Retrieved from <http://springer.com>. 2019.10.28.
- Horowitz, G., & Estes, C. L. (1974). *Protective services for the aged*.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ffice of Human Development, Administration on Aging.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2003). *Code of Practice on Workplace Violence in Services Sectors and Measures to Combat this Phenomenon*.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2019).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No. 190). Retrived from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C190. 2019.10.22.
- Janz, A. (2004). Umgang mit Meldungen zum Schutz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Ein Arbeitspapier der AG der Nordhessischen Jugendämter fuer eine Vereinheitlichung im Vorgehen. Jugendamt Kassel.
- Jogerst, G. J., & Daly, J. M., (2004). Adult Protective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가정의학회지*(JKorean Acad Fam Med), 25(4), 279-286
- Jordan, E. (Eds.). (2007). *Kinderwohlgefaehrdung*. 2 Auflage. Muenchen: Beltz.
- Jordan, E. (Eds.). (2008). *Kinderwohlgefaehrdung*. 3 Auflage. Weinheim und Muenchen: Beltz.
- Jordan, E., Maykus, S., & Stuekstaette, E. (2012). *Kinder- und Jugendhilfe*. 3 ueberarbeitete Auflage. Weinheim und Muenchen: Beltz.
- Kaptusta, R. (2019, February 14). Adult Protective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www.myflfamilies.com/admin/publications/policies.asp?path=CFOP%20140-xx%20Adult%20Services>. 2019.10.28.
- Keyword, K. (2017). The vulnerable adult experiment: Situating vulnerability in adult safeguarding law and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53, 88-96.
- Kinder und Jugendhilfe. (2019) *Jugendhilfe zwischen Preavention, Leistungserbringungen und Intervention*. Retrived from <http://www.kinder-jugendhilfe.info/wai1/showcontent.asp?The maID=4675>. 2019.11.24.

- Kinderschutz Zentrum Berlin e. V. (Eds.). (2009). Kinderwohlgefahrung. Erkennen und Helfen. Retrieved from <https://www.kinderschutz-zentrum-berlin.de>. 2019.10.28.
- Kinderschutz Zentren [Website]. (2019). Leitbild des Kinderschutz-Zentrums Berlin e.V. Retrieved from <https://www.kinderschutz-zentren.org>. 2019.11.6.
- Kindler, H., Lillig, S., Herbert, B., Meysen, T., & Werner, A. (Eds.). (2006). Handbuch Kindeswohlgefahrung nach § 1666 und Allgemeiner Sozialer Dienst(ASD). Muenchen: DJI.
- Krieger, W., Lang, A., Messmer, S., & Osthoff, R., (2007). Kindesmisshandlung, Vernachlaessigung und sexueller Missbrauch im Aufgabenbereich der oeffentlichen Traeger der Jugendhilfe. Stuttgart: Ibidem.
- Leung, P., Cheung, M., Washburn, M., Papick, J., Walker, A., Carr, L. C.,... Murphy, B. (2017). DFPS Compensation Assessment and Employee Incentives Review, Final Incentives Analysis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About_DFPS/Reports_and_Presentations/Agencywide/documents/2017/2017-02-20_DFPS_Compensation_Assessment_Employee_Incentives_Review-Formal.pdf. 2019.11.10.
- Lifespan of Greater Rochester Inc., Weill Cornell Medical Center of Cornell University, & 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 (DFTA) (2011). Under the Radar: New York State Elder Abuse Prevalence Study Self-Reported Prevalence and Documented Case Surveys.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reports/Under%20the%20Radar%2005%2012%2011%20final%20report.pdf>. 2019.11.22.

- Lukas, H. (2013). Praevention, in : Kreft, D., & Mielenz, I. (Eds.). Woerterbuch Soziale Arbeit. 7 Auflage (pp. 680-685). Weinheim und Basel : Beltz.
- Lynch, D. (2008). Violence and the state: asylum seeker children, in : Fawcett, B., & Waugh, F. (Eds.). (2008). Addressing violence, abuse and oppression: Debates and challenges (pp. 122-131). Routledge.
- Maeurer. U. (2006). Dokumentation ueber die Ablaeufe und Zusammenhaenge im Todesfall Kevin K. Bremen. Retrieved from <https://www.familienbildung.uni-bremen.de>. 2019.10.28.
- Macy, R. J., Giattina, M., Sangster, T. H., Crosby, C., & Montijo, N. J. (2009).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services: Inside the black box.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5), 359-373.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assachusetts Government. (2019). Retrived from <https://www.mass.gov/service-details/protective-services>. 2019.12.30.
- Meysen, T. (2008). Das Recht zum Schutz von Kindern, in : Institut fuer Sozialarbeit und sozialpaedagogik e. V. (ISS) (Eds.). Vernachlessigte Kinder besser schuetzen. Sozialpaedagogisches Handeln bei Kindeswohlgefahrdung. 2 Auflage (pp. 17-56). Muenchen: Reinhardt.
- Meysen, T. (2019). Information, intervention, and assessment - Frameworks of child physical abuse and neglect interventions in four countries, in : Hagemann-White et al. (Eds.). (2019). Interventions against child abuse and violence against women: Ethics and culture in practice and policy (pp. 77-86). Verlag Barbara Budrich.

- Meysen, T & Grafe, N. (2019). Protec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 Hagenmann-White et al. (Eds.). (2019). Interventions against child abuse and violence against women: Ethics and culture in practice and policy (pp. 134-150). Verlag Barbara Budrich.
- Micosatt, G., & Yilmaz E. (2018). Kommunale Praevention und Soziale Kosten. Entwurf eines fiskalischen Beobachtungssystems. Band 11. Retrieved from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 2019.11.6.
- Mixson, P. M. (2010) Public policy, elder abuse, and adult protective services: the struggle for coherenc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2 (1-2), 16-36. doi: 10.1080/08946560903436148
- Mosqueda, L., Burnight, K., Girona, M. W., Moore, A. A., Robinson, J., & Olsen, B. (2016). The abuse intervention model: A pragmatic approach to intervention for elder mistrea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4(9), 1879-1883.
- Muender, J. (2013). Kinder- und Jugendhilfegesetz(KJHG/ SGB VIII), in : Kreft, D., & Mielenz, I.(Eds.). *Woerterbuch Sozlaie Arbeit*. 7 Auflage (pp. 540-545). Weinheim: Beltz.
- Mukherjee, D. (2011).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elder abuse reporting system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35(5), 517-531.
- Nahrwold, M. (2011). Inobhutnahme und Anrufung des Familiengerichts, in : Goldberg, B., & Schorn, A.(Eds.). *Kindeswohlgefaehrdung : Wahrnehmen, Bewerten, Intervenieren* (pp. 143-168). Opladen: Budrich.
- NAPSA (2015). 2013 National wide Survey of Mandatory Reporting Requirements for Elderly and /or Vulnerable Person. Retrieved from <http://www.napsa-now.org/wp-content/uploads/2016/05>

- /Mandatory-Reporting-Chart-Updated-December-2015-FINAL.pdf. 2019.11.4.
- Nationales Zentrum Fruehe Hilfe; NZFH. (2009). Leitbild Fruehe Hilfen. Retrieved from https://www.fruehehilfen.de/fileadmin/user_upload/fruehehilfen.de/pdf/Publikation_NZFH_Kompakt_Beratung_Leitbild_fuer_Fruehe_Hilfen.pdf. 2019.10.28.
-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Chapter 18, § 18 NYCRR 432.1 (2019a). Retrieved from [http://www.nypwa.com/WC14%20CLE%20Materials%20for%20Website/HANDOUTS%20for%20WEBSITE/Critical%20Issues%20in%20Child%20Protective%20Service%20Related%20Administrative%20Hearings/1.%20%2018%20NYCRR%20432%201%20\(10-30-13\).pdf](http://www.nypwa.com/WC14%20CLE%20Materials%20for%20Website/HANDOUTS%20for%20WEBSITE/Critical%20Issues%20in%20Child%20Protective%20Service%20Related%20Administrative%20Hearings/1.%20%2018%20NYCRR%20432%201%20(10-30-13).pdf). 2019.11.22.
-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Chapter 18, § 432.13 (2019b). Retrieved from [https://govt.westlaw.com/nycrr/Document/I913a5f015f5811e48b080000845b8d3e?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https://govt.westlaw.com/nycrr/Document/I913a5f015f5811e48b080000845b8d3e?viewType=FullText&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Default)). 2019.11.22.
- New York Social Services Law § 473 (2012). Retrieved from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SOS/473>. 2019.11.22.
- Noordegraaf, M. (2007). From “pure” to “hybrid” professionalism: Present-day professionalism in ambiguous public domains. *Administration & Society*, 39(6), 761-785.
- Nothhafft, S. (2008). Sorge- und Umgangsrecht bei Gewalt in der Familie. Deutsche Jugendinstitut. Retrieved from <https://www.dji.de>. 2019.10.28.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2016). Protecting Adults: A Community Concern.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publications/Pub1307.pdf>. 2019.11.22.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2018). Child Protective Services Manual.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cps/manual/2018-CPS-Manual.pdf>. 2019.11.22.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2019a). Child Protective Services Manual.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cps/manual/2019-CPS-Manual.pdf>. 2019.11.22.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2019b). Summary Guide for Mandated Reporters in New York State, pub-1159.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publications/Pub1159.pdf>. 2019.11.22.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Website]. (2019a).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cps>. 2019.11.22.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Website]. (2019b). Adult protective services: Information for professionals.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psa/professionals.asp>. 2019.11.22.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Website]. (2019c). Adult protective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psa>. 2019.11.22.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Website]. (2019d). Adult protective services.: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psa/services.asp>. 2019.11.22.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Website]. (2019e). Adult protective services: important principles of adult protective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psa/principles.asp>. 2019.11.22.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Website]. (2019f). Adult protective services: the problem.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psa/problem.asp>. 2019.11.22.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9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 C.aspx>. 2019.10.22.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9b).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violenceagainstwomen.aspx>. 2019.10.22.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9c).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VictimsOfCrimeAndAbuseOfPower.aspx>. 2019.10.22.
- Pennsylvania General Assembly. (2019). <https://www.legis.state.pa.us/cfdocs/legis/LI/uconsCheck.cfm?txtType=HTM&yr=1987&sessionId=0&smthLwInd=0&act=79&chpt=1&sctn=3&subsctn=0>에서 2019.12.30. 인출.
- Pillemer, K., Burnes, D., Riffin, C., & Lachs, M. S. (2016). Elder abuse: global situation, risk factors, and prevention strategies. *The Gerontologist*, 56(Suppl_2), S194-S205.
- Raetz-Heinisch, R., Schroerer, W., & Wolff, M. (2009). *Lehrbuch Kinder- und Jugendhilfe*. Weinheim: Beltz.
- Save the Children UK. (2009). A 'Rough Guide' to Child Protection Systems. London: Save the Children UK.
- Schone, R. (2008). *Kontrolle als Element von Fachlichkeit in den sozialpädagogischen Dienst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Berlin: AGJ.

- Schone, R., & Tenhaken, W. (Eds.). (2012). Kinderschutz in Einrichtungen und Diensten der Jugendhilfe. Weinheim: Beltz.
- Schone, R. (2013). Praevention und Intervention im Kontext Fruehe Hilfen, Vortrag zur Fachtagung "Zwischen Praevention und Intervention - Konzepte Frueher Hilfe".
- Sims, B., Yost, B., & Abbott, C. (2006). The efficacy of victim services programs: alleviating the psychological suffering of crime victim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7(4), 387-406.
-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2019). Retrived from <https://www.scie.org.uk/safeguarding/adults>. 2019.12.30.
- Social Security Act, Sec. 42. U.S.C. (2011). Retrieved from https://www.ssa.gov/OP_Home/ssact/title20/2011.htm. 2019.11.10.
- Stecklina, G. (2012). Jugendamt, in : Thloe, W., Hoeblich, D., & Ahmed, S. (Eds.). *Taschenwoerterbuch Soziale Arbeit* (pp.142-143). Stuttgart: Julius Klinkhardt.
- Struck, N. (2002).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SGB VIII, in: Schreer, W., & Struck N. (Eds.). *Handbuch Kinder- und Jugendhilfe* (pp.529-544). Weinheim: Juventa.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2018a). Child Protective (CPI/CPS): Staff Turnover.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About_DFPS/Data_Book/Employee_Statistics/CPS/CPS-Staff_Turnover.asp. 2019.11.4.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2018b). Adult protective Services Handbook. Retrieved from http://www.dfps.state.tx.us/handbooks/APS/Files/APS_pg_1300.asp#APS_1311. 2019.11.26.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2018c). Adult Protective Services, Protecting with purpose,

- passion and persistence, Strategic plan FY18-22,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About_DFPS/Reports_and_Presentations/APS/documents/2018/2018-03-27_APS_Strategic_Plan__FY18-22.pdf. 2019.11.26.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2018d). Child protective Services Handbook.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handbooks/CPS/Files/CPS_pg_1000.asp#CPS_1110. 2019.11.4.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Website]. (2019a), Texas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 Retrieved from http://www.dfps.state.tx.us/adult_protection/default.asp. 2019.11.4.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Website]. (2019b), Child Protective Investigation (CPI).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Investigations>. 2019.11.4.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Website]. (2019c), Family-Based Safety Services (FBSS).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Child_Protection/Family_Support/FBSS.asp. 2019.11.28.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Website]. (2019d), Texas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 APS history.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Adult_Protection/History.asp. 2019.11.4.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Website]. (2019e), Texas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 APS investigations and services. Retrieved from http://www.dfps.state.tx.us/Adult_Protection/Investigations_and_Services.asp. 2019.11.4.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Website]. (2019f), What is a CPS investigator specialist?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Jobs/CPS/cps_investigator.asp. 2019.11.4.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Website]. (2019g), Working for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Jobs/APS/default.asp>. 2019.11.4.
-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Website]. (2019h), What is a CPS Family-based Safety Services (FBSS) specialist?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Jobs/CPS/fbss.asp>. 2019.11.4.
- Texas Family Code § Section 261.101 (2017a), Retrieved from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FA/htm/FA.261.htm#261.101>. 2019.11.4.
- Texas Family Code § Section 261.001 (2017b), Retrieved from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FA/htm/FA.261.htm#261.001>. 2019.11.4.
-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HHS Human Resources Work Leave Policy, Chapter 2. Benefit, Leave, and Compensation. Retrieved from <https://hhs.texa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laws-regulations/policies-rules/hhs-employee-leave-policies.pdf>. 2019.11.4.
-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System. (2013).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Self-Evaluation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About_DFPS/Reports_and_Presentations/Agencywide/Sunset_Report/2013_SER_Full_Report.pdf. 2019.11.4.

- Texas Human Resources Code § 48 (2015). Retrieved from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HR/htm/HR.48.htm>. 2019.11.26.
- TexProtects (2014). Understanding Texas'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 Retrieved from https://www.texprotects.org/media/uploads/texas'_cps_system_%26_flowchart.pdf. 2019.11.4.
- The Texas Tribune (2019). Government Salaries Explorer. Retrieved from <https://salaries.texastribune.org/state-comptroller-payroll/departments/department-of-family-and-protective-services/positions>. 2019.11.4.
- United Nations; UN. (2002).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madrid-plan-of-action-and-its-implementation.html>. 2019.10.22.
- United Nations; UN. (201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2.html>. 2019.10.22.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DHHS (2003). Child Protective Services: A Guide for Caseworkers. Washington, DC: Children's Bureau, Retrieved from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cps.pdf>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DHHS. (2006). Child Neglect: A Guide for Preven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ashington, DC: Children's Bureau. Retrieved from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neglect.pdf>. 2019.11.4.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DHHS.

- (2015). Development of a national adult protective services data system; NAMRS pilot final report (volume 1). Retrieved from <https://aspe.hhs.gov/report/development-national-adult-protective-services-data-system-namrs-pilot-final-report-volume-1>. 2019.11.4.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DHHS. (2018). Child Protective Services: A Guide for Caseworkers. Washington: Children's Bureau.
- Wabnitz, R. (2009). Grundkurs Kinder- und Jugendhilferecht fuer die Soziale Arbeit, 2 Auflage. Muenchen: UTB.
- Waldfoegel, J. (1998). Rethinking the paradigm for child protection. The future of children, 8(1), 104-119.
- Weber, M.W. (1997). "Assessment of Child Abuse: A Primary Function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The Battered Child, edited by M. E Helfer, R. S. Kempe, & R. D. Krugman (pp.120-14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esner, R. (2002). Staatliches Waechteramt, in : Bange, D., & Koerner, W.(Eds.). Handwoerterbuch Sexueller Missbrauch (pp. 591-594). Goettingen: Hogrefe Verlag.
- Wold, K. (2010). Adult Protective Services Specialists in Texas: Perceptions of Three Factors Affecting Turnover. 석사 학위 청구 논문, Texas State University. Retrieved from <https://digital.library.txstate.edu/handle/10877/3654>. 2019.11.4.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summary. Genev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9). Changing cultural and social norms that support violence. Geneve: World Health Organization.

- Yankeelov, P. A., Barbee, A. P., Sullivan, D., & Antle, B. F. (2009).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 job retention in Kentucky's child welfare agen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5), 547-554.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08.10.014>
- Zorn, D. (2006). *Das Recht der elterlichen Sorge*. Berlin: De Gruyter Rechtswissenschaften Verlag.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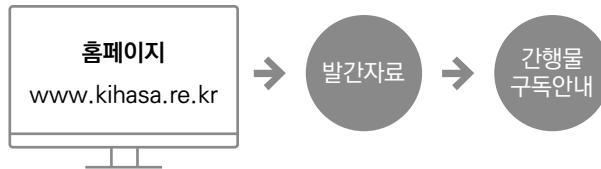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 | |
|-------------------------|-------------------------|
|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
|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